



포토라인을 통해 본 공개수사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Open Investigations through Photo-Line

이승현 · 안수길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 박사)
공동연구자 안수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연구지원 김광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조사원)

머리말

여러 공인들의 검찰소환을 계기로 포토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재벌총수와 그 가족이 연달아 포토라인에서 서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수사 관행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토라인 자체가 언론의 취재영역하에 있는 것이나 언론의 취재로 인한 파급효과는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 원칙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을 통한 언론의 집중 취재로 인해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렵고, 범죄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세워지고 질문을 받는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유죄확정 이전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토라인 운영으로 인해 피의자 개인의 인격권과 형사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에 있어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토라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외국에서 수사관련 언론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사단계 언론보도의 윤리적·법적 통제장치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개소환제도를 비롯하여 수사관행상 언론보도와 관계된 사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사관행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수사관행상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공개소환제도를 재검토하고, 언론기관과 수사기관 모두가 언론보도가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각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기간동안 함께 고생해주신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수길 박사님과 김광수 전문조사원, 박현나 연구보조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학계·실무계·언론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연구책임자 이승현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서 론 (이승현)	5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	---

제2절 연구내용	10
----------------	----

제3절 연구방법	11
----------------	----

제2장 포토라인의 개념과 기능 (이승현)	13
--------------------------------	----

제1절 포토라인의 개념정의	15
----------------------	----

1. 포토라인의 개념	15
-------------------	----

2. 포토라인 설정의 배경	16
----------------------	----

제2절 포토라인의 순기능	18
---------------------	----

1. 언론의 질서유지 기능	18
----------------------	----

2.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감시기능	19
---------------------------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20
---------------------	----

4. 언론의 자유 보장 기능	21
-----------------------	----

제3절 포토라인의 역기능	22
---------------------	----

1. 사건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22
------------------------	----

2. 여론형성에 따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24
----------------------------------	----

3. 무죄추정원칙 위반	26
--------------------	----

4.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	27
-------------------------	----

제4절 포토라인의 기능에 대한 평가	29
---------------------------	----

| 제3장 | 우리나라 포토라인 운영 현황 (이승현) 31

제1절 언론사의 포토라인 운영지침과 실무	33
1. 「포토라인 운영준칙」의 주요내용	33
2. 언론사의 포토라인 운영 실무	35
3. 각 언론사별 범죄수사 관련 보도 시행 세칙	37
제2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과 실무	40
1. 검찰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	40
2. 경찰의 언론보도 관련 제한	45
3. 수사실무상 공개소환제도의 운영	48
제3절 포토라인 관련 판례의 경향	62
1. 포토라인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사례	62
2. 헌법재판소의 포토라인 위헌성에 대한 판단	65
3. 범죄보도의 공공성	67
제4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의 문제점	67
1. 촬영 공개의 근거 불명확	67
2. 공개소환 내용의 광범위	68
3. 타법률의 신상공개 규정과 비교해 과도	68
4. 피의사실공표죄와의 충돌가능성	71
5. 수사관행상 ‘소환’이라는 표현의 잘못된 사용	72

| 제4장 |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안수길/이승현) ... 73

제1절 서설	75
제2절 독일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76
1. 독일의 수사 관련 언론보도 규율 법제	77
2. 독일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84
3. 독일 언론기관의 수사 관련 보도 자율규제	89
4. 독일에서 수사 관련 언론보도를 주제로 전개되는 입법론	91

제3절 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00
1. 미국 법무부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매뉴얼	101
2. 미국의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104
3.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형사재판 기준	106
4. 미국 법원-검찰-변호사-법조기자 공동위원회 운영	107
제4절 영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09
1. 영국검찰청의 취재 및 보도기준	109
2. 영국 언론자율규제기구(IPSO)의 윤리강령	109
3. 영국 BBC방송의 제작가이드라인	112
제5절 일본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14
1. 동경지검의 취재·보도 가이드	115
2. 일본의 언론보도 관련 판례	117
3.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	118
제6절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의 시사점	122

| 제5장 | 포토라인을 통해 본 수사관련 언론보도

개선방안 (이승현) 125

제1절 형사절차 측면에서 포토라인이 끼치는 영향	127
제2절 포토라인 관련 수사실무 개선방안	129
1. 공개소환제도의 개선방안	129
2. 보도관련 수사공보준칙 개선방안	134
3. 언론의 수사보도관련 관행 개선	135
4. 법원-검찰-변호인단-기자 공동 위원회 운영	135
제3절 언론보도 관련 법률제정방안	136
1. 별도의 입법 필요성 검토	136
2. 법률 제정의 형식	137

제4절 언론기관의 자율적 자정장치 마련방안	13
1. 「포토라인 운영준칙」 개선방안	139
2. 수사 보도에 대한 언론 자율규제방안	143
참고문헌	145

표 차례

〈표 3-1〉 포토라인 붕괴사례	36
〈표 3-2〉 2015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	49
〈표 3-3〉 2016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	50
〈표 3-4〉 2017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	53
〈표 3-5〉 2018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	56
〈표 3-6〉 2019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2019년 7월말 기준)	61
〈표 5-1〉 소환과 출석요구의 차이	133
〈표 5-2〉 소환 관련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133

그림 차례

〈그림 2-1〉 검찰에 설치되는 포토라인의 모습	16
〈그림 2-2〉 노○○ 대통령 출두시 포토라인 형태	18

국문요약

우리는 언론에서 정치인, 연예인, 고위공직자, 기업의 총수 등이 여러 사건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포토라인(Photo-Line)이란 정식 사전적 의미는 없고 언론 취재관행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을 말한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을 계기로 포토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되었고,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재벌총수와 그 가족이 연달아 포토라인에서 서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토라인은 공공기관이나 검찰·법원·국회 등에서 취재진과 취재원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설정하여 취재원이 서는 위치에 노란색 삼각형을 표시해 두는 형태를 띠고 있다. 포토라인은 경찰이나 검찰청에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만을 마련해두고 그 길을 통해서만 청사내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삼각형 표시의 방향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도록 하고 있어서 포토라인 형태 그 자체가 취재대상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한다. 더욱이 포토라인은 피의자의 동의에 의해 서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세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토라인을 두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청사 건물 밖에서의 취재행위이기 때문에 지침상 규제할 근거가 없고 이를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포토라인 자체는 언론의 취재영역이긴 하나 언론의 취재로 인한 파급효과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포토라인을 통한 언론의 집중 취재로 인해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범죄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세워지고 “유죄를

2 포토라인을 통해 본 공개수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인정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반성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받는 것이 그대로 방송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유죄확정 전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하는 등 포토라인 운영으로 인해 피의자 개인의 인격권과 형사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에 있어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 외국에서는 피의자의 신상과 혐의사실에 대한 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수사상황과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사 전의 언론보도(특히 개인의 얼굴 등이 공개되는 보도)의 경우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예단을 갖게 하므로 극도로 지양하고 있다.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공개로 인한 실익 등과 비교衡量하여 평가하고 있다.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구나 각 언론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포토라인의 운영이 형사절차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포토라인 자체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포토라인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포토라인의 운영으로 인해 사건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여론형성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로 인한 방어권 행사의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공개소환제도 등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관련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포토라인은 언론의 자율적 통제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포토라인이 세워지기 위한 전제로서의 정보(출석시간, 귀가시간)는 수사기관의 공개소환절차를 통해 나온다. 따라서 수사실무상 공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개소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수사 중인 사안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소환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 공개만을 허용하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둘째, 검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공적인물로 소환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기준도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고, 범죄사실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소환에 동의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검사는 소환일정 조율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넷째, 공개소환의 내용에 있어서도 소환대상자, 소환일시, 귀가 장소, 죄명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공개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환시간 및 귀가시간을 제외하고 ‘소환일자, 대상자, 죄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소환단계에서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없는 경우 공개소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사관행상 사용하고 있는 ‘소환’이라는 표현을 ‘출석요구’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

그밖에도 포토라인 운영준칙에서 수사보도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축소하여야 하고, 포토라인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관련 언론보도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데,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보도윤리를 갖추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양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국 워싱턴 주의 Washington Bench Bar Press Committee와 같이 수사기관과 변호인단, 기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법무부 훈령에 해당한다. 훈령에서 앞에 열거한 헌법과 형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배제하고 예외사유를 만들어 수사단계에서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훈령의 입안에 있어서 적법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하위규정인 훈령으로 법률상의 내용을 제약하는 것이 되어 법률체계에도 반한다. 수사공보 내용은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됨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규율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수사공보에 관한 사항은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모두 필요한 사항인 바, 현행 경찰과 검찰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과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통합하여 「(가칭)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해야 한다.

4 포토라인을 통해 본 공개수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현재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취재경쟁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 언론의 과열된 취재경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포토라인에 대한 세부규칙이 개선되고 보도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언론 스스로 자율규제장치 마련을 통해 윤리적 관점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포토라인 운영준칙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운영준칙이 개정된 적은 없다. 언론매체의 적극적 움직임을 통해 「포토라인 운영준칙」의 현재 미디어시장 형태에 맞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현재 「포토라인 운영준칙」에서의 공인의 개념을 구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공인의 개념과 일반적인 보도과정에서의 공인을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경우 일반 보도에 있어서 공인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수사과정의 공인의 경우 사람의 공익성에 대한 보다 제한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될 제3자의 경우 촬영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토라인에 함께 서는 경우 이것이 동의에 해당하여 초상권 보호의무가 없음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는 절차가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관련 포토라인 질문과정에서 단정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도활동에 있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언론사 간부에게 보고 또는 상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포토라인 운영으로 예단을 형성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등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그밖에도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있어서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율규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동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침 위반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제 1 장

서 론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언론에서 정치인, 연예인, 고위공직자, 기업의 총수 등이 여러 사건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포토라인(Photo-Line)이란 정식 사전적 의미는 없고 언론 취재관행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을 말한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을 계기로 포토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되었고,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재벌총수와 그 가족이 연달아 포토라인에서 서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 논란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유명연예인의 성추행사건 의혹을 공개하면서 유명연예인이 포토라인에 선 것 등을 계기로 포토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단계에 피의자 등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피의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언론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세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토라인을 두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청사 건물 밖에서의 취재행위이기 때문에 지침상 규제할 근거가 없고 이를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포토라인이 없을 경우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인해 피의자 등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토라인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포토라인 자체는 언론의 취재영역이긴 하나 언론의 취재로 인한 파급효과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포토라인에서의 언론의 집중 취재로 인해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범죄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세워지고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반성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받는 것이 그대로 방송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유죄확정 전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하는 등 포토라인 운영으로 인해 피의자 개인의 인격권과 형사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에 있어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포토라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언론매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포토라인 운영준칙」이 존재하고 있으나,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고, 현재의 다중 언론매체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언론계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준칙이다 보니, 취재진의 관점에서 운영 및 절차규정을 두고 있어 취재원의 관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포토라인이 수사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포토라인의 운영으로 수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수사내용의 공개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이 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검찰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대검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 방지, 범죄로 인한 급속한 피해확산, 범인 검거 등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일부 사정이 있으면” 공소 전에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도 준칙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일반인에게 유죄심증을 갖게 하고 법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법률에 의한 기준과 제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과 혐의사실에 대한 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수사상황과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주 언론법과 독일 기본법에 기초하여 언론보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규제하려는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 연방검찰청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사건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미디어 매뉴얼(USAM)’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법원-검찰-변호사-언론 공동위원회(Bench-Bar-Press Committee)에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BBC공영방송 등 각 언론매체별로 피의자 관련 혐의사실 공개에 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언론자율규제기구(IPSO)의 보도강령을 통해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동경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언론기관 대응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언론매체의 경우에도 기자클럽의 운영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토라인의 설치 배경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포토라인 운영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언론매체와 수사실무 상황을 점검하고,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개소환제도(본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하는 형태는 ‘소환’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이다. 그러나 언론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관행상 소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수사관행에 따라 ‘소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포토라인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독일, 영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 사건당사자에 대한 언론보도 관행과 수사기관의 대응가이드를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포토라인 운영제도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무죄추정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토라인 등 범죄사실에 대한 언론의 정보공개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포토라인의 기능과 수사실무상 언론보도관련 기준들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포토라인제도가 수사실무상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관행과 수사기관의 대응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형사소송법 기본목적에 충실한 수사관련 언론보도 관행 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내용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포토라인에 대한 논의가 수사실무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사관련 언론보도 관행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포토라인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한다. 특히 포토라인의 기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포토라인 제도도입 당시 논의되던 순기능이 현재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역기능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포토라인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우리나라의 경찰, 검찰 수사실무상 언론보도 기준과 공개범위를 살펴보고, 언론매체의 운영준칙을 살펴봄으로 문제점은 없는지를 진단해본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을 고찰한다.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서 언론보도 관련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존재하는지, 판례상 언론보도의 기준과 한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언론기관은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수사상황을 보도하고 있는지, 수사기관과 언론매체가 협력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본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을 토대로 피의자 등에게 인권친화적이고 무죄추정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바람직한 수사준칙의 개선방안, 언론보도 지침의 개선방안, 언론의 자율규제 확보방안 등 대안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외국제도와와의 비교연구, 관련 판례 및 사례조사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포토라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법과 언론학 관련 국내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수사준칙과 포토라인 운영준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검찰청 및 경찰청 자료실을 통해 법령자료를 수집하였다. 포토라인과 관련하여 수사실무상 운영되고 있는 공개소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 검색사이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접속을 통해 공개소환 관련 뉴스기사 1,531건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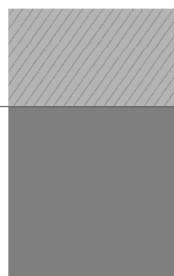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키백과 자료와 각국의 관련 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과 국내 자료를 통해 외국자료 소스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취합하였다.

마지막으로 포토라인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과 포토라인 관련 수사실무 관행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법조출입기자 및 언론학 전공자, 수사절차 관련 연구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험치를 확인하고 의견을 취합 정리하였다.

제 2 장



포토라인의 개념과 기능



포토라인의 개념과 기능

제1절 포토라인의 개념정의

1. 포토라인의 개념

포토라인(Photo-Line)이란 정식 사전적 의미를 가진 개념이 아니라 언론계에서 상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명칭이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의 「포토라인 운영준칙」 제2조에 따르면, 포토라인은 “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정된 취재선이자 현장을 지키는 사진기자 스스로에 대한 윤리적 잣대”라고도 평가하고 있다.¹⁾

포토라인은 공공기관이나 검찰·법원·국회 등에서 취재진과 취재원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설정하여 취재원이 서는 위치에 노란색 삼각형을 표시해 두는 형태를 띠고 있다. 포토라인은 경찰이나 검찰청에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만을 마련해두고 그 길을 통해서만 청사내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삼각형 표시의 방향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인도하고 있어 포토라인 형태 그 자체가 심리적 위축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 진행 중에 피의자 개인의 신상을 노출시키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노출시키는 일본의 경우에도 기자클럽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보검사에 의해 직접 브리핑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피의자 자신이 포토라인 앞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형태는 특이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1) 고명진, “포토브리핑제도 도입이 우선: 포토라인 운영실태와 정착과제”, 신문과 방송 962호, 2019, 50면.



출처: 연합뉴스, “검찰 포토라인 서는 문제, 과거전례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 2017년 3월 14일자 사진자료²⁾.

〈그림 2-1〉 검찰에 설치되는 포토라인의 모습

2. 포토라인 설정의 배경

1987년부터 6월 항쟁 이후 사회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고, 과거 군부독재에 의해 통폐합되었던 매체들이 부활하고 새로운 신문 매체, 지역민간 방송과 케이블 방송 시작 등으로 언론방송 매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³⁾ 언론 매체의 증가에 따라 취재경쟁이 심화되었다. 과열된 취재경쟁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1993년 1월 정○○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현관 입구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50여명이 한꺼번에 정회장을 에워싸는 바람에 회장측과 취재진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정회장이 기자의 카메라에 급혀 이마가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⁴⁾

2) 연합뉴스, “검찰 포토라인 서는 문제, 과거 전례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 2017년 3월 14일자 사진.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4127700000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3) 나준영, “포토라인 준칙 제정 1년, 현장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카메라기자협회, 2007, 3면.

4) THE PR News, “포토라인의 진짜 의미”, 2018년 8월 9일자.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5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이를 계기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공동으로 포토라인 제정에 관한 논의를 착수하여 1994년 12월 「포토라인 운영선포문」을 발표했다. 본 선포문에서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언론 본연의 역할 수행장치”라고 규정하고 4가지 사항을 내용으로 담았다. “언론매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무질서한 취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도덕성을 바탕으로 포토라인을 설정할 것, 포토라인을 경계로 취재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취재가 끝날 때까지 이를 지키며, 이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협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줄 것, 불가피한 경우 양 단체의 협의 하에 공동취재(POOL)를 시행할 것(단, 취재원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공동취재는 하지 않을 것), 포토라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양 단체가 각 3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세칙을 작성하여 각 출입처와 취재원에게 통보·시행할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⁵⁾

「포토라인 운영선포문」 이면에는 기존 매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새로운 언론매체들을 제한하기 위한 방향으로 포토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신·구매체간의 갈등이 생겼다.⁶⁾ 선포문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웠으나 대형매체들이 중심이 되어 협회라는 집단을 만들고 이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포문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따른 도전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하나의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하나의 취재현장과 취재원을 두고 취재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기존 매체의 취재물도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협회를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의 독점이 어려워졌다.⁷⁾ 인권의식이 강화되면서 취재진의 관점에서가 아닌 취재원의 관점에서 취재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등 취재윤리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터넷 기자협회를 포함한 3개 언론단체가 힘을 모아 2006년 8월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제정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5) 이승선, “포토라인, 폐지보다 고쳐쓰는게 상책”, 관훈저널 봄호, 관훈클럽, 2019, 9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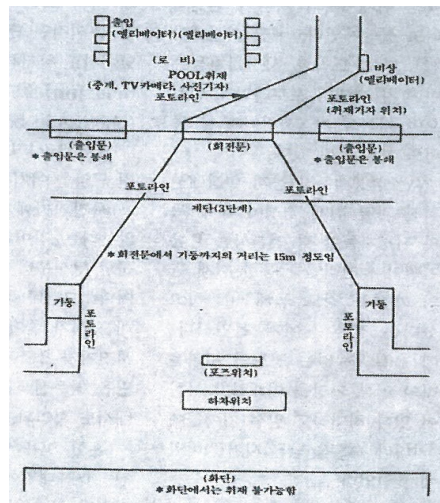
6) 나준영, “포토라인 준칙 제정 1년, 현장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카메라기자협회, 2007, 5면.

7) 나준영, “포토라인 준칙 제정 1년, 현장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카메라기자협회, 2007, 6면.

제2절 포토라인의 순기능

1. 언론의 질서유지 기능

포토라인은 무분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취재의 질서를 바로잡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⁸⁾ 실제로 1993년 고 정○○ 명예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 취재경쟁 과열로 인해 정회장이 기자의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2cm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1995년 11월 1일 한국사진기자회와 한국 TV카메라기자회가 출입기자단, 대검공보관실, 중앙수사부와 포토라인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각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에 포토라인에 대한 협조안내서와 포토라인 도면을 배포하였다. 이후 노○○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하여 법정 에 설 때까지 과정이 취재진과 공보담당관 간의 협조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포토라인 운영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⁹⁾



〈그림 2-2〉 노○○ 대통령 출두시 포토라인 형태¹⁰⁾

8) 김창룡, “한국의 포토라인 문화: 알권리인가, 인격권 침해인가-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19년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2019, 42면.

9) 고명진, “포토브리핑 제도 도입이 우선: 포토라인 운영실태와 정착과제”, 신문과 방송 962호, 한국언론연구원, 2019, 50면.

10) 고명진, “포토브리핑 제도 도입이 우선: 포토라인 운영실태와 정착과제”, 신문과 방송 962호, 한국언론연구원, 2019, 51면.

우리가 포토라인이 없을 경우 벌어지는 일은 상상해보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의 일례로 공항에서 가수 정모군이 입국하는 장면을 기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찍는 과정에서 촬영을 위해 세워둔 사다리에 기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한 촬영기자의 카메라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입국장면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와 섞여 공항이 아수라장이 된 일¹¹⁾을 보더라도 포토라인이라는 것이 취재경쟁에 있어 질서유지 기능을 얼마나 톡톡히 해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포토라인이 없을 경우 다양한 형태의 파파라치가 양산될 것이고 이로 인해 취재원의 사생활이 무작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2.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감시기능

권위주의 시대에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유력정치인 등이 관련 수사에서 경찰·검찰이 정치적으로 처리한 예들이 있어 왔다.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고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이 권력형 비리사건 피의자의 검찰소환장면을 취재하려고 애쓰고 과정에서 소환 사실을 숨기려는 수사팀과 몸싸움이 벌어지곤 했고, 검찰이 언론의 취재를 피해가 위해 검찰 밖에서 수사하기도 하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언론은 포토라인을 통해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포토라인 운영은 검찰 수사 또는 재판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포토라인은 재벌총수나 정치가의 밀실 수사나 비밀소환, 봐주기 수사 등을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¹²⁾ 검찰이나 경찰이 일부 특권층 인사에 대하여 필요 이상 보안과 신변보호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 일반시민의 경우 방치해두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옷로비 의혹사건 수사시 검찰이 당시 법무부장관 부인을 소환 귀가하면서 기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통로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2001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전 간부에 대하여 기자들에게 예고한 날보다 하루 앞서 출두하게 하도록 한 경우이다.¹³⁾ 비리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이

11) 중앙일보, “삿대질 하며 “경찰서 가자!”...정준영 귀국에 인천공항 소란”, 2019년 3월 12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0883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2) 이춘재, “포토라인은 왜 필요하냐고요?”, 한겨레21 통권 1247호, 한겨레신문사, 2009, 28면.

13) 국가인권위원회, 주요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2013, 10면.

검찰에 오지 않거나, 검사를 자택으로 불러 조사를 받는 상황 등이 검찰 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왔다. 포도라인이라는 장치를 통해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과 재력가 등 공인들이 소환조사에 임하도록 하는데 포도라인을 그 기능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⁴⁾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포도라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다. 알권리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¹⁵⁾”,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듣고, 보고, 읽을 자유와 권리¹⁶⁾”,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¹⁷⁾”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로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알권리는 헌법유보(제21조 제4항)와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알권리는 아무에게도 달리 보호되고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특별법에 알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제한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개념이 넓은 기준에서 일보 전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알권리 침해라는 해악을 비교 형량하여 제한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¹⁸⁾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 비해 포도라인 시행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공인이므로 변호사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고, 포도라인이 없는 경우 언론의 자율 취재에만 맡겨둔다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범죄 등은 드러나기

14) 안형준, “포도라인 토론문”, 〈포도라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45-47면.

15) 권영성, 헌법학원론(2010년판), 법문사, 2010, 500면.

16)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박영사, 2013, 440면.

17) 허영, 한국헌법론(신판), 박영사, 2001, 526면.

18) 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대형 언론사 위주의 취재환경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¹⁹⁾ 최근에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이나 버닝썬 사례에서 보더라도 포토라인을 통해 언론이 고위공직자나 기타 공인의 사안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포토라인은 “개별 언론사나 기자가 취재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유명인이나 공적 인물을 공개리에 소환하여 밀실 수사나 비밀소환, 봐주기 수사를 차단하는 투명수사의 공식화를 내포하는 공표지점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상징”이라고 보기도 한다.²⁰⁾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포토라인에 세워져서 얻게 되는 사항이 정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여기서의 정보에 대해서는 ‘지득할 수 있는 정보로 포토라인에 세워져서 얼굴 자체가 보이는 부분만으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과 ‘정보에는 지식에 해당하는 정보도 있지만 얼굴이 공개로 인한 이미지 정보도 국민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는가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아 정보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4. 언론의 자유 보장 기능

언론매체가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 등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본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란 “다양한 전자매체, 출판물을 포함한 전송수단을 통한 의사전달과 표현의 자유”²¹⁾를 말하고,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²²⁾이다. 판례는 “언론의 자유는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 고립된 개인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연대 내지 관계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주권자가 여론을 형성하여 국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공권력을

19) 이두길, “포토라인, 공익과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딜레마”,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68면.

20) 김창룡,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24면.

21) 위키백과 “언론의 자유” (https://ko.wikipedia.org/wiki/%EC%96%B8%EB%A1%A0%EC%9D%98_%EC%9E%90%EC%9C%A0, 2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22) 헌법재판소 2016.10.27. 선고, 2016헌마277(병합) 결정.

비판 또는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²³⁾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개인의 권리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근거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²⁴⁾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더 중요한 권리 앞에서 유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던가, 국가안보, 공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이 있다. 따라서 포토라인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공정성, 진실성, 객관성 등의 요소 등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3절 포토라인의 역기능

1. 사건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인격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 인격을 형성, 유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²⁵⁾를 말한다. 이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서 도출된다.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초상권이 나온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모나 얼굴과 관계된 이미지 뿐만 아니라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초상권

23) 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24) 하태훈·이근우,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17, 6면.

25) 위키백과 “인격권”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2%A9%EA%B6%8C>, 2019년 8월 2일 최종검색)

에 포함된다.”²⁶⁾고 보고 있다. 초상권은 “초상당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하며,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활용되지 않을 권리”로서 피촬영자의 동의가 있으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나, 본인이 동의하고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공표, 복제, 판매되는 등 동의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본다.²⁷⁾ 초상권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성명, 초상이 남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로 이를 허락없이 이용할 때에만 침해되는 권리”²⁸⁾이다.

그동안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파생되는 권리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언론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자유, 초상, 성명, 음성, 저작물 및 사전문서 그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격권의 하나로 초상권이 법률에 의해 명문화되었다.

포토라인에 대하여 “검찰이 공표한 피의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증거에 따라 뒤집어 씌운 범법의 굴레로 오로지 잘못된 시인만을 요구할 뿐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범죄자라고 시인을 강요하는 무언의 협박선”²⁹⁾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세례를 받고 그와 관련된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국민의 상당수는 피의자에 대해 유죄 심증을 갖게 되고, 피의자의 초상권이 침해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인의 경우 간단한 유감 표명을 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답변만으로 통과하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은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를 다수 보아왔다.

2016년 신안 초등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신안군 주민 학부형 3명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섬주민의 학부형 옹호 발언,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 등이 언론을 통해

26) 조소영, “판례에 나타난 초상권 적용법리에 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101면.

27) 김창룡,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초상권 국내판결 사례와 영국 BBC와 IPSO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제2호,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8, 44면 각주 2번.

28) 박경신,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Jurist 통권 396호, 청림인터랙티브, 2003, 17면.

29) 박주선, “포토라인 폐지가 사법개혁의 첫걸음”, 관훈저널 봄호, 2019, 104면.

연일 보도되면서 인터넷 여론이 뜨거웠고, 이로 인해 신안 특산물인 소금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수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떠돌면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고통받고 피해자 역시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³⁰⁾

배우 이○○ 성폭행 사건³¹⁾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무작위로 혐의사실이 공표되고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성폭행 부분이 무고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수사과정에 대하여만 지나칠 정도로 집중 보도를 했었지 이후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하거나 재판결과를 상세하게 보도하는 기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언론 기사를 통해 사안을 접한 국민들은 아직도 이○○이라는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인지하기도 하고,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잘나가던 배우가 하루아침에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포도라인은 언론의 자율적 통제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포도라인이 세워지기 위한 전제로서의 정보(출석시간, 귀가시간)는 수사기관을 통해 나온다. 경찰, 검찰이 관련사실을 기자에게 알려주거나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포도라인 시기를 결정짓게 한다. 수사기관의 ‘공보’기능이 포도라인에 세워짐으로 인해 포도라인의 역기능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여론형성에 따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30) 국민일보, ““젊은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섬주민 발언에 경악...폐북지기 초이스”, 2016년 6월 7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79614&code=61121211&sid1=soc>, 2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뉴시스, “섬 성폭행 미확인 정보 난무..경찰-교총 2차 피해 우려”, 2016년 6월 5일자.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7272284&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ID%26sid1%3D102&light=off>, 2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31) 연합뉴스, “배우 이진옥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2018년 2월 7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0207121900004>, 2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란 ‘공정한 재판’이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언론보도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검찰이 포토라인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 수사 담당자들이 실적을 과시하거나 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기 위해 피의사실을 고의로 유포하는 사례도 발견되곤 했다.³²⁾ 정치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여론재판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토라인이 인권침해에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전략한다고 보기도 한다.³³⁾ 실제 검찰은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결정권을 활용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기도 한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몇몇 판사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공개 소환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이들은 비공개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³⁴⁾ 정치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부 연예인의 사건에서 포토라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고, 시민들은 사전 보도에 따른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판단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게 될 경우 사법기관을 불신하게 되는 요소로도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언론의 재판 전 사전 보도는 배심원의 선정과 배심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광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검증해주고 있다. 재판전 언론보도로 인해 편파된 예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편파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고, 알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판 전에 사실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⁵⁾ 언론의 보도가 집중될수록 판사와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형벌의 상한이나, 집행유예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³⁶⁾

32)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48면.

33)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97면.

34) 조선일보, “포토라인 세워 죄인 낙인, 누가 검찰에 그 권한 줬나”, 2019년 1월 15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5/2019011500111.html, 2019년 6월 10일 최종검색)

35) 박광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범죄보도행태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7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2001, 111면, 114면.

36) 김성룡, “언론의 범죄보도와 재판의 공정성”, 제8회 한국형사학대회 <미디어와 인권, 그리고 형사법> 자료집, 2019, 60면.

3. 무죄추정원칙 위반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 질서의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형벌작용의 필연적인 기속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³⁷⁾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를 포함하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에서 적용되는 원리라고 이해한다. 헌법에서는 ‘형사피고인’만이 무죄추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그 이전 단계에서 형사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 또는 이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에 연관되어 의심받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³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유출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수사 또는 기소 전에는 어떠한 내용일지라도 피의사실이 공표되어서는 안되고,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건당사자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반해 포토라인에서 서게 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게 하는 것은 사건당사자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하게 되어 피의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신뢰를 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법원단계에서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간신문의 80% 이상의 기사가 재판 전 단계를

37)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2001헌바41 결정.

38) 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헌법재판소 2010.9.2. 선고, 2010헌마418 결정; 이은모·김정환, 형사소송법(제7판), 박영사, 2019, 87면; 임동규, 형사소송법(제14판), 법문사, 2019, 13면;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1판), 법문사, 2019, 332면;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09, 37면; 하태훈·이근우, 형사사건에서의 재판 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17, 7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⁹⁾ 이러한 이유를 보면 법원단계에서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용의 또는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활동을 홍보하는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⁴⁰⁾

당사자가 포토라인에 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국민들에게 범죄자로 낙인이 되었기 때문에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다.⁴¹⁾ 그러므로 포토라인이 혐의만으로 형벌을 주는 효과를 실현한다고 보아 “혐의형” 또는 “사회적 형벌로서의 모욕주기⁴²⁾”라고도 표현된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 자체가 과거 중세시대에 광장에 범죄자를 두고 마스크 씌우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한다.

4.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위축되고 방어권에 대한 의지 감소가 능성이 크다. 포토라인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통로를 하나로 하고 있고, 삼각형의 방향이 한곳만 가리키므로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심리적 강제를 주고 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나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무시하고 갈 경우 정치인 등이 국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새겨질까봐 우려하여 심리적 강제에 의해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되지만 학습효과에 의해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양모 대법관의 경우에도 ‘포토라인 패싱’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매체에 의해 지적⁴³⁾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하는 것 자체로 피의자 등에게 강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관의 경우 기자가 만들어놓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39)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2호, 한국언론학회, 2001, 172면.

40) 이상도,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07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2007, 86면.

41) 조선일보, “포토라인 세워 죄인 낙인, 누가 검찰에 그 권한 줬나”, 2019년 1월 15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5/2019011500111.html, 2019년 6월 10일 최종검색)

42) 김창룡,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24면.

43) 동아일보, “피의자 양승태 포토라인 패싱 논란...대법원서 입장 발표”, 2019년 1월 9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109/93614306/1>, 2019년 7월 25일 최종검색)

것일 뿐 자신만의 포토라인을 통해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였다.

사회지도층 인사나 군인 등과 같이 명예를 중요시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피의 사실이 포토라인 등을 통해 언론에 부각되는 경우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되고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 이모 전 기무사령관 사건의 경우 직접적 사인은 아니나 피의자 소환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세워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때 수갑 찬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자살하였다.⁴⁴⁾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정보 회장의 경우도 유서를 남긴 채 사옥에서 투신자살하였고⁴⁵⁾, 성모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수사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선택하였다⁴⁶⁾. 동성여객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던 안모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구치소에서 자살을 한 바 있다. 이들 모두 포토라인에 선 것이 직접적인 자살 사인은 아니나 포토라인 등에 섬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언론 등의 유죄 추정에 가까운 보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⁷⁾

반면에, 포토라인에 서는 이들 중 일부는 쟁쟁한 변호인단을 두고 있어 사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어떠한 표정과 말을 하게 될지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 방어권이 무력화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정치인의 경우 피의자의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포토라인에 서고, 전국민 앞에 혐의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등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결코 방관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인식된다.

44) 조선일보, “세월호 사찰 수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사망”, 2018년 12월 7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2244.html, 2019년 7월 25일 최종검색); 한겨레,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피의자 소환”, 2018년 11월 27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1934.html, 2019년 7월 25일 최종검색)

45) 인터넷 한겨레, “정몽헌 자살 왜?”, 2003년 8월 4일자.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8/005000000200308041931001.html>, 2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46) 아시아경제, “정몽헌·남상국·성완중, 실추된 명예와 억울함”, 2016년 8월 26일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16082611122714601>, 2019년 7월 25일 최종검색)

47) 염건웅, “자살로 이끄는 검찰의 수사관행, 수사권력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 <경찰의 수사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자료집, 바른사회 시민회의, 2016, 14-15면.

제4절 포토라인의 기능에 대한 평가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포토라인을 올바르게 구현해야 할 영상 기자들이 포토라인에 대한 바른 가치적 인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고,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 온도차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과 알권리 사이의 가치적 갈등, 취재원과 취재진 사이의 인간적 갈등, 미디어와 미디어간 상업적 경쟁 갈등 등이 포토라인을 통해 취재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⁴⁸⁾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포토라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포토라인의 순기능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충실하게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첫째, 언론의 질서유지 기능은 최소한 수사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보인다. 출입기자단 중심이 취재현장이 가능한 곳이나 경찰, 검찰의 공산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포토라인이 없더라도 질서유지 기능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포토라인의 질서유지 기능은 언론 자체의 자정노력으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헌법상 존재하는 피의자의 인권을 뛰어넘어 언론의 질서유지 기능을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많은 유투버, 1인 방송인 등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인터넷방송협회 등 3개 기자단체의 자율정화규칙인 포토라인 운영준칙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주목할 바이다. 방송언론기업의 이윤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방송 현실에서 언론의 질서유지 기능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인다. 둘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감시 기능에 있어서는 과거 국민이 사건당사자가 아닌 한 수사 및 재판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기에서는 포토라인의 감시기능을 충분히 해왔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한 중간브리핑을 하고 있고, 국민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감시기능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포토라인에 피의자 등을 세워 얼굴을 공개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듣는 것이 알권리의 충족이

48) 나준영, “포토라인의 현실과 새로운 미래: 현장 운용의 문제점과 일본 사례를 통한 변화의 모색”,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 자료집, 카메라기자협회, 2011, 8면.

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⁴⁹⁾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국민의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충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평가가 필요하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최대한 지켜져야 하는 법원리이고, 수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는 수사권 남용이고, 위법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알권리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정보에 대한 액세스권은 구체적인 법률에 기준을 삼아 시행되어야 하므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범죄가 아닌 한 공인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자 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뛰어넘어 국민의 알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포토라인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피의자 등이 포토라인에 세워짐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받게 되고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여론재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포토라인을 기능을 재점검하고 포토라인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토라인 자체는 언론매체에서 설정한 자율한계선이고 언론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무조건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포토라인의 역기능을 감안할 때 포토라인에 세워지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소환) 정보가 최소화되고, 포토라인에 세워진 이의 피의사실이 공익성이 있는지, 포토라인에 세워져 공개된 피의사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것인지를 평가하여 적절한 기준과 한계선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포토라인을 압박수사의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이용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49) 한국기자협회, “알권리와 취재편의, 그리고 피의자 인권침해...포토라인 딜레마”, 2019년 3월 20 일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5978>,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제 3 장



우리나라 포토라인의 운영현황



우리나라 포토라인의 운영현황

제1절 언론사의 포토라인 운영지침과 실무

1. 「포토라인 운영준칙」의 주요내용

포토라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관련법률이 아닌 2006년 8월 31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제정한 부칙을 포함해 6개 장으로 구성된 「포토라인 운영준칙」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포토라인 운영준칙의 주된 목적은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준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취재경쟁의 폐단을 막고 취재현장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통신사 등의 상호협력에 의해 원활한 취재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실현하고자 한다(제1장 제1조).

동 준칙에서는 포토라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포토라인이란 “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장 제2조 제1호). 포토라인의 주요 시행장소로는 “① 경찰, 법원, 검찰, 청와대, 국회 등 공공기관 외에도, ② 공항, ③ 기자회견장, ④ 각종 발표회·시상식장 등의 행사장, ⑤ 장례식장, ⑥ 공권력에 의해 질서와 통제가 이뤄지는 사건사고 현장, ⑦ 기타 취재진의 경쟁이 심해 포토라인이 필요한 곳”으로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제1장 제3조).

포토라인은 세 가지 형태로 시행이 결정된다. 첫째, 사전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협회 대표단을 구성해 취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나 장소의 대표자와 포토라인의 실행을 위한 구체사항을 조율하여 각 회원사에 통보”한다. 둘째, 취재원이 포토라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취재원이 협회에 포토라인 설정을 요청하면 취재원과 사전 조정을 통해 실행 방안을 정하고, 그 내용을 각 회원사에 통보”한다. 셋째, “취재현장에서 포토라인의 설정이 필요할 경우-현장에서 각 언론매체가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 포토라인의 운영을 취재원과 조정해 확정”한다(제2장 제1조).

포토라인의 운영이 결정되면 각 협회는 그 안을 회원사와 취재원에 통보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회원사 이외의 포토라인 참가자의 경우 “포토라인의 운영과 관련해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회원이 아닌 경우 TV 동영상 취재는 카메라기자협회, 사진취재는 사진기자협회, 인터넷 매체 취재는 인터넷기자협회의 사무국에 포토라인 취재 참가를 신청”한다(제2장 제2조). 각 협회는 프레스카드를 준비하여 각 회원사에 배포하고, 시행규칙의 명칭이 인쇄된 포토라인을 제작하여 각 회원사에 배포한다(제2장 제3조).

프레스카드를 취재진에게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배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취재진들이 포토라인 취재참가를 제한하고 있다(제2장 제4조). 포토라인 취재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각 사 1팀만 취재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외 인원은 포토라인 밖의 제한선에서 취재한다. 1사 1팀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 내부 별도의 취재팀,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사의 경우 동영상팀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취재인원의 규모(1사2팀)를 결정하도록 한다(제2장 제5조).

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취재원의 동선과 취재진과의 간격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도보거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하고, 인터뷰 장소는 도보거리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제3장 제1조). 원활한 취재와 안전을 위해 “포토라인으로부터 3미터 뒤에” 통제선을 설치한다(제3장 제2조). 포토라인 위치는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정한다(제3장 제3조).

포토라인 내에서는 이동이 금지되고 취재원을 따라 움직이는 취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포토라인 내에서 영상취재가 시작되면 참여한 취재자들은 취재 도중에 자리 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동시 포토라인 규칙 위반으로 간주하지만, 여유공간이 넉넉하고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3조 제5조). “취재원의 동선이 긴 경우 취재자들은 사전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포토라인을 넘어선 과잉 동행취재를 금지”하지만, 주요지점에 복수의 포토라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

해 운용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행취재가 꼭 필요한 경우 각 협회는 “풀(Pool)단을 구성해 카메라기자, 사진기자, 인터넷매체기자 각 1 팀씩 대표취재”가 가능하다. 풀(Pool)단의 경우 대표 취재자임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표식(조끼 등)을 착용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는다(제3장 제6조). 포토라인 내에서 대표 인터뷰는 “각 매체의 대표기자 1인씩 총 3명이 포토라인 내 정해진 자리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한다(제3장 제8조).

“포토라인 위반으로 인해 취재 자체가 무산되거나 취재원에 대한 중대한 인격 침해, 기타 상식에 벗어난 중대사고 발생시 각 협회에서 정한 별도규칙에 따른 벌칙을 시행”한다(제4장).

2. 언론사의 포토라인 운영 실무

「포토라인 운영준칙」은 그동안 선언문에만 그쳤던 포토라인 운영이 정확한 규정에 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TV영상기자와 신문 사진기자, 인터넷 영상기자의 연구와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 친구매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 미디어 분야에서 영상사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영상취재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 포토라인의 붕괴시 필요한 제재 조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매체의 영상기자도 포토라인 취재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방송매체간 보편적 취재자유를 보호하였다는 점,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국민의 알권리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⁵⁰⁾

「포토라인 운영준칙」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고, 동일 준칙이 아직도 취재현장에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사이 언론매체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나, 포토라인에 관한 기준원칙은 아직도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준칙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칙 제2장 제1조에 따르면 포토라인 운영에 있어서 협회가 주도한다고 하였으나 협회가 사전 조정 역할이 미비하고, 제2장 제2조에서 회원사

50) 나준영, “포토라인 준칙 제정 1년, 현장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2-8면.

이의 참가자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매체의 참여가 적고, 신청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올 경우 배제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제4장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포토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⁵¹⁾ 실제로 포토라인 운영이 협회 중심이 아니라 각 기관의 출입기자단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운영준칙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으나 준칙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재진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도 경우도 있고, 취재현장에서 영상기자에 대한 취재원의 취재거부사태, 취재방해로 인한 취재원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취재진의 운영준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포토라인이 붕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⁵²⁾

〈표 3-1〉 포토라인 붕괴사례⁵³⁾

붕괴유형	실제 사례
취재진끼리의 경쟁	2007년 한화 모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취재를 위해 서울지법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었으나 구속가능성이 커진 김회장이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한 기자가 김회장 앞을 막아섰고, 기자간에 촬영을 위해 소동이 벌어진 사례
제3의 매체 등장	언론사 기자가 아닌 방송중계 담당인 스테디카메라감독이나 교양프로그램 카메라맨과 리포터가 난입하는 사례 개인유튜버나 1인 방송인이 영상촬영을 위해 포토라인에 들어오는 사례
과잉경호	200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혐의를 받던 삼성 모회장이 김포공항 입국시 경호원이 취재진의 숫자보다 더 많아 과잉경호가 이루어졌고, 차량탐승 과정 촬영시 기자부상과 취재장비 파손이 발생한 사례
취재원의 패싱	2007년 5월 보복폭행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두한 한화 모회장이 탄 승용차가 포토라인을 지나 경찰서 계단 앞에서 정차함에 따라 기자들이 우왕좌왕한 사례
제3자의 개입	2005년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X파일과 관련하여 검찰에 소환된 홍모대사가 들어오는 순간 포토라인 안쪽으로 민노당원이 뛰어들어 기습시위를 한 사례 행사장이나 공항에서 일반인들이 유명연예인을 보기 위해 포토라인 현장에 난입하는 사례

51) 강재훈, “오늘의 포토라인 현실과 대처방안”,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 자료집, 2011, 1면; 정상보, “포토라인 준칙 선포 1년! 현장은”,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7면

52) 나준영, “포토라인 준칙 제정 1년, 현장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8-9면; 이준희, “포토라인 붕괴시 대응방안”,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자료집, 2011, 1면.

53) 박항구, “포토라인 준칙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2-7면; 신원건, “포토라인 붕괴유형 및 사례”,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2-6면; 정상보, “포토라인 준칙 선포 1년! 현장은”,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3-6면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3. 각 언론사별 범죄수사 관련 보도 시행 세칙

「포토라인 운영준칙」이 각 언론사별 상황에 맞는 수사보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자, 언론사별로 보도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겨레신문의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이다. 2010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기점으로 한겨레신문에서는 범죄수사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시행세칙의 기본원칙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범죄보도 및 재판보도에 있어서 무죄추정 원칙의 준수,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대등한 지위, 진실과 사실확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담고 있다.⁵⁴⁾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이의 견해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피의자쪽 견해는 후속보도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며, 수사기관 일반 진술에만 의존하여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한 기사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받는 혐의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밝힌 잠정적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것도 강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또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의혹 대상이 되거나 수사대상이 된 경우 실명이나 얼굴사진을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시에도 피의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한다.

한겨레 신문사의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은 기본원칙, 균형보도, 기사의 표현, 제목의 표현, 신원공개, 선정적 보도의 자제, 출처 표기, 수사절차의 보도 등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보도의 기본원칙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54) 한겨레,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018년 6월 10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44078.html>,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1. 기본 원칙⁵⁵⁾

- 1) 시민의 알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지키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다. 또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혐의자, 피고인)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 알권리와 인권 보호는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다.
- 2) 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다. 언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힘은 물론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이의 권리가 보장되고 지켜지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3) 범죄 수사 및 재판 보도에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언론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이에 대한 선입견을 갖거나 이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4) 피의자(혐의자, 피고인)는 수사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범죄의 증거,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견해 등은 법정에서 공개되고 검증되기 때문에 범죄 수사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양쪽의 견해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5) 수사기관의 발표에만 의존하는 보도는 자제한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범죄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피의자쪽의 의견을 후속보도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균형 보도⁵⁶⁾

- 1) 범죄사건의 보도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이의 견해는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 당사자의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없을 때는 변호인이나 가족, 지인, 동종 직업 종사자 등 관련 사안을 알 만한 사람에게서 견해를 들을 수 있다. 급박한 보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피의자(혐의자, 피고인) 쪽의 견해를 듣고 보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견해를 들을 수 없었을 때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의자 쪽의 견해는 후속 보도를 통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범죄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일반인이 의혹을 품고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피의자(혐의자, 피고인) 쪽의 견해는 반드시 보도에 반영해야 한다. 당사자가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경우,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한다.
- 2) 피의자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도 당사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보도는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전한 피의자(혐의자, 피고인)의 말과 태도를 보도할 때는 그런 수사기관의 전언이 피의자(혐의자, 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5) 한겨레,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018년 6월 10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44078.html>,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 3)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거짓임이 분명한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이익을 얻거나 다른 부당한 목적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한 때는 이를 신지 않을 수 있다.

시행세칙에서는 신원공개에 관한 사항과 수사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신증을 기할 것을 요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등이 수사대상이 된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으나, 피의자한테 모욕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취재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취재과정에서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고 오보가 되지 않도록 신증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6. 신원 공개⁵⁷⁾

- 1)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 혐의자)와 증인, 피해자, 그 가족의 이름과 상세한 거주지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고위 공직자 또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의혹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공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범인의 체포와 추가 피해의 예방 등 수사상 필요할 경우 등 공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의혹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때에도 피의자한테 모욕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수사 절차의 보도⁵⁸⁾

- 1) 출구금지,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 절차에 대한 과잉 보도를 자제한다.
- 2) 범죄사건의 보도 및 취재, 논평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취재 보도와 편집, 논평을 맡고 있는 신문 구성원이 법률적 기준에 맞지 않게 자신의 선호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특정인의 체포 또는 구속을 촉구하는 등의 태도를 배척한다.

9. 오보 등의 바로잡음⁵⁹⁾

- 1) 오보나 표현의 실수, 보도 내용과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권익이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충분하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오보는 사과문 게재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판단을 두고 의견이 맞서면 이해당사자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한다.

56) 한겨레,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018년 6월 10일자(<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44078.html>,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 2) 사회적 관심을 끈 범죄 사건이 무죄로 확정 판결이 나거나 검찰의 기소 내용 가운데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법원이 무죄로 인정하면, 독자들이 무죄 판결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한다. 다만, 그런 보도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다시 상기시키는 등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의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은 취재원인 피의자의 관점에서 보호의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다수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포토라인 운영준칙」보다 진일보한 형태이고, 현장구동력이 보다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과 실무

1. 검찰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

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의한 언론보도의 제한

포토라인 자체는 언론영역의 문제이고,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공개 소환 과정 등에서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세워지는 것은 무죄추정에 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영역에서도 포토라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포토라인 자체에 관하여 수사관련 법적 근거 규정은 없다. 다만, 포토라인이 정착된 1993년 이후부터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국회의원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이 포토라인에 섰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형법 제126조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또한 형사소송

57) 한겨레,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018년 6월 10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44078.html>,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58) 한겨레,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018년 6월 10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44078.html>,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59) 한겨레,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018년 6월 10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44078.html>,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법 제19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내사·종결한 범죄사건에 적용하며 공보와 수사와 사건관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2003년 9월 대검찰청 훈령 제59호로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동 규칙에 따르면, 수사 내용의 공개·누설을 금지하되 국민의 의혹·불안을 해소하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수사를 공개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항을 정확하게,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 사건의 공보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피의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공개할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빙성, 용의자의 신원이나 용의점은 공개할 수 없다.

2009년 박연차 로비사건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이 대통령 서거로 이어짐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⁶⁰⁾ 2010년 2월 19일에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2010년 1월 22일 인권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준칙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774호)」이 제정되었고, 이후 세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준칙에 이르고 있다.

2016년에 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1060호)」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를 확립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 준칙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적용되지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이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준칙이 적용될 수 있다(제2조).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제3조).

60) 하태훈,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권, 안암법학회, 2015, 60면.

수사 및 공보업무 종사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제4조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사건의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제4조 제2항).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제9조). 다만, 예외적으로 ①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③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제10조).

제9조 (기소 전 공개금지)

-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으로 본다.

제10조(예외적 공개)

-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본장 제4절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 ② 불기소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관련사건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검찰의 수사사건 공보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제13조).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 또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제14조).

포토라인과 관련하여 해당준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서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안 되고,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조). 그러나 ‘공적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사실 등이 알려져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되고 있다(제23조).

1.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하여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체포, 구속(구속건 피의자신문을 위한 호송을 포함한다) 또는 귀가 과정에 한하여

동 준칙에서는 수사과정에서의 촬영은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나 “사건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인 ‘공적인물’로는 고위공직자, 정당대표 등 정치인, 공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억 원 이상의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해당된다.

- 제17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 나. 국회의원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 라. 교육감
- 마.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 바.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 사.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 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
- ③ 제2항에 열거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수사과정에서의 촬영은 “주요 공인(公人)으로서 소환 사실이 미리 알려져 소환 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나 사건당사자가 포토라인에 서는지 여부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초상권 보호를 위해 촬영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초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⁶¹⁾

나. 공보준칙 적용의 엄격화

포토라인과 관련하여 주요피의자 수사기관 출석과정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위반, 초상권 침해 등의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2019년 법무부는 비공개 소환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보준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소환일시 공개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포토라인에 관하여 언론매체의 자율적인 보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포토라인의 설정대상, 범위, 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61) 김후곤, “초상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조화를 위한 논의 제안”,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55면.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⁶²⁾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수사공보준칙을 근거로 하여 공식적인 수사공보방식에 의해 피의사실을 광범위하게 공표하는 것은 법관이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예단을 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상세하고 빈번하게 수사 상황이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정정보도청구나 위법한 수사공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책만으로는 공보 대상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 수사공보가 이뤄지는 경우 공보 대상자 혹은 공보로 인해 법률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수사공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공보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⁶³⁾

2. 경찰의 언론보도 관련 제한

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의 언론보도 관련사항

2019년에 개정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917호)⁶⁴⁾은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의 공보에 있어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사건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찰이 사건을 공보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제1조).

동 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등 인권보호와 수사내

62) 2019년 법무부 핵심정책 설명자료.

(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6555836&tblKey=GMN,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63) 법률신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막기 위한 법제정 필요”, 2019년 5월 29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357&kind=&key=&ad=article>, 2019년 6월 20일 최종검색)

64)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21917&bbsId=B0000032&searchCnd=&searchWrd=§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629&viewType=&delCode=0&option1=&option2=&option4=&option5=&deptId=&larCdOld=&midCdOld=&smCdOld=&orderType=&pageUnit=10&pageIndex=1>,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용의 보안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이나 내사중인 사건의 공개는 공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된다(제4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예외적인 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의 손상, 사생활 또는 심리적 안정 등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5조).

제5조(예외적인 공개)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서면에는 사건의 개요, 적용법률, 피해상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서면공보 방식의 예외로서 브리핑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공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제8조).

제8조(브리핑·인터뷰에 의한 공보)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리핑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수사사건등을 공보할 수 있다.

1. 서면 공보자료만으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전달이 곤란하여 문답식 설명이 필요한 경우
2. 효과적인 수사사건등의 공보를 위하여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언론의 취재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신속하게 공보할 필요가 있으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수사사건 공보시 반드시 사전보고 사항이다. 공보책임자는 사전에 직근 상급기관 수사부서장 및 홍보부서장에게 공보내용 및 대상에 대하여 보고한다. 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사건을 공보하는 경우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수사사건을 공보할 때에는 신원이 유추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

되는 내용, 수사진행 상황, 사건관계자의 범죄경력 등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제10조).

제10조(공보 제한 사항) ①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
2.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3. 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4. 사건관계자의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자료
5. 범죄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다만,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예외로 한다.)
6.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
7. 수사사건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8. 국민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수법 및 참혹한 피해상황 등
9. 모방자살을 유발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살방법·수단·동기·장소 등 정보

수사사건을 공보할 때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이나 추측, 예단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되고, 언론매체에 보도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제11조). 유의사항으로는 다음의 내용들이 있다.

제11조(공보시 유의사항) 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 또는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사건관계자에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피해자의 습관, 질병, 가정환경, 주변인들의 평가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이 포함되거나, 범죄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⑥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주소·거소지, 직장·학교 등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수사사건 공보과정에서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제12조),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 등에 의해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취재를 허용할 수 있다(제1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경우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16조).

등 규칙에서는 포토라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관계자에 대한 소환·현장검증 등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때에는 언론에 그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등 규칙상 공보 제한 사항에도 부록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사건관계자가 사생활 또는 인권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은 언론매체에 보도보류를 요청하고, 이미 보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1조).

3. 수사실무상 공개소환제도의 운영

가. 공개소환제도와 포토라인과의 연관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소환(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출석요구는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나 공적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소환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된다. 출석요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개소환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포토라인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지는 공적 인물의 정보 대부분이 공개소환 일정 통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토라인 논란을 검토함에 있어서 공개소환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소환일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지만,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환일정 공개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촬영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소환일정을 공개하면 언론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포토라인에 세워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⁶⁵⁾

65) 김후곤, “초상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조화를 위한 논의 제안”,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나. 공개소환제도의 운영현황

공개소환은 수사실무상 출석요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공식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개소환 여부 파악을 위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개소환 사례에 직접 자료조사를 함으로써 그 통계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분석 서비스 사이트인 빅카인즈⁶⁶⁾에 접속하여 2015년 1월 1일 까지 기사 중 “공개소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 1,531개를 직접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는 동일인물에 대한 재소환사례도 있었으나 이는 제외하고 정리하였다.

공개/비공개 소환관련 사례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2015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4. 3.	성○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 4월 9일 자살.	노컷뉴스, 2015년 4월 4일자. ⁶⁷⁾
5. 6.	김○수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성완종 리스트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중부일보, 2015년 5월 7일자. ⁶⁸⁾
5. 14.	이○구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아시아경제신문, 2015년 5월 14일자. ⁶⁹⁾
6. 8. (비공개)	홍○종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리스트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경향신문, 2015년 6월 8일자. ⁷⁰⁾
11. 2.	이○훈 (청주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 검찰 소환 조사	대전일보, 2015년 11월 2일자. ⁷¹⁾

66) 빅카인즈 사이트(<https://www.bigkinds.or.kr>,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67) 노컷뉴스, “檢,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18시간 강도높은 조사”, 2015년 4월 4일자.
(<https://www.nocutnews.co.kr/news/439329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68) 중부일보, “검찰 ‘成리스트’ 회유·진술 맞추기에 초강경 대응”, 2015년 5월 7일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988240>,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69) 아시아경제, “‘부정부패 전면전’ 외치더니 檢 앞에선 李”, 2015년 5월 14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5141017349485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70) 경향신문, “홍 의원 오후 1시·비공개 소환… 검찰, 실세 눈치보나”, 2015년 6월 8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82140585&code=9403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71) 대전일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청주시장 이례적 공개소환 촉각”, 2015년 11월 2일자.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9187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표 3-3〉 2016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1. 29. (자진 출석)	이○석 (새누리당 의원)	포스코 비리 사건 • 검찰 4차례 소환했으나 불응함 • 체포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되자 자진 출석	YTN, 2016년 1월 29일자. ⁷²⁾
7. 12.	강○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2016년 7월 12일자. ⁷³⁾
7. 13.	김○주 (넥슨 창업주)	진경준 특혜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MBN, 2016년 7월 13일자. ⁷⁴⁾
7. 14. 7. 15.	정○훈 (전 서울시립 교향악단 감독, 지휘자)	서울시향 명예훼손, 성추행 등 사건 • 7. 14. 검찰 소환 조사 • 7. 15. 경찰 소환 조사	SBS, 2016년 7월 16일자. ⁷⁵⁾
8. 11.	요하네스 ○○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대표)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연비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뉴시스, 2016년 8월 11일자. ⁷⁶⁾
8. 11.	허○영 (롯데케미칼 사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정부 상대 소송 사기, 비자금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 2016년 8월 11일자. ⁷⁷⁾
8. 25.	황○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겸 롯데쇼핑 사장)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KBS, 2016년 8월 25일자. ⁷⁸⁾

72) YTN,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검찰 자진 출석”, 2016년 1월 29일자.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9101252841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73) 파이낸셜뉴스,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 강현구 檢 출석, “사실대로 조사 받겠다””, 2016년 7월 12일자.

(http://www.fnnews.com/news/20160712102933287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74) MBN, “‘진경준 특혜 의혹’ 김정주 넥슨 창업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2016년 7월 13일자.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94751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75) SBS, “‘만세’하며 나온 정명훈…자신감 있게 의혹 일축”, 2016년 7월 16일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2422&plink=ORI,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76) 뉴시스, “‘배출가스 의혹’ 폭스바겐 現대표 오늘 검찰 출석”, 2016년 8월 11일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0_0014279763&cID=10201&pID=10200,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77) 헤럴드경제, “檢,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신분 소환”, 2016년 8월 11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100046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78) KBS, “‘신동빈 최측근’ 황각규 집중 조사…이인원 내일 소환”, 2016년 8월 25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4634&ref=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8. 26. (피의자 자살)	이○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겸 부회장)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예정일 당일 자살	한겨레, 2016년 8월 26일자. ⁷⁹⁾
9. 1.	신○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그룹 가장 급여 수령 • 검찰 소환 조사	매일경제, 2016년 9월 1일자. ⁸⁰⁾ 아시아경제(공개소환 추정 정보 기사), 2016년 9월 2일자. ⁸¹⁾
9. 6. (비공개)	황○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겸 롯데쇼핑 사장)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 검찰 소환 조사(재소환) • 비공개 소환	국민일보, 2016년 9월 6일자. ⁸²⁾
9. 23. (비공개)	김○준 (부장검사)	금품 향응·수수,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 • 검찰 소환 조사(비공개) • 차관급 이상만 공개한다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근거로 비공개	서울신문, 2016년 9월 23일자. ⁸³⁾
10. 31.	최○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KBS, 2016년 10월 31일자. ⁸⁴⁾
11. 2.	안○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매일경제, 2016년 11월 2일자. ⁸⁵⁾
11. 6.	우○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YTN, 2016년 11월 6일자. ⁸⁶⁾

79) 한겨레, “롯데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 스스로 목숨 끊어(종합)”, 2016년 8월 26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8513.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80) 매일경제, “檢 출두 신동주 ‘혐의 일부 인정’”, 2016년 9월 1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9/62182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81) 아시아경제, “檢, 내주 신동주 재소환...신동빈 조사 시기도 결정(상보)”, 2019년 9월 2일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0215434651545>,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82) 국민일보, “[단독] ‘신동빈 최측근’ 황각규 롯데쇼핑 사장 검찰 재출석”, 2016년 9월 6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10573&code=61121311&cp=kd>,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83) 서울신문, “특감 16일 만에... 김형준 부장검사 檢 소환”, 2016년 9월 23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2400900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84) KBS, “최순실 검찰 출석...‘죽을죄 지었다’”, 2016년 10월 31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0479&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85) 매일경제, “안종범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해’...검찰 소환”, 2016년 11월 2일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6/11/76348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86) YTN, “우병우, 수사팀 구성 75일 만에 검찰 출석”, 2016년 11월 6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61106095453676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11. 12. (비공개)	재벌총수 8인 (정○구, 김○근, 김○연, 손○식, 이○용, 구○무, 조○호, 최○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매일경제, 2016년 11월 13일자. ⁸⁷⁾
11. 14.	안○근, 이○만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서울경제, 2016년 11월 14일자. ⁸⁸⁾
11. 17.	조○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 18일자. ⁸⁹⁾
12. 24.	최○실, 김○ (전 문체부 차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구속 상태에서 공개소환 • 특검 소환 조사	KBS, 2016년 12월 24일자. ⁹⁰⁾
12. 24. (비공개)	조○옥 (간호장교, 대위)	세월호 7시간 의혹 • 특검 소환 조사 • 참고인 조사 • 본인이 원하지 않아 비공개	한겨레, 2016년 12월 24일자. ⁹¹⁾
12. 25.	정○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구속 상태에서 공개소환 • 특검 소환 조사	YTN, 2016년 12월 25일자. ⁹²⁾
12. 26.	홍○선 (전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삼성 합병 찬성 의혹 • 특검 소환 조사	MBC, 2016년 12월 26일자. ⁹³⁾
12. 29.	김○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삼성 합병 관련 • 특검 소환 조사	YTN, 2016년 12월 29일자. ⁹⁴⁾

87) 매일경제, “총수 8명 참고인신분 비공개소환”, 2016년 11월 13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1/78992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88) 서울경제, “안봉근-이재만 나란히 검찰 출석, ‘문고리 3인방’ 모두 소환 ‘굴욕’”, 2016년 11월 14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L3YUS4E6F>,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89) 헤럴드경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檢 출석 靑 참모들 안하무인?”, 2016년 11월 18일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11800034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90) KBS, “특검, 최순실·김종 첫 공개 소환”, 2016년 12월 24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9718&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91) 한겨레, “특검, 조여옥 대위 참고인 조사…‘세월호 7시간’ 퍼즐 맞추기”, 2016년 12월 24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5964.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92) YTN, “특검, 정호성 공개소환…김종도 13시간 만에 재소환”, 2016년 12월 25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61225133837051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93) MBC, “특검, 김기춘·조윤선 등 압수수색…홍완선 공개 소환”, 2016년 12월 26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200/article/4190727_19821.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94) YTN, “김재열 사장 오늘 공개 소환…삼성 합병 대가 조사”, 2016년 12월 29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61229001236457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12. 29.	모○민 (주 프랑스 대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문화계 블랙리스트 • 특검 소환 조사	매일경제, 2016년 12월 29일자. ⁹⁵⁾
12. 30.	김○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문화계 블랙리스트 • 특검 소환 조사	YTN, 2016년 12월 30일자. ⁹⁶⁾
12. 30.	장○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구속 상태에서 공개소환 • 특검 소환 조사	경향신문, 2016년 12월 30일자. ⁹⁷⁾

〈표 3-4〉 2017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1. 6.	임○기 (제일기획 사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삼성 합병 관련 • 특검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 2017년 1월 6일자. ⁹⁸⁾
1. 6.	차○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구속 상태에서 공개소환 • 특검 소환 조사	매일경제, 2017년 1월 6일자. ⁹⁹⁾
1. 9.	최○성 (삼성그룹 부회장), 장○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삼성 합병 관련 • 특검 소환 조사 • 참고인 조사	MBC, 2017년 1월 9일자. ¹⁰⁰⁾

95) 매일경제,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모철민 대사 공개 소환…윗선 실체 밝힌다”, 2016년 12월 29일자.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10288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96) YTN, “블랙리스트·삼성 의혹 집중 수사…김종덕·장시호 등 출소환”, 2016년 12월 30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61230090127049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97) 경향신문, “[속보]특검, 최순실 조카 장시호 소환해 조사 착수”, 2016년 12월 30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301001001&code=9403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98) 헤럴드경제, “특검, 임대기 소환…삼성 사장급 첫 공개 소환”, 2017년 1월 6일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0600021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99) 매일경제, “특검, 차은택 첫 공개 소환…‘새로운 범죄정보 확인’”, 2017년 1월 6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1/1475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00) MBC, “삼성 최지성·장충기 소환 조사, 이재용 소환 임박”, 2017년 1월 9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00001_21408.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54 포토라인을 통해 본 공개수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1. 12.	이○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삼성 합병 관련 뇌물 사건 • 특검 소환 조사 • 지난 11월과 다른 피의자 공개 소환	한국경제, 2017년 1월 12일자. ¹⁰¹⁾
1. 31.	유○경 (주 미얀마 대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주 미얀마 대사 임명 당시 최순실 개입 의혹 • 특검 소환 조사	매일경제, 2017년 1월 31일자. ¹⁰²⁾
2. 18.	이○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삼성 합병 관련 • 특검 소환 조사 • 구속 후 조사	서울신문, 2017년 2월 17일자. ¹⁰³⁾
2. 19.	김○식 (코이카 사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이권 개입 • 특검 소환 조사 • 참고인 조사	MBN, 2017년 2월 19일자. ¹⁰⁴⁾
3. 18.	최○원 (SK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사면 특혜 의혹 • 참고인 조사(피의자 전환 가능성 존재)	YTN, 2017년 3월 18일자. ¹⁰⁵⁾
3. 21.	박○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특검 소환 조사	문화일보, 2017년 3월 21일자. ¹⁰⁶⁾
8. 2.	이○한 (종근당 회장)	윤전기사 폭언 사건 • 경찰 소환 조사	YTN, 2017년 8월 2일자. ¹⁰⁷⁾

101) 한국경제,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박영수 특검과 차 한잔 없이 밤샘조사…뇌물죄에 배임·횡령까지 걸어 압박”, 2017년 1월 12일자.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1129074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02) 매일경제, “특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소환…최순실 개입의혹 주목”, 2017년 1월 31일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01/69195/>,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03) 서울신문, “특검, 이재용 18일 오후 2시 공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2017년 2월 17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1750014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04) MBN, “특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소환…‘최순실 미얀마 사업’ 조사”, 2017년 2월 19일자.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14690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05) YTN, “최태원 회장 녀 달 만에 재소환…미소 속 침묵”, 2017년 3월 18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0318160056735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06) 문화일보, “탄핵 11일만에 ‘29자 유감’… 혐의부인 긴 메시지는 자제”, 2017년 3월 21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21010303301230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07) YTN, “‘기사 욕설’ 종근당 이장한 회장 오늘 공개 소환”, 2017년 8월 2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0802000145131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9. 18.	문○근 (배우)	MB 블랙리스트 • 검찰 소환 조사 • 참고인(피해자) 조사	YTN, 2017년 9월 14일자. ¹⁰⁸⁾
9. 26.	최○호 (전 MBC PD)	MB 블랙리스트(방송가 장악) • 검찰 소환 조사 • 참고인(피해자) 조사	YTN, 2017년 9월 24일자. ¹⁰⁹⁾
10. 10.	추○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관제시위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YTN, 2017년 10월 10일 자. ¹¹⁰⁾
10. 12.	서○순 (가수 고 김광석 부인)	김광석, 딸 사망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세계일보, 2017년 10월 16일 자. ¹¹¹⁾
10. 27.	이○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 검찰 소환 조사	뉴스1, 2017년 10월 27일 자. ¹¹²⁾
10. 28.	서○호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 검찰 소환 조사	MBN, 2017년 10월 28일 자. ¹¹³⁾
10. 29.	장○중 (전 부산지검장)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 검찰 소환 조사	연합뉴스, 2017년 10월 30일 자. ¹¹⁴⁾
11. 6. (자살)	변○훈 (서울고검 검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 검찰 소환 조사 • 기사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 다름 • 10. 28. 조사받은 후 11. 6. 영 장실질심사 절차 바로 전 자살	한국일보(공개소환), 2017년 11월 7일자. ¹¹⁵⁾ 국민일보(비공개소환), 2017 년 11월 8일자. ¹¹⁶⁾

108) YTN, “‘MB 블랙리스트’ 문성근 오는 18일 檢 출석...수사 본격화”, 2017년 9월 14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0914180049534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09) YTN, “검찰, mb정부 ‘방송장악’ 본격 수사...최승호 피디 출석”, 2017년 9월 24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0924222151931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10) YTN, “박원순 시장 대리인 출석...추선희 3차 소환”, 2017년 10월 10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1010160125915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11) 세계일보, “경찰, 이번엔 서해순 비공개 소환...지난 12일엔 공개 소환”, 2017년 10월 16일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1600329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12) 뉴스1, “‘국정원 수사방해’ 현직 검사들 출소환...‘불법행위 안했다’(종합)”, 2017년 10월 27일자.

(<http://news1.kr/articles/?313658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13) MBN, “‘국가에 충성 다했다’...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소환”, 2017년 10월 28일자.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6810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14) 연합뉴스, “검찰 ‘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15시간 조사...영장 검토(종합)”, 2017년 10월 30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71030027351004?input=1195m>,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15) 한국일보, “‘검찰 망신주기식 수사’ 문제 없다”, 2017년 11월 7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07041775815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16) 국민일보, “‘유족 자극하지 말자’ 동기 조문 포기한 윤석열 지검장”, 2017년 11월 8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84968&code=61121211&cp=kd>,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11. 10.	이○호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 납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문화일보, 2017년 11월 10일 자. ¹¹⁷⁾
11. 20.	전○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롯데홈쇼핑 뇌물 수수 • 검찰 소환 조사 • 현 정권 수석 조사	MBC, 2017년 11월 21일 자. ¹¹⁸⁾
12. 5.	김○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댓글 공작 • 검찰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 2017년 12월 5일 자. ¹¹⁹⁾
12. 10. (비공개)	우○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검찰 소환 조사 • 피의자신분 다섯 번째 조사 (비공개)	한국일보, 2017년 12월 10일 자. ¹²⁰⁾

〈표 3-5〉 2018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1. 16.	조○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신생아 사망 사건 • 경찰 소환 조사	MBC, 2018년 1월 16일 자. ¹²¹⁾
2. 25. (비공개)	이○형 (다스 전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다스 실소유주 의혹 • 검찰 소환 조사(비공개)	중앙일보, 2018년 2월 26일 자. ¹²²⁾

- 117) 문화일보, “이병호 檢 출석… ‘국정원 흔들려 걱정된다’”, 2017년 11월 10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10010710303190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18) MBC, “전병현 前 수석 17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2017년 11월 21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61190_21408.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19) 헤럴드경제, “‘군 댓글공작’ 김태효 전 비서관 檢 소환…‘MB청와대’ 정조준(종합)”, 2017년 12월 5일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20500035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20) 한국일보, “우병우 10일 또 검찰 소환… 수사기관 다섯 번째, 포토 라인엔 안 세워”, 2017년 12월 10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10215451402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21) MBC,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오늘 공개소환”, 2018년 1월 16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501190_22606.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22) 중앙일보, “검찰 ‘MB 아들’ 이시형 불러 다스 의혹 조사”, 2018년 2월 26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239574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2. 26.	안○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 성추행, 보복성 인사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MBC, 2018년 2월 23일 자. ¹²³⁾
2. 27.	김○진 (전 국방부장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 축 소, 은폐 혐의 등 • 검찰 소환 조사	서울경제, 2018년 2월 27일 자. ¹²⁴⁾
3. 14.	이○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다스 실소유 주, 뇌물 등 • 검찰 소환 조사	YTN, 2018년 3월 15일 자. ¹²⁵⁾
3. 19.	안○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	성폭행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연합뉴스, 2018년 3월 19일 자. ¹²⁶⁾
4. 6.	염○열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세계일보, 2018년 4월 6일 자. ¹²⁷⁾
4. 27. (비공개)	권○동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 검찰 소환 조사(비공개)	경향신문, 2018년 4월 27일 자. ¹²⁸⁾
5. 4.	김○수 (국회의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 경찰 소환 조사	YTN, 2018년 5월 4일 자. ¹²⁹⁾
5. 24.	이○원 (배우)	성추행, 흥기협박 혐의 • 검찰 소환 조사	세계일보, 2018년 5월 23일 자. ¹³⁰⁾

123) MBC, “[단독] 서지현 ‘인사 불이익’ 있었다…안태근 개입 여부 조사”, 2018년 2월 23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37900_22663.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24) 서울경제, “김관진 검찰 출석, 석방 3개월 만에 공개 소환 ‘문제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 2018
년 2월 27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RVV85VA9E>,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25) YTN, “MB, 21시간 고강도 밤샘조사…묵묵부답 귀가”, 2018년 3월 15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0315091159513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26) 연합뉴스, “안희정 두 번째 검찰 출석…“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 2018년 3월 19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0319054851004?input=1195m>, 2019년 8월 10일 최종
검색)

127) 세계일보,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염동열 檢 출석”, 2018년 4월 6일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0600455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28) 경향신문, “권성동 남북회담날 비공개 소환…검찰, 봐주기 논란”, 2018년 4월 27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72119015&code=9403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29) YTN, “‘참고인 신분’에 전격 공개 소환…수사 쟁점은?”, 2018년 5월 4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0504050908452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30) 세계일보, “‘성추행·흥기협박 혐의’ 배우 이서원, 24일 검찰 공개 소환”, 2018년 5월 23일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2300531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5. 24.	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 청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	머니투데이, 2018년 5월 24 일자. ¹³¹⁾
5. 28.	이○희 (한진그룹 회장 부인)	운전기사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혐의 • 경찰 소환 조사	중앙일보, 2018년 5월 28일 자. ¹³²⁾
6. 11.	이○희 (한진그룹 회장 부인)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 청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	한국경제, 2018년 6월 11일 자. ¹³³⁾
6. 28.	조○호 (한진그룹 회장)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 검찰 소환 조사	아시아경제, 2018년 6월 28 일자. ¹³⁴⁾
7. 23. 7. 24.	김○현 (전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찬 (전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재취업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한겨레, 2018년 7월 25일 자. ¹³⁵⁾
7. 31.	목○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삼성 노조 와해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한국일보, 2018년 7월 31일 자. ¹³⁶⁾
8. 8.	김○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사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KBS, 2018년 8월 8일자. ¹³⁷⁾
8. 13.	정 ○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농단 사건(원세훈 문건) • 검찰 소환 조사	YTN, 2018년 8월 13일자. ¹³⁸⁾

131) 머니투데이, “‘외국인 불법고용’ 조현아 9시간 조사…이명희 내달 초 소환”, 2018년 5월 24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52423450038515&outlink=1&ref=%3A%2F%2F>,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32) 중앙일보, “[속보] 한진家 이명희 이사장, 경찰 오전 8시20분 재출석”, 2018년 5월 28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266796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33) 한국경제, “한진그룹 이명희 출입국청 출석…불법고용 의혹 부인”, 2018년 6월 11일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6111868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34) 아시아경제, “위기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진에어 생사 기로’”, 2018년 6월 28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809512073585>,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35) 한겨레, “공정위 특혜취업 수사 정점으로…정재찬 전 위원장 소환”, 2018년 7월 25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732.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36) 한국일보,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고위임원 첫 공개 소환”, 2018년 7월 31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31156837124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37) KBS,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현직 판사 첫 공개 소환”, 2018년 8월 8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1633&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38) YTN, “검찰, ‘원세훈 문건’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 공개소환”, 2018년 8월 13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08132229317410,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8. 14.	김○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법농단 사건(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입) • 검찰 소환 조사 • 구속기간 만료 석방 8일 뒤 다시 소환	문화일보, 2018년 8월 14일자. ¹³⁹⁾
8. 16.	박○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사법농단 사건(법관모임 와해문건) • 검찰 소환 조사	KBS, 2018년 8월 16일자. ¹⁴⁰⁾
8. 22.	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농단 사건(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검찰 소환 조사	한국일보, 2018년 8월 22일자. ¹⁴¹⁾
8. 23.	이○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한국일보, 2018년 8월 23일자. ¹⁴²⁾
9. 5.	조○오 (전 경찰청장)	댓글조작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YTN, 2018년 9월 5일자. ¹⁴³⁾
9. 12.	조○호 (한진그룹 회장)	화산돈 개인 자금 유용 • 경찰 소환 조사	조선일보, 2018년 9월 12일자. ¹⁴⁴⁾
9. 20.	조○호 (한진해운 회장)	횡령, 배임, 사기 • 검찰 소환 조사 • 네 번째 공개소환	동아일보, 2018년 9월 20일자. ¹⁴⁵⁾
11. 7. (비공개)	차○성 (전 대법관)	사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비공개)	아시아경제, 2018년 11월 11일자. ¹⁴⁶⁾

- 139) 문화일보, “석방 8일 만에…포토라인에 다시 선 김기춘”, 2018년 8월 14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14010714210780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40) KBS, “‘법관모임 와해문건’ 현직 판사 세 번째 공개 소환”, 2018년 8월 16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5343&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41) 한국일보, “‘현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2018년 8월 22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2105001403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42) 한국일보, “‘사법농단’ 이규진 부장판사 소환…‘한없이 참담하다’”, 2018년 8월 23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3102205578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43) YTN, “‘댓글공작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소환…‘정당한 업무’ 혐의 부인”, 2018년 9월 5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0905221027138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44) 조선일보, “조양호 한진회장 울들어 세 번째 공개 소환”, 2018년 9월 12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0268.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45) 동아일보,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2018년 9월 20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920/92093346/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46) 아시아경제, “‘전직 대통령도 공개소환하면서 차한성은 왜 비공개?’, 2018년 11월 11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111520576046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11. 9. (비공개)	민○영 (전 대법관)	사법농단 사건(원세훈 댓글조작 사건 법관) • 검찰 소환 조사(비공개)(참고인)	YTN, 2018년 11월 15일자. ¹⁴⁷⁾
11. 19.	박○대 (전 대법관)	사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 다음날(11. 20.) 조사는 비공개	KBS, 2018년 11월 19일자. ¹⁴⁸⁾ YTN, 2018년 11월 20일자. ¹⁴⁹⁾
11. 23.	고○한 (전 대법관)	사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 • 11. 27. 세 번째 소환 기사 존재 (공개/비공개 미기재, 비공개인 것으로 추측함)	SBS, 2018년 11월 23일자. ¹⁵⁰⁾ YTN(세 번째 소환), 2018년 11월 27일자. ¹⁵¹⁾
11. 24.	이○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 검찰 소환 조사	중부일보, 2018년 11월 25일자. ¹⁵²⁾
11. 27.	이○수 (전 기무사령관)	세월호 유족사찰 • 검찰 소환 조사 • 12. 7. 자살	한국일보, 2018년 11월 27일자. ¹⁵³⁾ 뉴스1, 2018년 12월 3일자. ¹⁵⁴⁾ 동아일보, 2018년 12월 7일자. ¹⁵⁵⁾

- 147) YTN, “檢 '원세훈 주심' 민일영 前 대법관 조사”, 2018년 11월 15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5103522128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48) KBS, “양승태 ‘갈목’ 박병대 전 대법관 11시간째 조사”, 2018년 11월 19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7215&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49) YTN, “박병대 前 대법관 2차 소환…혐의 부인”, 2018년 11월 20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0105621424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50) SBS,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양승태 소환만 남았다”, 2018년 11월 23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8998&plink=ORI,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51) YTN, “고영한 3번째 소환…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검토”, 2018년 11월 27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7152557947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52) 중부일보,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경기지사는 대권무덤’ 징크스 넘어설까”, 2018년 11월 25일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79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53) 한국일보, “‘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검찰 소환”, 2018년 11월 27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7100005000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54) 뉴스1, “‘세월호 사찰’ 前기무사령관 영장심사…부끄럼 없나 ‘그렇다’”, 2018년 12월 3일자.
(<http://news1.kr/articles/?349152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155) 동아일보, “[2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자살…유서 발견”, 2018년 12월 7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207/93198727/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표 3-6〉 2019년 공개(비공개) 소환 현황(2019년 7월말 기준)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1. 2. (비공개)	김○덕, 차○성 (전 대법관)	사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비공개)	머니투데이, 2019년 1월 2일자. ¹⁵⁶⁾
1. 8. (비공개)	고○한, 박○대 (전 대법관)	사법농단 사건 • 검찰 소환 조사(비공개)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	아시아경제, 2019년 1월 8일자. ¹⁵⁷⁾
1. 10.	양○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소환 관련 검찰이 언론에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원본 공개(동영상 2:05 이후) • 1. 11. 공개소환(‘패싱’ 논란) / 1. 14. 비공개 소환	KBS, 2019년 1월 10일자. ¹⁵⁸⁾
3. 14.	이○현 (가수), 정○영 (가수)	버닝썬 게이트 • 경찰 소환 조사	국민일보, 2019년 3월 14일자. ¹⁵⁹⁾ SBS, 2019년 3월 14일자. ¹⁶⁰⁾
3. 22. (비공개)	이○채 (전 KT회장)	KT 채용 비리 • 검찰 소환 조사(비공개)	KBS, 2019년 4월 4일자. ¹⁶¹⁾
5. 1. (비공개)	최○훈 (가수)	집단 성폭행 의혹 • 경찰 소환 조사(비공개)	헤럴드경제, 2019년 5월 1일자. ¹⁶²⁾
5. 9.	김○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 뇌물 혐의 • 검찰 소환 조사	한겨레, 2019년 5월 9일자. ¹⁶³⁾

156) 머니투데이, “檢, ‘강제징용 재판 지연’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조사”, 2019년 1월 2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020827822910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57) 아시아경제, “양승태 소환 앞둔 檢, 박병대·고영한 연거푸 소환”, 2019년 1월 8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815504529095>,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58) KBS, “[뉴스줌인] 전직 대통령도 썼는데…양승태 ‘포토라인 패싱’”, 2019년 1월 10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3342&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59) 국민일보, “[현장영상] ‘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좌충’”, 2019년 3월 14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42392&code=61121211&cp=nv>,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60) SBS, “[풀영상] 승리 두 번째 경찰 소환…‘성접대’ 여전히 부인하나는 질문에”, 2019년 3월 14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658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61) KBS, “검찰, ‘KT 채용 비리’ 이석재 전 회장 지난달 소환조사”, 2019년 4월 4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3072&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62) 헤럴드경제, “警, ‘집단 성폭행’ 의혹 최중훈 ‘비공개 소환조사’…1일 귀가”, 2019년 5월 1일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50100007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163) 한겨레, “‘별장 성접대·뇌물 혐의’ 김학의 첫 공개소환”, 2019년 5월 9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292.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공개 소환일	대상자	사건 개관	기사 출처
6. 25. (비공개)	김○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KT 자녀 부정 채용 • 검찰 소환 조사(비공개)	MBC, 2019년 6월 25일자. ¹⁶⁴⁾

공개소환 관련 언론 기사를 보면, 공개소환 과정에서 언론과 검찰·경찰이 소환정보 공유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포토라인에 세워진 거의 대부분 공개소환자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랜드 사건,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차별적 시도도 보인다. 대부분 공개소환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 및 영상 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으나 2018년 8월 13일 사법농단 관련 정보 판사의 공개소환 과정에서는 익명처리와 사진·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제3절 포토라인 관련 판례의 경향

1. 포토라인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사례

가. 사실관계

검찰은 세월호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구원파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배우 K씨를 소환하였고, 방송사는 배우 K씨가 검찰청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다음 검찰청 출입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동행한 신도 A와 B를 촬영하였고 이들의 모습을 뉴스 프로그램에 그대로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촬영·공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보도한 것은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J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뿐이므로 검찰청 앞에 다수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을

164) MBC, “檢 김성태 ‘비공개’ 소환…“딸 부정채용 전면 부인””, 2019년 6월 25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78549_24634.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고, 원고들이 공인이 아니고 검찰조사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의 초상에 대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¹⁶⁵⁾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이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개인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이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이나 영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검찰청에 들어가기 위해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 것일 뿐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점, 포토라인으로부터 한걸음 정도 떨어져 서 있었고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등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원고로서는 피고 등 언론사들이 취재대상인 K씨를 위주로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초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초상의 촬영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공표에 관해서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초상의 공표가 원고들이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제1심 재판은 제3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행위 자체가 초상에 대한 촬영 동의가 아니라는 점, 카메라를 보고서 포즈를 취하는 등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동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측에 손을 들어 주었다.

1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 선고, 2016가합110939 판결.

다. 제2심 법원의 판단¹⁶⁶⁾

해당 사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다른 결정을 하고 있다. 누구나 헌법 제10조 초상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고 본 점에서는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하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촬영과 공표사실을 알고 있거나 예상하면서도 촬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촬영에 임하는 경우,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촬영에 응해 포즈를 취하거나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친근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 경우, 신문기자에게 기꺼이 설명을 하는 경우 등은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로 추단할 수 있으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 당시 촬영과 공표의 범위,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요한다.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방송프로그램에 어떠한 용도를 쓰일지 알지 못했다면 초상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안에서 검찰이 사전 협의한 출석시간을 출석하기 하루 전에 취재진에게 통보하였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피촬영자의 사회적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보도가 예상된다는 점, 포토라인은 유명인사에 대한 취재가 과열경쟁 양상으로 번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취재경계선으로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고 촬영된 영상이 보도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추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언론사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라. 두 판례에 대한 평가

포토라인에 선 공적 인물이 아닌 주변인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 판결은 묵시적 동의의 판단이 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심 판결을 본다면 본 판결의 쟁점을 더 끌어낼 수 있다고 보이나 아쉽게도 본 재판은 항소 포기를 이유로 2심 결론으로

166) 서울고등법원 2017.8.18. 선고, 2016나2088859 판결.

끝나버렸다.

그러나 포토라인에 선 당사자에 대한 제1심과 2심의 판례는 다음의 관점에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포토라인에 세워진 대상이 된 것은 공적 인물이 아니라 ‘동행한 주변인’이라는 점에서 공적 인물이 포토라인에 세워졌을 때와는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사안은 포토라인에 선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재판 결론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의 결론과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포토라인에 선 당사자가 주변인이 아니라 공적인물이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공적인물의 경우라면 동의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소환에 동의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한 동의까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포토라인에 세워짐으로 인해 공적 인물이 받게 되는 무죄추정권의 박탈과 여론재판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공적 인물이 포토라인에 선다면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소환 동의뿐만 아니라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고, 동의 이후 포토라인에 세워진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포토라인 위헌성에 대한 판단¹⁶⁷⁾

가.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24.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을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하면서,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는 피의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의 나이 및 직업, 실명 중 2글자가 각각 표시되어 있고, 이들의 범죄전력과 피의사실, 범행방법, 증거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은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KBS, 중앙일보 등 각 언론사는 2012. 4. 25.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뉴스 및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청구인을 ‘정모씨(36세)’ 또는 ‘A씨’ 등으로 표현하였고, 청구인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장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방송되었다.

167) 헌법재판소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2헌마652 결정.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알리고 기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내용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공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구)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이하의 촬영허용행위는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3. 범죄보도의 공공성

대법원 1998년 피의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인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가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⁶⁸⁾

서울지법 2000년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공무원의 신원을 공개한 방송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비록 피의자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은 아니다.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 등 개인적인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등 특별한 가치가 있어야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⁶⁹⁾

제4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의 문제점

1. 촬영 공개의 근거 불명확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제9조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22조에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사실이 알려져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허용된다.

그러나 동규정에서 촬영이 금지되는 이유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이라고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근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촬영이 금지되는 이유를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이라고 했다면 예외적으로 촬영하는 이유는 사건에 대한 공익성이 크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촬영이 금지되는 이유를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이라고 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168) 대법원 1998.7.14. 선고, 98다17257 판결.

169) 서울중앙지법 2000. 10. 11. 선고, 2000가합4673판결.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초상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로 수사과정에 대한 명확히 실시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행위의 시간과 방법,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조치를 취할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2. 공개소환 내용의 광범위

공개소환의 경우 “공적인물로서 소환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소환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죄명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소환의 경우 언론에서 확인요청을 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환일자, 소환대상자, 죄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나 소환시작시간과 귀가시간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촬영으로 인해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개가 허용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따라서 공개소환 대상자에게 수사과정에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소환일자, 소환대상, 죄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환시작시간 및 귀가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큰 특정강력범죄자의 경우에도 신상이 공개되는 범위는 얼굴, 성명, 나이에 관한 부분만이고, 소환일시 및 귀가시간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3. 타법률의 신상공개 규정과 비교해 과도

일반적으로 수사 중인 사함에 대하여는 조사나 정보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국정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를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보도를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이나,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도 있을 수 있으므로,¹⁷⁰⁾ 이러한 사실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촬영이 금지되고 촬영시점, 촬영목적 등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고,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사의 명에 의해 증계 또는 촬영이 허용된다.

제4조(촬영 등의 제한) ①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쓴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등 필요한

170) 이근우,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자 인권침해 관련 제 문제”,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포토라인을 포함하여, 대법원 국제인권법학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2019, 7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두고 있고, 해당 요건에 부합하여 공개할 때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상공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행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촬영을 허용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의자 개인의 이익이나 공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신상을 공개하는 언론매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적 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는 언론매체의 관점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피의자 개인의 이익이나 보호의 관점은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동 수사공보준칙이 ‘인권보호를 위한’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면 포토라인에 세워지는 대상 공개에 있어서도 언론의 필요 관점이 아니라 공익성이나 피의자의 권리보장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 피의사실공표죄와의 충돌가능성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한 제시한 합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조건으로는 “①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이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② 객관적으로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국한되어야 하며, ③ 발표형식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④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¹⁷¹⁾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두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공보준칙에서는 원칙적 금지인 사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특히,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하위법령인 준칙에서 풀어주고 있는 꼴이 되어 입법체계 구조상으로도 맞지 않다. 형사소송법이나 별도의 법률에서 공개소환 또는 포토라인에 서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의 관행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자가 반드시 포토라인에 멈춰서서 기자의 질문에 응답해야 할 의무는 현행 법률 어떠한 곳에서도 남아있지 않다. 헌법에서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171)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46면.

아닌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이자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5. 수사관행상 ‘소환’이라는 표현의 잘못된 사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출석으로 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의자 수사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등 수사관련 지침이나 훈령에서는 ‘소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은 소환과 출석요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하는 형태는 ‘출석 요구’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에, 형사소송법 제65조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하는 형태는 ‘소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심희기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당시에 제200조에 ‘소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61년 개정당시 소환을 출석요구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취지가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¹⁷²⁾ 따라서 ‘소환’과 ‘출석 요구’라는 용어는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수사지침 등에서는 소환과 출석요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마치 강제성이 수반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172) 심희기, “피의자신문이 강제처분인가”, 법률신문 2004년 3월 18일자, 5면.

제 4 장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제1절 서설

외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포토라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은 범죄 보도를 연방법, 주법, 검찰청의 사무규칙 등으로 규율하면서 대중의 정보권과 피의자의 인격권의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피의자의 초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각 검찰청 내에 매뉴얼이나 가이드 등이 마련되어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의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포토라인이라는 개념 정의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각 언론사별로 윤리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수사실무상으로 피의자가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공인이라도 소환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실무가이드를 갖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각 국가별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실무상 지침이 존재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 존재하는지, 언론이 자율적 규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독일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포토라인이 운영되지 않고, 검찰청에서 피의자 소환시점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언론이 검찰청사 앞에서 소환대상자를 기다리는 일이 없다.¹⁷³⁾ 독일에서는 수사에 관한 언론보도는 모두 수사가 종료되었거나 기소 이후에만 이루어 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사 관련 언론보도는 독일 「기본법(GG)」이 보장하는 세 가치와 연관된다. 형사사법의 적정성, 개인의 인격권, 언론의 자유가 그 셋이다. ‘형사 사법의 적정성’은 법치국가원칙에 근거하고, ‘개인의 인격권’은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도출되며, ‘언론의 자유’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다.¹⁷⁴⁾ 방금 열거한 「기본법」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 (1)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가 있다. [...] ¹⁷⁵⁾

제5조

- (1) 모든 사람은 자기 의사를 말, 글,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영상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금지된다.
(2) 위의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 및 개인의 명예권에 의해 제한된다. [...] ¹⁷⁶⁾

위의 세 가치는, 독일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르면 동등하며 서로 제약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수사 관련 언론보도 문제에서는 상충하는 세 가치를

173)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103면.

174) Arbeitskreis deutscher, österreichischer und schweizerischer Strafrechtslehrer(이하 ‘Arbeitskreis AE’), Alternativ-Entwurf Strafjustiz und Medien(이하 ‘AE-StuM’), 2004, S. 11 f.

175) Art 2. (1) 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 icht die Rechte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176) Art 5. (1)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Die Pressefreiheit und die Freiheit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und Film werden gewährleistet.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2) Diese Rechte finden ihre Schranken in den 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 und in dem Recht der persönlichen Ehre.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한다.¹⁷⁷⁾ 이러한 해석론에 기초해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될 수 있는 독일 규정들을 보면, 세 가치를 절충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다. 그러한 규정들은 「형법(StGB)」, 「예술저작권법(KunstUrhG)」, 각 연방주의 언론법,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절차에 관한 지침(RiStBV)」 등에 산재되어 있다.¹⁷⁸⁾ 「형법」·「예술저작권법」은 연방법이고, 각 연방주의 언론법은 주법이며,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절차에 관한 지침」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규칙이다. 이러한 국가 법규범 외에 독일의 언론인과 출판인이 결성한 독일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언론규약(Pressekodex)」도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는 규범에 속한다.¹⁷⁹⁾

아래에서는 수사 관련 언론보도를 규율하는 독일의 국가 법규범을 개관하고, 수사 내용 공개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주요 판례를 검토한 후, 언론평의회의 「언론규약」을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독일에서 수사 관련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입법론에도 지면을 할애하려 한다.

1. 독일의 수사 관련 언론보도 규율 법제

가. 「형법」의 규정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는 「형법」 규정으로는 ‘제14장 모욕죄’에 속한 조항들(제185조~제200조), 사적 비밀 침해를 처벌하는 제203조 제2항, 업무상 비밀 침해를 처벌하는 제353조의b 제1항이 있다.

(1) 먼저 ‘제14장 모욕죄’에는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함께 들어 있다. 만약에 한 언론인이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하여 보도한다면, 그는 제185조(모욕죄)나 제186조(비방죄)나 제187조(증상죄)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¹⁸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이들 조항은 언론이 선입견에 빠져 객관성

177)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1 ff.

178)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4 ff.

179)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5 f.

180) 제185조~제187조의 내용을 여기에 옮기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해당 규정들의 번역문은 법무부, 독일형법, 2008, 154쪽 이하를 보기 바란다.

을 잃은 채 무죄추정원칙을 어기며 개인의 인격권을 해치는 것을 막는다.¹⁸¹⁾ 다만 ‘제14장 모욕죄’가 개인의 인격권에만 방점을 찍지는 않는다. 언론의 자유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한 관심은 제190조에 나타나 있다.

제190조(형사판결에 의한 진실 입증) 주장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범죄행위에 관한 것인 경우에 [주장되거나 유포된 사실에 의해] 모욕을 당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단, 모욕을 당한 사람이 사실의 주장이나 유포가 있기 전에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⁸²⁾

제190조는 피의사실을 보도해 해당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다. 보도한 피의사실에 기하여 피의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보도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간주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도 의사표현의 자유 앞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필요가 있는데, 진실한 것으로 입증된 보도에까지 명예훼손이라는 재갈을 물린다면,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되고 만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라 한다.¹⁸³⁾

(2) 제203조 제2항 역시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한다.

제203조(사적 비밀 침해) [...] (2)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임을 받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특히 사생활에 속하는 비밀이나 경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공무원
2. 공무에 관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 [...] ¹⁸⁴⁾

181) Riklin/Höpfel, “2. Kapitel. Verletzung der Unschuldsvermutung”,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56 f.

182) § 190 Wahrheitsbeweis durch Strafurteil. Ist die behauptete oder verbreitete Tatsache eine Straftat, so ist der Beweis der Wahrheit als erbracht anzusehen, wenn der Beleidigte wegen dieser Tat rechtskräftig verurteilt worden ist. Der Beweis der Wahrheit ist dagegen ausgeschlossen, wenn der Beleidigte vor der Behauptung oder Verbreitung rechtskräftig freigesprochen worden ist.

183) Weigend, T., “1. Kapitel. Medienöffentlichkeit des Ermittlungsverfahrens?”,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36, 51.

184) § 203 Verletzung von Privatgeheimnissen. [...] (2) Ebenso wird bestraft, wer unbefugt ein fremdes Geheimnis, namentlich ein zum persönlichen Lebensbereich gehörendes Geheimnis oder ein Betriebs- oder Geschäftsgeheimnis, offenbart, das ihm als

1. Amtsträger,

수사는 피의자의 은밀한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한다. 또 수사는 피의자의 명예를 건드리며 그의 원만한 사회생활에 해가 되기 일쑤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비난을 받는 것이 공식적인 형벌보다 더 심각한 고통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를 통해 획득한 피의자에 관한 정보 및 피의자의 신원은 최대한 오래 비밀로 유지해 피의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제203조 제2항은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규정이다.¹⁸⁵⁾

(3) 형사사법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사서류나 중간수사결과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도 있다. 개별 수사결과를 너무 일찍 공개하면, 증거가 멸실되어 사건 수사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353조b 제1항은 수사결과를 무단으로 전달하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수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게 돕는다.¹⁸⁶⁾

제353조b(업무상 비밀 침해[...]) (1)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임을 받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을 권한 없이 공개하여 중요한 공익을 침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행위자가 제1문의 행위로 중요한 공익을 위태롭게 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공무원
2. 공무에 관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¹⁸⁷⁾

2.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 anvertraut worden oder sonst bekanntgeworden ist. [...]

185) Weigend, T., "1. Kapitel. Medienöffentlichkeit des Ermittlungsverfahrens?",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36, 51.

186) Weigend, T., "1. Kapitel. Medienöffentlichkeit des Ermittlungsverfahrens?",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37, 51.

187) § 353b Verletzung des Dienstgeheimnisses und einer besonderen Geheimhaltungspflicht.

(1) Wer ein Geheimnis, das ihm als

1. Amtsträger,
2.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3. Person, die Aufgaben oder Befugnisse nach dem Personalvertretungsrecht wahrnimmt, anvertraut worden oder sonst bekanntgeworden ist, unbefugt offenbart und dadurch wichtige öffentliche Interessen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Hat der Täter durch die Tat fahrlässig wichtige öffentliche Interessen gefährdet, so wird er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나. 「예술저작권법」의 규정

제22조 초상은 그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포하거나 전시될 수 있다. 동의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당사자가 자신을 그리거나 촬영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은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의 사망 후 10년 동안은 당사자의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서 유족이란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나 동거인 및 자녀를 말하며,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말한다.¹⁸⁸⁾

제23조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을 유포하고 전시할 수 있다.

1. 시사(時事) 분야에 속하는 초상 [...]

(2) 그러나 제1항의 권한은 유포 또는 전시로 인하여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이,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¹⁸⁹⁾

제33조 (1) 제22조 및 제23조를 위반하여 초상을 유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제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¹⁹⁰⁾

「예술저작권법」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제22조에 따르면, 초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이 이른바 ‘시사(時事) 분야’(Bereich der Zeitgeschichte)에 속한다면 유포되거나 전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188) § 22. Bildnisse dürfen nur mit Einwilligung des Abgebildeten verbreitet oder öffentlich zur Schau gestellt werden. Die Einwilligung gilt im Zweifel als erteilt, wenn der Abgebildete dafür, daß er sich abbilden ließ, eine Entlohnung erhielt. Nach dem Tode des Abgebildeten bedarf es bis zum Ablaufe von 10 Jahren der Einwilligung der Angehörigen des Abgebildeten. Angehörig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der überlebende Ehegatte oder Lebenspartner und die Kinder des Abgebildeten und, wenn weder ein Ehegatte oder Lebenspartner noch Kinder vorhanden sind, die Eltern des Abgebildeten.

189) § 23. (1) Ohne die nach § 22 erforderliche Einwilligung dürfen verbreitet und zur Schau gestellt werden:

1. Bildnisse aus dem Bereiche der Zeitgeschichte;
2. Bilder, auf denen die Personen nur als Beiwerk neben einer Landschaft oder sonstigen Örtlichkeit erscheinen;
3. Bilder von Versammlungen, Aufzügen und ähnlichen Vorgängen, an denen die dargestellten Personen teilgenommen haben;
4. Bildnisse, die nicht auf Bestellung angefertigt sind, sofern die Verbreitung oder Schaustellung einem höheren Interesse der Kunst dient.

(2) Die Befugnis erstreckt sich jedoch nicht auf eine Verbreitung und Schaustellung, durch die ein berechtigtes Interesse des Abgebildeten oder, falls dieser verstorben ist, seiner Angehörigen verletzt wird.

190) § 33.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entgegen den §§ 22, 23 ein Bildnis verbreitet oder öffentlich zur Schau stellt.

(2) Die Tat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신상 공개 여부는 그가 시사 분야에 속하는 인물인지, 즉 이른바 ‘시사인물’(Person der Zeitgeschichte)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척도가 「예술저작권법」에는 없다. 결국 이 문제는 해석론의 과제가 된다.

이에 관한 독일의 논의에서는 ‘시사인물’을, 호르스트 노이만-뒤스베르크(Horst Neumann-Duesberg)의 견해¹⁹¹⁾에 따라, ‘절대적 시사인물’과 ‘상대적 시사인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절대적 시사인물’이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업적, 능력 등으로 인해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치인, 예술가,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이 이에 속한다. 이들의 경우 범죄혐의를 받는 때에는 설사 그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초상이 공개된 채로 보도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만 범죄혐의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수행하는 역할과 무관한 때에도 그의 초상을 공개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해명되지 못했다. 예컨대 유명 운동선수가 도핑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의 초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데에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절도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¹⁹²⁾ 다음으로 ‘상대적 시사인물’이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만 조명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이가 ‘상대적 시사인물’에 속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묻자면 범죄혐의를 받는 개인을 상대적 시사인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볼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 두 견해를 양극단에 놓고서 한쪽을 택하거나 둘을 절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피의사건에 관심을 두는 한 피의자는 자신의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익명권을 상실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결코 상대적 시사인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¹⁹³⁾

191) Neumann-Duesberg, "Bildberichterstattung über absolute und relative Personen der Zeitgeschichte", JZ 1960, S. 114 ff.

192)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98; Weigend, T., "1. Kapitel. Medienöffentlichkeit des Ermittlungsverfahrens?",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43.

193) Weigend, T., "1. Kapitel. Medienöffentlichkeit des Ermittlungsverfahrens?",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43.

다. 각 주의 언론법 규정

각 주의 언론법 가운데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언론법」(Gesetz über die Presse)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언론의 공적 임무) 언론은 사회의 관심을 받는 사안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거나 전파하거나 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¹⁹⁴⁾

제4조(언론의 정보권) (1) 관청은 언론의 대표자에게 언론의 공적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보를 제공하면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적절한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지연되거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경우
2. 정보 제공이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경우
3. 정보 제공의 이익보다 우월한 공익 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익이 침해되는 경우
4. 제공할 정보가 적정한 정도를 넘는 경우

(3) 명령으로 언론에 대한 관청의 정보 제공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신문 또는 잡지의 발행인은 관청에 대하여 공무에 관한 사항을 자기에게 다른 발행인들보다 늦게 전달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¹⁹⁵⁾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언론법」은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제시한다. 제3조에서 언론이 여론 형성에 기여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 다음, 제4조 제1항에서는 언론이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에

194) § 3 Öffentliche Aufgabe der Presse. Die Presse erfüllt eine öffentliche Aufgabe, wenn sie in Angelegenheiten von öffentlichem Interesse Nachrichten beschafft und verbreitet, Stellung nimmt, Kritik übt oder auf andere Weise an der Meinungsbildung mitwirkt.

195) § 4 Informationsrecht der Presse. (1) Die Behörden sind verpflichtet, den Vertretern der Presse die der Erfüllung ihrer öffentlichen Aufgabe dienenden Auskünfte zu erteilen.

(2) Auskünfte können verweigert werden, soweit

1. hierdurch die sachgemäße Durchführung eines schwebenden Verfahrens vereitelt, erschwert, verzögert oder gefährdet werden könnte oder,
2. Vorschriften über die Geheimhaltung entgegenstehen oder
3. ein überwiegendes öffentliches oder schutzwürdiges privates Interesse verletzt würde oder
4. ihr Umfang das zumutbare Maß überschreitet.

(3) Anordnungen, die einer Behörde Auskünfte an die Presse allgemein verbieten, sind unzulässig.

(4) Der Verleger einer Zeitung oder Zeitschrift kann von den Behörden verlangen, daß ihm deren amtliche Bekanntmachungen nicht später als seinen Mitbewerbern zur Verwendung zugeleitet werden.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관청에 부과한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2항은 관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데, 그 사유가 막연한 편이어서 관청은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관청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언론법상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언론이 관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¹⁹⁶⁾

라.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절차에 관한 지침」의 규정

제23호(신문 및 방송과의 협력) (1) 정보를 공중에 알릴 때에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이 수행하는 특별한 임무 및 여론 형성에 대하여 지니는 의미를 고려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매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 공지는 수사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거나 공판절차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 적정절차에 관한 피고인의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도 아니 된다. 아울러 개별사안에서는 정보 전부를 통지할 경우 그로 인해 공중이 얻는 이익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의 인격권보다 우월한지의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관련자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에 관한 공중의 일반적인 이익은 보통의 경우 관련자의 성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충족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제129호 제1항, 제219호 제1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가 정한 행정규칙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 사실 및 공소장 내용의 공지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¹⁹⁷⁾

제129호(신문 및 방송의 보도) (1)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보도는 법률 및 공판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진실을 발견하여야 하는 법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수행하기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해받지 않고 방어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 ¹⁹⁸⁾

196)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89 f.

197) **23 Zusammenarbeit mit Presse und Rundfunk.** (1) Bei der Unterrichtung der Öffentlichkeit ist mit Presse, Hörfunk und Fernsehen unter Berücksichtigung ihrer besonderen Aufgaben und ihrer Bedeutung für die öffentliche Meinungsbildung zusammenzuarbeiten. Diese Unterrichtung darf weder den Untersuchungszweck gefährden noch dem Ergebnis der Hauptverhandlung vorgreifen; der Anspruch des Beschuldigten auf ein faires Verfahren darf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Auch ist im Einzelfall zu prüfen, ob das Interesse der Öffentlichkeit an einer vollständigen Berichterstattung gegenüber den Persönlichkeitsrechten des Beschuldigten oder anderer Beteiligter, insbesondere auch des Verletzten, überwiegt. Eine unnötige Bloßstellung dieser Person ist zu vermeiden. Dem allgemeinen Informationsinteresse der Öffentlichkeit wird in der Regel ohne Namensnennung entsprochen werden können. Auf die Nr. 129 Abs. 1, Nr. 219 Abs. 1 wird hingewiesen. Die entsprechenden Verwaltungsvorschriften der Länder sind zu beachten (vgl. auch Anlage B).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절차에 관한 지침」은 수사기관과 언론이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지침은 검찰 내부의 사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 외부에는 구속력이 없다.¹⁹⁹⁾

2. 독일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독일에서 수사 관련 언론보도 문제를 다룬 판결은 여럿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연방헌법재판소가 1973년에 내린 ‘레바흐 판결’(Lebach-Urteil)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2017년에는 유명인의 범죄혐의를 보도할 때 그의 사진을 어떤 조건하에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자세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도 함께 확인한다.

-
- (2) Über die Anklageerhebung und Einzelheiten der Anklage darf die Öffentlichkeit grundsätzlich erst unterrichtet werden, nachdem die Anklageschrift dem Beschuldigten zugestellt oder sonst bekanntgemacht worden ist.

- 198) **129 Berichterstattung durch Presse und Rundfunk.** (1) Presse, Hörfunk und Fernsehen dürfen in ihrer Berichterstattung nicht mehr beschränkt werden, als das Gesetz und der Zweck der Hauptverhandlung es gebieten. Die Aufgabe des Gerichts, die Wahrheit zu erforschen, darf nicht vereitelt oder erschwert, das Recht des Angeklagten, sich ungehindert zu verteidigen,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auch sind die Persönlichkeitsrechte des Angeklagten und anderer Beteiligter, insbesondere auch des Verletzten, zu berücksichtigen (vgl. Nr. 23).
- (2) Während der Hauptverhandlung, einschließlich der Urteilsverkündung, sind Ton- und Fernseh-Rundfunkaufnahmen sowie Ton- und Filmaufnahmen zum Zwecke der öffentlichen Vorführung oder Veröffentlichung ihres Inhalts unzulässig.
- (3) Ob 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im Sitzungssaal sonst Ton-, Film- und Bildaufnahmen gemacht werden dürfen, entscheidet der Vorsitzende.
- (4) Über die Zulässigkeit von Ton-, Film- und Bildaufnahmen im Gerichtsgebäude außerhalb des Sitzungssaales entscheidet der Inhaber des Hausrechts.
- (5) Bei Entscheidungen nach Absatz 3 und 4 sind die Persönlichkeitsrechte der Beteiligten zu berücksichtigen. Wird die Erlaubnis erteilt, so empfiehlt es sich klarzustellen, dass die Rechte der betroffenen Personen unberührt bleiben.

199) Eisele, J., "Strafprozessführung durch Medien", JZ 2014, S. 937.

가. 레바흐 판결

1969년 독일 자를란트(Saarland)주의 레바흐에서는 무장한 남성 2명이 독일연방군의 무기고를 습격해 경비병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후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주도한 1명은 정범으로서 무기자유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종범으로서 6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종범은 1972년 7월에 가석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직전인 1972년 2월에 독일 제2텔레비전(ZDF)에서는 위 사건을 ‘레바흐의 병사살해사건’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영하려 했다. 그러자 종범은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내세워 다큐의 방영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로써 인격권과 언론자유에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²⁰⁰⁾ 이 사건은 결국 연방헌법재판소에까지 올라갔는데,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레바흐 판결’이라 부른다.

레바흐 판결은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상충할 때 발생하는 문제의 양상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는 근거와 한계를 논할 때에는 이 레바흐 판결을 길잡이로 삼는다. 아래에서는 레바흐 판결의 요지를 소개한다.²⁰¹⁾

행위자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사진을 공개하거나 그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보도하면, 그의 범행이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보도는 언제나 행위자의 인격권을 크게 침해한다. 특히 텔레비전을 통한 보도는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영상과 음성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전파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라디오나 신문을 통한 보도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가 더 큰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범죄행위는 시사적인 사건이기도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임무이기도 하다. 아울러 법질서의 위반, 개인이나 공동체의 법익에 대한 침해, 피해자와 그 친족에 대한 연민, 동종 범죄의 재발에 대한 공포와 그 예방을 위한 노력 같은 요소들도 언론에서 범죄와 범죄자를 자세히 보도해서 달성해야 할 정당한 이익으로

200) BVerfGE 35, 202 (204 f.).

201) 아래의 내용은 BVerfGE 35, 202 (226 ff.)를 요약한 것이다.

인정된다. 이러한 이익들은 공격 대상, 범행 방법 또는 결과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범죄보다 더 두드러지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커진다. 레바흐 사건처럼 중대한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수사·처벌 및 동종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행위자는 누구이고 범행 동기는 무엇이며 범행 과정은 어떠한지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중대한 이익이 존재한다. 처음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다는 욕구가 전면에서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행위에 관한 깊이 있는 해석, 행위의 배경 및 행위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관청, 형사소추기관과 형사법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원칙상 정당한 요구도 매우 중요하다. 텔레비전은 그 전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특히 적합하다.

위와 같은 견지에 기초해, 텔레비전에서 범죄를 보도해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얻게 될 이익과 그러한 보도에 의해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될 인격권의 침해를 서로 비교해 보면, 범죄를 보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우세하다. 법적 평화를 깨뜨리고 범죄를 범해 타인이나 사회의 법익을 공격하거나 침해한 사람은 그 대가로 부과되는 형사제재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범행을 저질러 사람들의 관심을 자초했으므로 사회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원칙에 따라 그 범행을 보도하여 대중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범행에 관한 보도는 형사소추와 형사재판을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는 행위자 자신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물론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원칙이 무제한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차지하는 개인의 인격권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생활영역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례원칙도 엄격히 준수할 것도 요구한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침투하는 것은 공중에게 정보를 알려서 얻을 이익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그러한 침투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범행의 중대성이나 범행이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행위자를 묘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행위자의 신상을 알게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는 가벼운 범죄나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를 보도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논거를 적절하게 감안해야 한다. 공중의 정보권을 위해 개인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범행을 보도하고 진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이다. 인격권의 제한이 범행을 선정적·편파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학설과 판례가 「예술저작권법」 제23조에 기초하여 전개한 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사적 사건이 된 중범죄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보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범행의 동기나 조건들을 해명하고 행위자의 책임을 현대 형법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행위자의 개인생활에 관해서도 보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듯 시사적 사건인 중범죄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인의 인격권보다 우월한데, 그 우월성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어야 할지는 개별사안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텔레비전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이 영향력이 라디오나 신문에 비하면 막대하다는 사실로 인해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카헬만 사진 빌트지 게재 사건

2010년 3월 유명 기상캐스터이자 저널리스트인 외르크 카헬만(Jörg Kachelmann)이 여자친구를 강간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이 이 유명인의 사건을 방치할 리는 없었다. 빌트(Bild)지도 마찬가지였다. 빌트지는 카헬만 사건을 보도하면서 삽화 하나와 사진 두 장을 신문지상에 싣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사진 1장은 카헬만이 인도를 통해 자기 변호사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그 사무실 몇 미터 앞에서 찍은 것이었고, 나머지 사진 1장과 삽화는 카헬만이 그 사무실의 안마당에 있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²⁰²⁾

202) BVerfG, Zur Abbildung von Prominenten im öffentlichen und im privaten Raum durch die Presse, 2017. 3. 15(<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17/bvg17-017.html>, 2019년 8월 7일 최종검색).

이에 카헬만은 문제의 삽화와 사진을 담은 기사의 유포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과 항소를 받은 고등법원 모두 카헬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빌트지 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빌트지 측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즉, 공공장소인 인도에서 찍은 사진의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사적 공간인 변호사 사무실 안마당에서 찍은 사진의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의 내용을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보도의 종류와 방향,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기관에 인정해 주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 핵심에 속한다. 개인 사진의 공개를 규율하는 규정들은 사진의 대상인 개인의 이익과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을 공중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도록, 즉 2중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개인 인격권의 보호 정도를 정할 때에는 사진이 입수된 과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포착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인도에서 찍은 사진의 유포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은 위와 같은 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즉, 빌트지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공중의 관심이 큰 만큼 언론자유 비중도 더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 문제의 사진은 카헬만이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있을 때 찍은 것인데, 카헬만은 공공장소에 있는 때에는 사진 촬영을 당할 수도 있음을 예상했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카헬만은 인도에서 찍힌 자신의 사진을 유포하지 말 것을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²⁰³⁾

반면에 변호사 사무실 안마당에서 있는 카헬만을 찍은 사진과 그 모습을 그린 삽화의 유포를 금지한 판결은 정당하다. 해당 판결에서 이익형량의 기준으로 삼은 논거는 기본법의 요구와 조화된다. 안마당은 공공장소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사적 공간이므로 여기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이 사진 촬영에 의해 침해되지 않게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지 말 것을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겠다.²⁰⁴⁾

203) 이상의 내용은 BVerfG, Beschluss der 3. Kammer des Ersten Senats vom 09. Februar 2017 - 1 BvR 967/15 -, Rn. 1 ff.를 요약한 것이다.

204) 이상의 내용은 BVerfG, Beschluss der 3. Kammer des Ersten Senats vom 09. Februar 2017

3. 독일 언론기관의 수사 관련 보도 자율규제

독일언론평의회는 독일 언론인과 출판인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언론규약」을 제정했다. 「언론규약」은 언론보도의 기준과 독자들이 제기한 항의를 처리하는 원칙을 담은 1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수사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되는 조항은 제8호~제9호, 제11호~제13호다.²⁰⁵⁾

규약 제8호(인격 보호) 언론은 사람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단, 사람의 행동이 공익의 대상이 된 때에는 그 행동을 언론에서 논의할 수 있다. 개인 신상의 공개는 그로 인해 공중이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보호받을 만한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그저 화젯거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 신원의 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익명성이 요구되는 한에서는,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언론은 편집을 할 때에는 정보가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침 8.1(범죄보도) (1) 범죄행위,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관한 정보는 정당한 공익의 대상이다. 그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임무이다.

(2) 언론은 개별사안에서 정당한 공익이 당사자의 보호받을 만한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피의자 또는 범죄자의 이름, 사진 또는 그의 신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교량할 때에는 범죄혐의의 강악, 비난의 경중, 형사절차의 진행상황, 피의자 또는 범죄인의 지명도나 전력, 그에 대한 공중의 관심 정도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이 피의자의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본다.

- 범죄행위가 현저히 중대하거나 유형 또는 규모의 면에서 특별한 경우
- 개인의 직위, 임무, 사회적 역할 또는 기능이 그가 범했다고 의심받는 행위와 서로 관련되거나 충돌하는 경우
-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그의 지위와 그가 범했다고 의심받는 행위가 서로 관련되는 경우 또는 그가 범했다고 의심받는 행위가 그에 대한 공중의 인상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 중범죄가 공연하게 발생한 경우
- 수사기관이 수배를 내린 경우

피의자 또는 범죄자를 책임무능력자로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지침 8.3(어린이와 청소년) 특히 범죄행위와 사고에 관하여 보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지침 8.10(정보제공) 보도에 의하여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보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출판기관은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도의 기초가 된, 저장되어 있는 그에 관한

- 1 BvR 2897/14 -, Rn. 1 ff,를 요약한 것이다.

205) 독일언론평의회 Der Pressekodex(https://www.presserat.de/pressekodex/pressekodex/#panel-ziffer_8_schutz_der_persoenlichkeit,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정보를 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의 전달을 거부할 수 있다.

- 요구한 정보가 취재, 기사의 작성 또는 공개 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한 언론인이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인 경우
- 요구한 정보가 편집부서에 기사, 자료, 보고를 송부 또는 전달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인 경우
- 취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전달하면 정보원을 탐색하여 언론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출판기관의 임무에 해가 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적 영역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조화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 [...]

제9호(명예 보호) 말과 그림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하여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언론윤리에 반한다.

제11호(선정적 보도, 청소년 보호) 언론은 폭력, 잔인함 및 고통을 부적절하게 선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침 11.1(부적절한 표현) 보도를 할 때 사람을 단순한 대상이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선정적인 행위이다. 이는 죽어가는 사람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에 관하여 공익과 독자의 정보권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언론은 폭력범죄와 사고에 관한 그림을 표지에 실을 때에는 그것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침 11.2(폭력범죄에 관한 보도) 언론은 협박을 포함한 폭력범죄에 관하여 보도할 때에는 정보에 관한 공익과 피해자 및 당사자의 이익을 신중하게 교량하여야 한다. 언론은 폭력범죄의 경과를 독자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도하되, 그 보도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언론은 독단적으로 범죄자와 경찰을 중재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행 중인 행위자와 인터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침 11.4(관청과의 공조, 보도관제) 언론은 원칙적으로 보도관제에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과 관청의 공조는 이에 의하여 피해자 및 기타 관련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거나 구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규명을 위하여 특정 기간 동안 보도를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그 요청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언론은 그 요청에 따른다.

제12호(차별) 그 누구도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국적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침 12.1(범죄행위에 관한 보도) 범죄행위에 관하여 보도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범죄자가 어떤 인종이나 종교집단에 속하는지 또는 어떤 소수집단에 속하는지를 언급함으로써 개인의 잘못된 행위가 차별을 일반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와 관련한 정당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언급이 소수자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13호(무죄추정) 수사절차, 형사절차 및 기타 공식절차에 관한 언론보도는 선입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죄추정원칙은 언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지침 13.1(선입견)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관한 보도는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의 발생, 소추 및 판결에 관한 내용을 공중에게 신중하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때 언론보도는 예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인이 자백을 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공중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개인을 범죄자로 지칭할 수 있다. 언론은 보도를 위한 단어를 선택할 때에 독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개념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언론보도의 목적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언론이라는 무대에 세워 놓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그에게 정식의 형벌과는 별도의 사회적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언론보도를 할 때에는 범죄혐의와 입증된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략]

지침 13.3(청소년 범죄) 언론은 청소년에 대한 수사절차, 형사절차와 청소년의 법정 축석에 관하여 보도할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미래를 고려하여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4. 독일에서 수사 관련 언론보도를 주제로 전개되는 입법론

지금까지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독일의 법제와 판례를 개관했다. 그런데 독일의 형법학자 상당수는 이들 법규의 체계와 내용은 미흡하며 법원이 제시한 기준들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확실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리면서 자신들 역시 그간 수사 관련 언론보도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들은 수사 관련 언론보도 문제를 독일 형법학계의 ‘미개척지(Neuland)’라고 부르기까지 한다.²⁰⁶⁾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독일어권 형법학자 16명은 2000년대 초반 연구진을 꾸려 ‘형사사법과 언론매체의 관계 설정을 위한 대안(Alternativ-Entwurf Strafjustiz und Medien)(이하 “대안”이라 한다)을 펴냈다. 독일어권 국가(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헌법 모두의 기반인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이념에서 출발한²⁰⁷⁾ ‘대안’은 수사를 포함한 형사절차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문제를 법으로 규율할 때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현행법규의 미비점을 확인한 후, 그 미비점의 보완책을 제안했다. ‘대안’은 독일어권 형법학자들이 - 실무계의 의견까지 반영해 - 공동으로

206)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

207)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 f.

작성한 것이어서²⁰⁸⁾ 독일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 또 ‘대안’은 독일어권 국가의 헌법뿐 아니라 한국 헌법의 중추이기도 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이념에 입각한 것이어서 우리 논의에도 직접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대안’에서 제시된 입법론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대안’과는 다른 각도에서 수사 관련 언론보도 문제에 접근하는 형법학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 보려 한다. 이들은 형사사법의 독립성과 개인의 인격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이러한 외침은 이른바 ‘형사사법방해죄’(Störung der Strafrechtspflege)를 신설하자는 요구로 응축된다.

가. ‘대안’에서 제시한 입법론

‘대안’은 먼저 수사 내용의 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세 가치, 즉 형사사법의 적정성, 개인의 인격권, 언론의 자유와 연관되므로,²⁰⁹⁾ 입법자는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입법자는 이 문제를 수사기관, (피의자를 비롯한) 수사 관련자, 언론매체가 서로 힘을 겨루며 알아서 해결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적어도 문제를 해소할 기본틀은 법률로 정해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²¹⁰⁾ 그러한 법률은 위의 세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셋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예컨대 형사절차에서 언론을 완전히 몰아내려 한다거나 형사절차를 대중에게 모조리 공개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언제나 위의 세 가치를 저울대에 올려놓고 이들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대안’은 지적한다.²¹¹⁾

‘대안’은 그러한 균형점을 찾으려면 다음 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 그 해답을 모색한다. 두 질문 중 하나는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수사기관에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와 수사에 관한 언론보도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이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안’은 다음을 제시한다. 우선 헌법이

208)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IV.

209)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1 f.

210)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7.

211)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3.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여 하되, 그 의무의 범위는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목적과 개인의 인격권을 감안해 제한한다. 또 역시 언론자유를 중시해 언론매체가 범죄와 수사에 관해 보도하는 것을 허용하되, 무죄추정원칙 같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리를 기준으로 보도의 한계를 정한다. 이를테면 피의자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한계를 넘어 부당한 보도를 한 경우를 처리할 규정을 마련한다.²¹²⁾

이상의 제안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대안'이 그러한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은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¹³⁾

공판은 공개하여 진행하나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은 여러 면에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범죄사건에 대한 관심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공판절차에 쏠린다기보다는 사건 경과에 따라 물결치듯 변한다. 즉, 범죄혐의가 처음 포착된 때에 크게 높아졌다 낮아지고, 이어 수사나 공판이 개시된 때에 또 상승했다 하강하며, 끝으로 판결이 나올 때에 다시 오른다. 공판절차 그 자체는 극적인 면이 덜해 대중은 그에 별 관심이 없다. 또 재판 결과는 사실상 공판절차에서보다는 이미 수사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때가 대부분이며, 갈수록 많은 사건이 공판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거나 아예 거치지 않고 종결된다. 특히 불기소처분이나 협상에 의해 종료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특성상 더욱 더 대중의 관심을 끈다.

상황이 이렇다면, 수사절차에서도 밀행성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대중과 언론의 알권리를 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사람들이 수사단계에 큰 관심을 둔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만은 아니고 언론이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기능도 함께 고려한 결론이다. 즉,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대중과 언론은 공중의 관심사가 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는 대부분 수사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알리기를 꺼려 언론과 대중의 정보권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대중은 수사절차가 불투명하다고 여기며 수사기관을 불신하고, 언론은 독자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는 형사절차를 적정하게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결과와 공개를 금지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언론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수사를 그르치지 않을 적절한 방법으로 일찌감치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다. 물론 이때 수사기관이 언론을 조종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적절히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212)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V f.

213) Weigend, T., "1. Kapitel. Medienöffentlichkeit des Ermittlungsverfahrens?",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33 ff.

‘대안’은 위와 같이 기본틀을 잡아 놓은 다음 현행법체계를 검사하고 그 취약점을 드러내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근거가 될 규정이 연방법에는 없고 각 연방주의 언론법과 검찰의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절차에 관한 지침」에 들어 있다. 예컨대 위에서 본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언론법」 제4조 제1항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관청에 부과한다. 이 규정을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4조 제2항은 관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데, 그 사유가 막연한 편이어서 관청은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넓은 재량 여지를 갖는다. 또 판례에 따르면, 관청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언론법상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언론이 관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결국 언론법상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로 쓰이기에는 부족하다. 게다가 이 규정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이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절차에 관한 지침」 제23호는 내용이 자세해 수사기관이 언론에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초로 사용할 만한데, 문제는 이 지침은 검찰 내부의 사무규칙이어서 검찰 외부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정보 공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가치들과 관련되므로 의회에서 제정하는 일반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문제가 주법과 검찰의 사무규칙에서 규율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²¹⁴⁾

수사 관련 언론보도의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 역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없고, 「예술저작권법」·「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절차에 관한 지침」 및 언론평의회의 「언론규약」에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우선 「예술저작권법」 제23조를 보면, 거기에는 ‘초상’만이 언급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성명’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피의자의 이른바 ‘익명권’도 ‘초상권’에 준해서 다룰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면,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기준과 범위도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기준과 범위에 준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는 금지된다는 형법의 대원칙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보통의 경우 범죄에 관한

214)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89 ff.

대중의 알권리는 굳이 피의자의 성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충족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한다면, 피의자의 성명 공개 문제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규정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²¹⁵⁾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절차에 관한 지침」은 검찰 내부의 사무규칙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사실은 앞서 논한 바와 같다. 「언론규약」 역시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럽다.²¹⁶⁾

다음으로 언론이 한계를 넘어 부당한 보도를 한 경우, 예컨대 언론이 무죄추정원칙을 어기며 피의자의 신상을 부당하게 공개한 경우에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수단은 「형법」과 「민법」 등이 보유하고 있다. 「형법」의 ‘모욕죄’ 규정들과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들이 바로 그 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실무에서도 나타나듯이,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해 주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 보도로 인해 신상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하는 특별규정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언론법」 제7조 a와 제7조 b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¹⁷⁾

‘대안’은 이렇게 현행법의 결함을 확인하고서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두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위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두루 감안한, 즉 수사 내용 공개 및 수사 관련 언론보도의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조항을 만들어 「형사소송법」에 삽입하자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8편 제1장의 제475조 바로 다음에 제475조 a의 형태로 끼워 넣자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오스트리아 「언론법」 제7조 a와 제7조 b 같은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먼저 ‘대안’이 「형사소송법」에 제475조 a로 집어넣자고 하는 내용을 보고,²¹⁸⁾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들어 본다.

215) Riklin/Höpfel, “2. Kapitel. Verletzung der Unschuldsvermutung”,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70; Weigend, “1. Kapitel. Medienöffentlichkeit des Ermittlungsverfahrens?”,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47 f.

216)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5 f.

217) Riklin/Höpfel, “2. Kapitel. Verletzung der Unschuldsvermutung”,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56 ff.; Riklin/Höpfel, “3. Kapitel. Schutz von Beschuldigten vor identifizierender Berichterstattung”,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68 ff.

218)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91.

제475조a(언론에 대한 정보 제공) (1) 언론에 제공하는 정보는 범죄행위,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상황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 제공을 수사서류의 사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피의자,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상을 노출할 수 있는 사정 및 피의자, 피해자 또는 증인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정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당사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피의자의 경우 제2항 제1문에서 언급한 사정에 관한 정보는 해당 사건을 알림으로써 대중이 얻는 이익이 해당 사건을 비밀로 유지하여 피의자가 얻는 이익보다 우월한 때에는 언론에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중의 이익이 우월한 것으로 본다.

- a) 피의자가 시사인물인 경우(범행의 종류는 불문한다)
- b) 피의자가 혐의를 받는 범행이 그 특성상 대중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현저한 경우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피의자의 경우 제2항 제1문에서 언급한 사정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18세 미만의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전달했는지를 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사망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제2항 제2문 및 제3항은 준용한다.

위 규정의 목적은, 표제에서 드러나듯, 수사기관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와 한계를 정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정보 제공의 근거와 한계를 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앞서 ‘대안’의 출발점이 된 생각을 논할 때 설명한 바와 같다.²¹⁹⁾

제1항 제1문은 수사기관이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한다. 이 범위는 적정한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당사자의 인격권,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공중의 알권리를 절충하여 정한 것이다. 또 ‘일반적인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는 정보가 당사자의 신상을 추론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제1항 제2문은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정보를 금지한다. 이는 형사절차가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²²⁰⁾

제2항은 제1문은 당사자의 익명권을 보장해 당사자의 신상이 일반 대중이나 주변

219)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91 ff.

220)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93 ff.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신상 공개 여부는 당사자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의 신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익명권을 보장할 이익이 없는데, 이는 제2항 제2문에서 감안되었다.²²¹⁾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피의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언론이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범죄를 보도할 때에 피의자의 신상을 알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비로소 범행의 의미를 평가하고 형사절차를 감시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의자는 다른 수사 관련자들보다 더 크게 인격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제3항 제1문은 피의자의 인격권보다 공중의 알권리가 더 큰 때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이어 제3항 제2문에서는 피의자의 인격권과 공중의 알권리를 교량하는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또 그러한 작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를 제시한다. a)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에 착안해 ‘시사인물’을 기준으로 정했다. 여기에서 ‘범행의 종류는 불문한다.’고 규정한 것은 시사인물의 범죄혐의가 그 시사인물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과 무관한 때에도 대중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절대적 시사인물’을 전제한 규정이다. 반면에 b)는 ‘상대적 시사인물’을 전제한 규정으로, 대중의 시선을 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의 알권리가 더 크다고 간주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혐의의 현저성도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제3조 제3문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상이 이미 공개된 때에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이익이 없다는 점은 제3조 제4문에서 고려하고 있다.²²²⁾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달된 정보를 당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규정이고, 제5항은 사망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도 살아 있는 사람에 준하여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다.²²³⁾

221)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89 ff.

222)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95 ff.

223)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100.

마지막으로 ‘대안’이 본보기로 제시한 오스트리아 「언론법」 제7조a 및 제7조b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7조a(특수한 경우에서의 신원 보호) (1) 언론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 사진 또는 다수인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지면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의 보호받을 만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그 사람의 공적 지위, 공적 활동 또는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공개로 인해 공중이 얻을 이익이 그 사람의 침해된 이익보다 우월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해당 언론의 소유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액은 2만 유로 이하로 하되, 침해행위가 중상 또는 중대한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만 유로 이하로 한다.

1. 범죄행위의 피해자

2. 범죄혐의가 있거나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 [...]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보호받을 만한 이익이 침해된 것이다.

1.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람과 관련하여서는 공개가 당사자의 고도로 은밀한 사적 영역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를 노출시키는 경우

2.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람과 관련하여서는 공개가 청소년 또는 경죄에만 관한 것이거나 당사자의 생계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 [...]224)

제7조b(무죄추정 보호) (1) 범죄혐의가 있으나 아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언론이 그 사람의 범죄혐의가 입증되었다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범죄혐의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표현한 경우, 그 사람은 언론소유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액은 2만 유로 이하로 하되, 침해행위가 중상 또는 중대한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만 유로 이하로 한다. [...]225)

224) § 7a.. Schutz vor Bekanntgabe der Identität in besonderen Fällen. (1) Werden in einem Medium der Name, das Bild oder andere Angaben veröffentlicht, die geeignet sind, in einem nicht unmittelbar informierten größeren Personenkreis zum Bekanntwerden der Identität einer Person zu führen, die

1. Opfer einer gerichtlich strafbaren Handlung geworden ist oder

2. einer gerichtlich strafbaren Handlung verdächtig ist oder wegen einer solchen verurteilt wurde oder

3. als Aukunftpersone vor einem Untersuchungsausschuss des Nationalrates angehört wurde, und werden hiedurch schutzwürdige Interessen dieser Person verletzt, ohne dass wegen deren Stellung in der Öffentlichkeit, wegen eines sonstigen Zusammenhanges mit dem öffentlichen Leben oder aus anderen Gründen ein überwiegendes Interesse der Öffentlichkeit an der Veröffentlichung dieser Angaben bestanden hat, so hat der Betroffene gegen den Medieninhaber Anspruch auf Entschädigung für die erlittene Kränkung. Der Entschädigungsbetrag darf 20 000 Euro nicht übersteigen; im Übrigen ist § 6 Abs. 1 zweiter Satz anzuwenden.

(2)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Betroffenen werden jedenfalls verletzt, wenn die Veröffentlichung

1. im Fall des Abs. 1 Z 1 geeignet ist, einen Eingriff in den höchstpersönlichen Lebensbereich oder eine Bloßstellung des Opfers herbeizuführen,

2. im Fall des Abs. 1 Z 2 sich auf einen Jugendlichen oder bloß auf ein Vergehen bezieht oder das Fortkommen des Betroffenen unverhältnismäßig beeinträchtigen kann.

나. ‘형사사법방해죄’ 신설론

언론이 범죄사건을 선정적이고 무절제하게 보도해 형사사법의 적정성과 개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보는 측에서는 언론보도를 보다 강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이미 1962년의 독일형법개정안에서 제시된 바 있는데,²²⁶⁾ 이 개정안의 취지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매체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언론이 형사사법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어할 필요성이 훨씬 커졌다고 본다.²²⁷⁾

이들은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형사절차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즉, 언론에서는 법과는 무관하고 편파적인 정보들을 유포하기 일쑤인데, 이는 형사절차 참여자들에게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며, 결국 형사절차의 공정성이 깨질 위험이 커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형사사법의 원활한 기능을 교란하는 언론의 활동을 적절히 제어할 규정이 현재 독일 「형법」에는 없다고 한다. 이렇게 「형법」 규정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이 비단 형사사법뿐만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고 확인한다.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의자와 피고인은 명예훼손을 당하고 사회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피해는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원상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피의자와 피고인의 명예를 더 충실히 보호하고, 언론이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 중 이미 공개된 것만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보도하게

225) § 7b. Schutz der Unschuldvermutung (1) Wird in einem Medium eine Person, die einer gerichtlich strafbaren Handlung verdächtig, aber nicht rechtskräftig verurteilt ist, als überführt oder schuldig hingestellt oder als Täter dieser strafbaren Handlung und nicht bloß als tatverdächtig bezeichnet, so hat der Betroffene gegen den Medieninhaber Anspruch auf eine Entschädigung für die erlittene Kränkung. Der Entschädigungsbetrag darf 20 000 Euro nicht übersteigen; im übrigen ist § 6 Abs. 1 zweiter Satz anzuwenden.

226) BT-Drs. IV/650, 1962, S. 86, 635.

227) 이러한 주장에 명분을 제공한 최근의 사례는 Eisele, J., “Strafprozessführung durch Medien”, JZ 2014, S. 932; Saliger, F., “Aushöhlung der Unschuldvermutung durch gezielte Öffentlichkeit?”, KritV 2013, S. 173 ff. 참고.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⁸⁾ 이러한 주장이 응축된 것이 1962년 형법개정안에서 제시한 ‘형사사법방해죄’ 구성요건이다.²²⁹⁾

제452조(형사사법방해) 제1심 판결 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출판물, 집회,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또는 영화에서 공연하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사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형사절차에서 공격인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그 형사절차의 향후 진행방향이나 증거물의 가치를 예단하면서 그 형사절차에 관하여 논하는 행위²³⁰⁾ […]

제3절 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미국은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었으나 이후 예단의 법리(prejudice)를 적용하여 수정헌법 제6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²³¹⁾ 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서 “모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 및 특별구의 공정한 배심원에 의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원인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신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강제 절차를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²³²⁾”을 표방하고 있다.

228) BT-Drs. IV/650, 1962, S. 635 ff.

229) BT-Drs. IV/650, 1962, S. 86.

230) § 452 Störung der Strafrechtspflege

Wer öffentlich während eines Strafverfahrens vor dem Urteil des ersten Rechtszuges in Druckschriften, in einer Versammlung oder in Darstellungen des Ton- oder Fernseh-Rundfunks oder des Films

1. den künftigen Ausgang des Verfahrens oder den Wert eines Beweismittels in einer Weise erörtert, die der amtlichen Entscheidung in diesem Verfahren vorgreift, oder
2. über das Ergebnis nichtamtlicher Ermittlungen, die sich auf die Sache beziehen, eine Mitteilung macht, die geeignet ist, die Unbefangenheit der Mitglieder des Gerichts, der Zeugen oder der Sachverständigen oder sonst die Findung der Wahrheit oder einer gerechten Entscheidung zu beeinträchtigen,

wird mit Gefängnis bis zu einem Jahr, mit Strafhaft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ies gilt nicht für eine Erörterung, die sich auf Fragen des anzuwendenden Rechts beschränkt.

231) 김정현,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재판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8회 한국형사학회대회 <미디어와 인권, 그리고 형사법> 자료집, 4-5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포토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피의자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있어 예단을 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에 있어서 선입견을 주는 법무부 직원의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언론보도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1. 미국 법무부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매뉴얼

수사 관련 언론보도 대응을 위해 미국 연방검찰은 별도의 매뉴얼을 갖고 있다. 미연방검찰매뉴얼(U.S. Attorneys’ Manual: USAM)²³³⁾이 2018년 9월 법무부 매뉴얼(Justice Manual: JM)로 개편되었다.²³⁴⁾ 이하에서는 현재 법무부 매뉴얼(JM)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의 공개

진행 중인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 직원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검사 또는 법무부 차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연방검사 또는 법무부 차관의 감독을 받지 않은 행정조사의 경우 법무부 행정실 차관의 승인을 받거나 조사가 검찰실 소관인 경우 검찰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JM 1-7.400 A).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존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 본조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부 직원은 혐의가 공개되기 전에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존재여부에 관한 질문이나 조사사건의 성격,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에 응답하지 않는다(JM 1-7.400 B). 그러나 법집행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하고

232) Amendment VI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233) USAM (<https://www.justice.gov/archives/usam/united-states-attorneys-manua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234) JM (<https://www.justice.gov/jm/justice-manua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본조 A항에 규정된 승인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다(JM 1-7.400 B).²³⁵⁾ 과거 미연방검찰 매뉴얼에서는 A항의 승인절차가 없었으나, 개정매뉴얼에서는 이 부분이 추가되었고, 기존에는 예외사유로 C항의 ‘적절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와 ‘공공 안전’ 외에도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in matters that have already received substantial publicity)”,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복지(Welfare)” 부분이 있었으나 개정내용에서는 삭제되었다.

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한

특정유형의 정보가 공개되면 재판절차에 편견을 줄 수 있으므로 법무부 직원은 적절한 절차에 의하거나 유죄 인정 이후 공표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① 피고 또는 당사자의 성격 묘사, ② 피고 또는 당사자와 관련된 진술, 시인, 자백, 알리바이, 피고인의 진술거부 또는 묵비권, ③ DNA 검사를 포함한 지문, 거짓말탐지기, 탄도검사, 법의학 검사와 같은 조사 절차 또는 이를 피고인이 거부했다는 사실의 공표, ④ 예비증인의 신원, 증언, 신빙성 여부에 대한 진술, ⑤ 이 사건에서 예상되는 증거 또는 주장에 대한 진술, ⑥ 피고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소된 범죄에 대한 유죄가

235) 1-7.400 Disclosure of Information Concerning Ongoing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 A. Any communication by DOJ personnel with a member of the media relating to a pending investigation or case must be approved in advance by the appropriate United States Attorney or Assistant Attorney General, except in emergency circumstances.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not overseen by a U.S. Attorney or Assistant Attorney General, approval must be obtained from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Administration. Where the investigation is being handled by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pproval must come from the Inspector General.
- B. DOJ generally will not confirm the existence of or otherwise comment about ongoing investigations.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C of this section, DOJ personnel shall not respond to questions about the existence of an ongoing investigation or comment on its nature or progress before charges are publicly filed.
- C. When the community needs to be reassured that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is investigating a matter, or where release of inform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 safety, comments about or confirmation of an ongoing investigation may be necessary, subject to the approval requirement in subparagraph A.

능성, 가벼운 판결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견해)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직원은 구금된 사람을 사진 촬영하거나 TV 방송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도와서는 안 된다. 법집행 당국의 역할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나 그 사진이 이미 사건공개기록의 일부가 아니라면 법무부 직원은 피고인의 사진을 스스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JM 1-7.610).²³⁶⁾ 기존에는 공개 제외사유가 있었으나 개정 매뉴얼에서는 사진 비공개 원칙이 추가되었다.

다. 언론매체에 대한 협조

법무부 직원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언론매체가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보도를 하려는 적법한 취재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범죄현장 경계선(Crime Scene Perimeter)과 같이 접근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 직원은 범죄 억제 및 국민의 신뢰 향상 등 법집행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방검사 또는 법무부 차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언론매체가 법집행 활동을 기록하거나 보도하는 것에 협조할 수 있다. 연방검사 또는 법무부 차관은 협조 시에 ① 불합리하게 개인을 위협에 빠뜨리는 경우, ②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③ 법으로 금지된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수색영상이나 구속영상이 집행되는 사안, 영장발부 준비과정에서 연방검사 또는 법무부 차관의 긴급 승인절차가 없으면 언론매체에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236) 1-7.610 - Concerns of Prejudice

Because the release of certain types of information could prejudice an adjudicative proceeding, DOJ personnel should refrain from disclosing the following, except as appropriate in the proceeding or in an announcement after a finding of guilt:

- A. Observations about a defendant's or party's character;
- B. Statements, admissions, confessions, or alibis attributable to a defendant or party, or the refusal or failure of the accused to make a statement;
- C. Reference to investigative procedures, such as fingerprints, polygraph examinations, ballistic tests, or forensic services, including DNA testing, or to the refusal by the defendant to submit to such tests or examinations;
- D. Statements concerning the identity, testimony, or credibility of prospective witnesses;
- E. Statements concerning anticipated evidence or argument in the case; and
- F. Any opinion as to the defendant's guilt, or the possibility of a plea of guilty to the offense charged, or the possibility of a plea to a lesser offense.

DOJ personnel should not encourage or assist news media in photographing or televising a person held in custody. DOJ personnel should not voluntarily disclose a photograph of a defendant unless it serves a law enforcement function or unless the photograph is already part of the public record in the case.

없다(JM 1-7.710).²³⁷⁾

2. 미국의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미국에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언론보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가. 언론보도로 인한 예단의 가능성

1) *Stroble v. California* 판결²³⁸⁾

피고인 Stroble이 1급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자 언론이 피고인의 체포과정과 자백에 대하여 검사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표하였고 언론보도가 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수정헌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이에 대해 미연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되, 언론보도가 배심원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으면 적법절차원칙(due process)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로 볼 때, 공동체적 예단이 배심의 평의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적법절차 원칙의 침해한 것으로 본 것으로 평가된다.²³⁹⁾

237) 1-7.710 - Assisting the News Media

- A. DOJ personnel shall not prevent lawful efforts by the news media to record or report about a matter, unless by reason of a court order. DOJ personnel may enforce access restrictions that apply to all persons, such as a crime scene perimeter.
- B. In order to promote the aims of law enforcement, including the deterrence of criminal conduct and the enhancement of public confidence, DOJ personnel,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appropriate United States Attorney or Assistant Attorney General, may assist the news media in recording or reporting on a law enforcement activity. The United States Attorney or Assistant Attorney General shall consider, among other things, whether such assistance would:
 1. Unreasonably endanger any individual;
 2. Prejudice the rights of any person; or
 3. Be otherwise proscribed by law.
- C. In cases where a search warrant or arrest warrant is to be executed, no advanc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to the news media without the express approval of the appropriate United States Attorney or Assistant Attorney General. This requirement also applies to operations in preparation for the execution of a warrant.

238) *Stroble v. California*, 343 U.S. 181(1952).

239) 정한중, “미국의 범죄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3, 365면.

2) *Irvin v. Dowd* 판결²⁴⁰⁾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의 자백과 전과 등에 대하여 공판 전에 언론보도가 되면서 변호인이 관할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범죄보도로 인해 당해 지역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단을 가지고 있었고, 선정된 배심원의 과반수가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배심원에게 예단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을 파기하였다. 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인정 기준으로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재판절차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지, 원심과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당해 재판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범죄사건 보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나. 언론보도로 인한 예단에 대한 구제수단

1) *Sheppard v. Maxwell* 판결²⁴¹⁾

본 판결은 피고인측이 예단의 법리를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파기하면서 예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는 관할 변경, 소송 연기, 언론보도로부터 배심원 격리, 언론보도로부터 증인 격리, 수사기관 및 사건관계자의 외부인에 대한 발언 및 접촉 금지가 있다.

이 판결은 예단방지의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의 준수에 있어서 침해의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이라는 관점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판결이고, 침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²⁴²⁾

240) *Irvin v. Dowd*, 366 U.S. 717(1961).

241) *Sheppard v. Maxwell*, 384 U.S. 333(1966).

242) 정한중, “미국의 범죄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3, 373면.

2) Nebraska Press Association v. Stuart 판결²⁴³⁾

1976년 미국 네브라스카 한 저택에서 6인 가족이 살해된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되자 언론이 범죄발생 사실과 피의자 체포에 대하여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다. 3일 후 검사와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수 있는 예단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보도에 대한 제한명령을 법원에 요구하였고 이에 법원은 포괄적인 보도제한명령(Restrictive Order, Gap Order)²⁴⁴⁾을 내렸고, 네브라스카 언론협회가 이 명령의 무효를 신청하였다. 네브라스카 주법원은 언론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도제한명령을 수정하여 보도금지 대상정보를 제한하였으나 언론협회가 연방대법원에 수정된 제한명령의 무효를 다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언론기관에 대한 사전 제한은 위헌성에 대한 추정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헌성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재판 전 보도의 본질과 범위, 제한 없는 재판 전 보도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 여부, 제한명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도제한명령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음과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 제한은 언론의 자유의 제한 기준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clear and present danger)에만 금지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이다.²⁴⁵⁾

3.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형사재판 기준

미국 연방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는 1966년 Shappard v. Maxwell 판결을 계기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재판 기준을 마련하였다. 1968년 제정된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공정한 재판과 자유 언론을 위한 형사재판 기준(ABA Criminal Justice Standards for Fair Trial and Free Press)에서는

243) Nebraska Press Association v. Stuart, 427 U.S. 539(1976)

244) 미국에서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언론에 대하여 보도제한명령(restrictive order, gap order)을 할 수 있다. 보도제한명령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 증인, 배심원, 피고인의 변호인 등 재판관련자의 공개발언이나 성명, 언론보도에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줄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45) 하태훈·이근우,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17, 96면.

재판에 관여하는 법률가들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전과,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 알리바이 등 진술,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증인 및 증인의 증언내용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배심원 선정 단계에서도 후보자에 대하여 예단이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공소 제기 전과 공판 중에는 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심원을 언론보도로부터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⁴⁶⁾ 1979년 개정된 형사재판 기준에서는 언론기관에 대하여 사전 보도금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법률가의 사실 공표 금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⁴⁷⁾ 1991년 개정된 형사재판기준에서는 언론기관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전 보도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고, 사건 관련 법률가들이 공표에 대해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하도록 하였다.²⁴⁸⁾

4. 미국 법원-검찰-변호사-법조기자 공동위원회 운영

미국은 주 단위로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법조기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워싱턴 주의 Washington Bench Bar Press Committee이다. 이 위원회는 워싱턴주 대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 언론이 언론의 자유와 공평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1963년에 조직되었다.

본 위원회의 활동원칙(Statement of Principle)²⁴⁹⁾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보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언론 보도에 있어서 공표되어도 되는 사항과 공표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칙 3에서는 변호사와 언론인은 언론보도의 압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

246) ABA Criminal Justice Standards Committee, ABA Criminal Justice Standards for Fair Trial and Free Press third Edition (1991), p.6.

247) ABA Criminal Justice Standards Committee, ABA Criminal Justice Standards for Fair Trial and Free Press third Edition (1991), p.6.

248) ABA Criminal Justice Standards Committee, ABA Criminal Justice Standards for Fair Trial and Free Press third Edition (1991), p.8.

249) Statement of Principle (http://www.courts.wa.gov/committee/?fa=committee.display&item_id=59&committee_id=77,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며, 언론보도의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보도범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⁵⁰⁾ 원칙 5에서는 자유로운 언론은 언론인이 뉴스 내용을 결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기자는 독자, 청취자, 시청자가 잠재적인 배심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²⁵¹⁾ 형사절차 관련 보도에 있어서 ① 피고인의 이름, 나이, 거주, 고용, 혼인 여부 및 이와 관련한 배경정보, ② 고소 또는 기소 등 정보의 내용 또는 고소 당사자의 신원, ③ 조사 및 체포기관의 신원과 조사기간, ④ 체포시기와 장소, 저항, 추적, 무기 소유 및 사용 여부, ⑤ 체포 당시 압수된 물품에 관한 설명 등 당시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나, ① 피고인의 성격과 유무죄에 관한 의견, ② 시인, 자백 또는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 알리바이 내용, ③ 지문, 거짓말탐지기, 탄도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 ④ 예비증인의 신빙성 또는 예상 증언에 관한 진술, ⑤ 증거 또는 주장이 재판에 사용될 것으로 사용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의 경우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⁵²⁾

250) 3. Lawyers and journalists should fulfill their functions in such a manner that cases are tried on the merits, free from undue influence by the pressures of news media reports. To that end, the timing and nature of media news repor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t is recognized that the existence of news coverage cannot be equated with prejudice to a fair trial.

251) 5. A free press requires that journalists decide the content of news. Journalists in the exercise of their discretion should remember that readers, listeners, and viewers are potential jurors.

252) 1. It is appropriate to make public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defendant:

- a. The defendant's name, age, residence, employment, marital status, and similar background information. There should be no restraint on biographical facts other than accuracy, good taste, and judgment.
 - b. The substance or text of the charge, such as complaint, indictment,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the identity of the complaining party.
 - c. The identity of the investigating and arresting agency and the length of the investigation.
 - d. The circumstances immediately surrounding an arrest, including the time and place of arrest, resistance, pursuit, possession and use of weapons, and a description of items seized at the time of arrest.
2. The release of certain types of information by law enforcement personnel, the bench and the bar and the publication thereof by news media generally tends to create dangers of prejudice without serving a significant law enforcement or public interest function. Therefore, all concerned should be aware of the dangers of prejudice in making pretrial public disclosures of the following:
- a. Opinions about a defendant's character, his guilt or innocence.
 - b. Admissions, confessions or the contents of a statement or alibis attributable to a

제4절 영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 영국검찰청의 취재 및 보도기준

영국에서 우리와 같은 포토라인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검찰청 내 기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취재활동을 하고, 검찰청 내 출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능하며, 기자의 사진 촬영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검사는 수사가 끝난 이후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건경과, 범죄사실 등을 언론에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검사는 브리핑 과정에서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중 피의자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같이 확인해 준다.²⁵³⁾ 수사 및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법정모욕죄를 적용하고 있다.²⁵⁴⁾

2. 영국 언론자율규제기구(IPSO)의 윤리강령

1990년 영국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 PCC)가 설립되었으나 자율규제의 한계와 문제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 9월 8일 문을 닫았다.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인터넷매체에 대한 자율적 규제기구로서 2014년 「언론자율규제기구(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zation: IPSO)」가 만들어졌다. 영국 언론자율규제기구는 영국 전체의 인쇄매체와 온라인 매체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다루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기구이다.

언론자율규제기구는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자체 조사하여 언론중재사를 안을 다투고, 필요한 경우 언론사별 윤리강령 준수보고서를 요청하여 모니터링하기도

defendant.

- c. Opinions about the results of investigative procedures, such as fingerprints, polygraph examinations, ballistic tests or laboratory tests.
- d. Statements concerning the credibility or anticipated testimony of prospective witnesses.
- e. Opinions concerning evidence or argument in the case, whether or not it is anticipated that such evidence or argument will be used at trial.

Exceptions may be in order if information to the public is essential to the apprehension of a suspect or where other public interests will be served.

253)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90면

254) 박용상, 언론의 자유, 박영사, 2013, 841면.

한다.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윤리강령의 위반이 심각한 경우 벌금까지 부여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²⁵⁵⁾ 언론자율규제기구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²⁵⁶⁾

1. 신문·잡지 발행 회원사가 윤리강령을 따르도록 한다.
2. 윤리강령을 위반할 수 있는 인쇄매체 또는 온라인 자료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한다.
3. 신문과 잡지가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정보도 또는 평결을 공표하도록 한다.
4. 언론지침을 감사하고 신문·잡지 발행 회원사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심각한 기준 위반을 조사할 수 있고, 위반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언론사에 대해 최대 1백만 파운드를 부과할 수 있다.
6. 24시간 성희롱 예방 라인을 운영한다.
7. 편집자와 기자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8. 언론인이 가능한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과 지도를 실시한다.
9. 윤리강령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압력을 받는 언론인을 위해 내부고발 핫라인을 운영한다.
10. 언론기준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선단체, NGO 등과 협력한다.

영국 언론자율규제기구는 프라이버시, 과도한 취재, 범죄보도에 있어서 「윤리강령 (Editors' Code of Practice)」²⁵⁷⁾을 제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하여, 모

255) 김창룡,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제2호, 부산울산 경남언론학회, 2018, 65면.

256) IPSO(<https://www.ipso.co.uk/what-we-do/#WhatIsIPSO>,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We make sure that member newspapers and magazines follow the Editors' Code.
 We investigate complaints about printed and online material that may breach the Editors' Code.
 We can make newspapers and magazines publish corrections or adjudications if they breach the Editors' Code (including on their front page).
 We monitor press standards and require member newspapers and magazines to submit an annual statement about how they follow the Editors' Code and handle any complaints.
 We can investigate serious standards failings and can fine publishers up to £1 million in cases where they are particularly serious and systemic.
 We operate a 24-hour anti-harassment advice line.
 We provide advice for editors and journalists.
 We provide training and guidance for journalists so they can uphold the highest possible standards.
 We provide a Whistleblowing Hotline for journalists who feel they are being pressured to act in a way that is not in line with the Editors' Code.
 We work with charities, NGOs and other organisations to support and improve press standards.

257) IPSO Editors' Code of Practice (<https://www.ipso.co.uk/editors-code-of-practice/>,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든 사람은 개인 및 가정생활, 집, 건강, 전화·전자메일 등 통신매체에 있어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편집장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하여 설명을 정당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공공 또는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²⁵⁸⁾ 과도한 취재(harassment)에 관하여, 기자들은 취재 목적으로 취재원을 협박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되고 취재원의 정보 등을 끈질기게 추적해서도 안 되며, 취재원이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히 “제발 그만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더 이상 질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추적해서는 안 되며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되며, 취재원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그곳에 남아 있거나 쫓아가서는 안 된다. 편집장은 기자들이 윤리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보도용으로 허가받지 않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게 할 의무를 진다.²⁵⁹⁾ 범죄보고(reporting of crime)에 관하여, 범죄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자의 친척 또는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원을 밝혀서는 안되고, 친척이나 친구가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실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한 설명과 나이 등의 신원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거나 신체가 다친 상황에 있는 경우 특히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하나, 배심원 평결

258) 2. Privacy

- i) Everyone is entitled to respect for his or her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health and correspondence, including digital communications.
- ii) Editors will be expected to justify intrusions into any individual's private life without consent. In considering an individual's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account will be taken of the complainant's own public disclosures of information and the extent to which the material complained about is already in the public domain or will become so.
- iii) It is unacceptable to photograph individuals, without their consent, in public or private places where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259) 3. Harassment

- i) Journalists must not engage in intimidation, harassment or persistent pursuit.
- ii) They must not persist in questioning, telephoning, pursuing or photographing individuals once asked to desist; nor remain on property when asked to leave and must not follow them. If requested, they must identify themselves and whom they represent.
- iii) Editors must ensure these principles are observed by those working for them and take care not to use non-compliant material from other sources.

및 심리 등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보도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편집자는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체포된 후 소년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그 미성년자의 이름이 공개되었거나 미성년자의 동의(16세 미만인 경우 양육 부모나 유사한 책임을 가진 성인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로 한다. 이는 형사 법원에 출석하거나 익명성이 제거된 미성년자의 이름을 공개할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²⁶⁰⁾

3. 영국 BBC방송의 제작가이드라인

영국 BBC방송은 공정성과 정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율규제로 「BBC윤리강령」과 「제작가이드라인(BBC Editorial Guideline)」을 제정해 두고, 5년마다 수정·보완하고 있다. 「BBC 제작가이드라인」은 BBC종사자에 대한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자율규정이다.²⁶¹⁾ 「BBC 제작가이드라인」²⁶²⁾은 ① 5년마다 수정 보완을 통해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적 구체성 및 실천력 담보, ② 취재·제작 현장에서 기자, PD 등의 임의적 판단과 행동을 제한하고, 사전에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BBC 해당분야 부국장급 간부들과 사전보고 등 소통 강화, ③ BBC 전직원뿐만 아니라 자유기고가, 영상제작·납품 독립제작사의 구성원까지도 BBC가 추구하는 공적가치와 책임, 윤리의식을 함께 존중하기 위한 노력, ④ BBC 제작가이드라인을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 제작교과서로 활용, ⑤ 제작진의 자의적

260) 9. Reporting of Crime

- i) Relatives or friends of persons convicted or accused of crime should not generally be identified without their consent, unless they are genuinely relevant to the story.
- ii) Particular regard should be paid to the potentially vulnerable position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ho witness, or are victims of, crime. This should not restrict the right to report legal proceedings.
- iii) Editors should generally avoid nam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fter arrest for a criminal offence but before they appear in a youth court unless they can show that the individual's name is already in the public domain, or that the individual (or, if they are under 16, a custodial parent or similarly responsible adult) has given their consent. This does not restrict the right to name juveniles who appear in a crown court, or whose anonymity is lifted.

261)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영국 BBC 제작가이드라인 및 심의사례, 2011, 2면.

262) BBC Editorial Guideline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해석과 판단을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 제시, ⑥ 특별히 신속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경우 정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²⁶³⁾

제7항 프라이버시와 동의(Privacy and Consent)에서는 방송제작, 보도에 참여하기로 분명하게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상되는 촬영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Section 7.3.1).²⁶⁴⁾ 비밀촬영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한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장소가 어디든지 공개적으로 촬영해야 하고, 방송장비가 비디오카메라나 모바일폰 카메라, 웹카메라처럼 초소형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에 더 중요하다. 제작진은 가능한 경우 취재원에 대하여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미리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Section 7.3.2).²⁶⁵⁾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때 우연히 촬영에 노출되는 각 개인에 대하여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으나, 그 촬영장면이 개인이 초상권 보호에 기대가 있는 활동이고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그러나 촬영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침해를 인식하고 촬영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촬영 후 즉시 연락하여 촬영장면 방송금지를 요청한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Section 7.3.3).²⁶⁶⁾ 병원, 학교, 교도소 등 촬영 취재에 민감한 장소의 경우

263) 김창룡,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제2호, 2018, 60-61면.

264) 7.3.1 When contributors give informed consent to take part in our output, they can be assumed to have waived their expectations of privacy in relation to their contribution, subject to any agreed conditions placed on their participation.

265) 7.3.2 We should operate openly where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people's privacy, unless we have approval for secret recording. This is important when using inconspicuous recording devices or live streaming. Where practicable we should use notices to make people aware that we are recording or live streaming and to allow them to avoid us.

266) 7.3.3 When filming openly in places accessible to the public, we do not normally obtain consent from individuals who are incidentally caught on camera as part of the general scene, unless they are engaged in an activity where they have a legitimate expectation of privacy that is not outweighed by a public interest in showing them. However, if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asks us to stop filming or recording (whether live or recorded) because of a concern about privacy, we should normally do so, unless it is justified in the public interest to continue. If we are contacted by someone immediately after filming has taken place with a reasonable request not to show them in the recording we should normally agree unless it is justified in the public interest not to do so.

촬영을 해도 좋다는 동의와 그 촬영물을 보도해도 좋다는 두 가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Section 7.3.4).²⁶⁷⁾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2000년부터 프라이버시 사항이 인권헌장에 포함되고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제18항 법률(the law) 영역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수반하는 제작을 할 경우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5절 일본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일본은 1930년대 군국주의 사회에서 1945년 패전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5년간 점령통치를 경험하면서 연합국최고사령관 총사령부에 의해 미국식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²⁶⁸⁾ 점령통치의 종료와 함께 자유주의적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었고, 1946년 7월 일본신문협회에서 「신문윤리강령(新聞倫理綱領)」이 제정되었고, 1950년대부터 방송사와 언론사별로 윤리강령 등이 제정되었다.²⁶⁹⁾ 1970년대부터 매체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취재원의 인권 침해, 보도프로그램 조작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취재윤리에 대한 법적 규제, 방송언론사들의 자율규제방안이 마련되었고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나리타 인터뷰 조작사건’, 1990년대 ‘옴진리교 보도사건’ 등으로 취재윤리 문제가 지적되면서 TBS를 중심으로 방송강령과 방송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이 구체화 되었다.

267) 7.3.4 In potentially sensitive places, for example, ambulances, hospitals, schools, prisons or police stations, we should normally obtain two separate consents: one for gathering the material and the other for broadcasting it, unless it is justified not to obtain such consents.

268) 나준영, “포토라인의 현실과 새로운 미래: 현장운용의 문제점과 일본 사례를 통한 변화의 모색”,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 자료집, 카메라기자협회, 2011, 8면.

269) 大石泰彦, “報道倫理に関する考察: 日仏の制度を比較して”, 社会学部紀要 94, 2003, 17頁 (https://www.kwansei.ac.jp/s_sociology/attached/5293_44386_ref.pdf,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1. 동경지검의 취재·보도 가이드

일본은 우리나라의 법조출입기자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기자클럽을 운영하여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기자클럽은 명치시대였던 1890년에 제1회 제국의회가 개최되었고, 의회측이 표시한 신문기자취재금지 방침에 대해 무렵 취재 및 보도를 위해 동경유력지인 시사신보(時事新報)가 '의회출입기자단'을 만들어 취재 편의도모를 위한 장소를 요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²⁷⁰⁾ 기자클럽은 공적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의 계속 취재를 할 목적으로 주요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임의조직으로,²⁷¹⁾ 일본 기자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²⁷²⁾ 기자클럽 중 법조기자클럽(法曹記者クラブ)은 동경방송(TBSテレビ), TV동경(テレビ東京) 등 방송사,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신문사 등(2019년 2월 18일 현재 37개사 참여²⁷³⁾)이 각 언론사별로 3-8명의 기사를 파견하고 있다. 사법기자클럽은 주로 법무성, 최고검찰청, 동경고등검찰청, 동경지방법검찰청, 법무총합연구소에 파견되고 최고재판소 등 법원에도 파견되기도 한다. 검찰청에 각 언론사별 전담기자 1-3명이 파견되어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²⁷⁴⁾ 일본은 기자클럽을 통해 우리의 포토라인에 해당하는 '카메라 라인(カメラライン)'을 설정해 두고 있다.²⁷⁵⁾ 일본 언론은 범죄보도에 있어 우리의 출입기자제도와 유사한 '기자클럽'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기자클럽의 준치가 범죄보도의 편중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경지검은 차석검사가 공보관이 되고, 기자와의 접촉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까지 허용된다. 차석검사는 매일 5-30분 정도 공식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사사건에 대한 공식기자회견은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와 수사가 종료된 뒤 기소단계에서만 가능하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은 체포영장,

270) ウィキペディア 記者クラブ (<https://ja.wikipedia.org/wiki/%E8%A8%98%E8%80%85%E3%82%AF%E3%83%A9%E3%83%96>,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271) ウィキペディア 記者クラブ (<https://ja.wikipedia.org/wiki/%E8%A8%98%E8%80%85%E3%82%AF%E3%83%A9%E3%83%96>,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272) 문승재, “포토라인 준칙 개선방안”,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1면.

273) 法曹記者クラブ名簿平成31年2月18日現在(<http://yamanaka-bengoshi.jp/saibankan/wp-content/uploads/2019/04/法曹記者-クラブ名簿>,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274)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51면.

275) 문승재, “포토라인 준칙 개선방안”,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1면.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이 기자들에게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고, 공식브리핑의 보도 자료는 오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페이지를 넘지 않고 있다. 동경지검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거나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도 또는 추측성 보도를 했을 경우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취재를 거부할 수 있다.²⁷⁶⁾ 검찰에서는 소환된 피의자에 대한 인터뷰 등 직접취재가 제한되어 있으나 검찰에 소환된 일부 정치인이 청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의 보도는 가능하다.²⁷⁷⁾ 원칙적으로 검찰청 내 사진기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소환자의 출두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포토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검찰청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기자 개인의 정보력에 의해 소환대상자를 찾아내어 촬영하는 경우는 있다.²⁷⁸⁾

일본은 1984년 일부 언론이 피의자에 대하여 “용의자”라고 명칭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말에는 모든 언론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배려한 기사작성을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용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987년 일본 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는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공적정보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권리, 정확하고 필요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언론의 흥미 위주, 영리주의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인권과 보도에 관한 선언(人權と報道に関する宣言)」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언론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⁷⁹⁾

1. 보도에 관한 공공성 및 공익성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취재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배려하고 지나친 취재 및 보도를 하지 않을 것
2. 범죄보도에 있어서 수사정보에 안이하게 의존하지 않고, 보도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며, 원칙 익명보도 실현을 위해 익명의 범위를 확대할 것
3. 이외에도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심사구제를 실시하는 언론기관 자체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와 보도평의회 등 심사구제기관의 도입에 대하여 언론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하며, 부당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방지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76)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51면.

277)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59면.

278)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59-60면.

279) 人權と報道に関する宣言 (https://www.nichibenren.or.jp/activity/document/civil_liberties/yeah/1987/1987_1.htm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1998년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사건(和歌山毒入りカレー事件)에서 많은 취재진이 현장이나 관계자의 집 앞에 몰려다니면서 과잉 집단취재를 함에 따라 언론의 사건보도에 대하여 익명보도 원칙이 주장이 나오긴 하였으나, 일본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경찰의 광범위한 발표에 대해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²⁸⁰⁾ 수사당국은 사건 및 사고를 발표할 때 용의자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 학교명 등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특히 피해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일 언론사가 ①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기사, ② 혐의 내용에 있어 검찰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 ③ “특수부도 파악하고 있다”, “지검도 추적 중” 등 검찰의 이름을 이용하여 권위를 부여한 기사, ④ 피의자의 도주, 관계자의 공모 등 증거인멸을 한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기사, ⑤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기사, ⑥ “조만간 체포” 등 수사의 동향을 예고하는 추측기사, ⑦ 피의자 또는 향후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게 직접 접촉해서 쓴 기사에 대하여는 검찰청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²⁸¹⁾

2. 일본의 언론보도 관련 판례

일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관한 판례로 대표적인 것이 로스 의혹사건(ロス疑惑事件)²⁸²⁾이다. 1981년 미국 LA에서 발생한 일본인의 총기살인사건에 대해 남편 미우라씨(三浦和義)가 보험금 살인범이 아니냐는 일련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1984년 주간춘문(週刊文春)이라는 언론사는 “의혹의 총탄(疑惑の銃弾)”이라는 제목으로 ‘미우라씨가 아내에게 보험금을 많이 걸거나 현장에 있던 하얀 차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미우라의 진술 등을 이유로 미우라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내용의 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로 인해 일본 국내 언론매체가 미우라 범인설을 강조하는 과열보도가 이어졌다. 미우라의 집 앞에는 연일 주간지,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줄을 서고 미우라의 집에 불법 침입하는 언론매체도 등장하였다.

280) 島崎哲彦, “現代における犯罪報道の現状と課題”, 東洋大学ヒューマン・インタラクション・リサーチ・センター研究年報 (8), 2011, 3頁.

281)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62면

282) 위키백과사전 로스疑惑 (<https://ja.wikipedia.org/wiki/%E3%83%AD%E3%82%B9%E7%96%91%E6%83%91>,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미우라씨는 동기를 비롯한 다양한 정황증거로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미우라는 동경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고등법원은 구타사건 이후 공범자가 잡힌 행동이나 보험금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점, 녹색자동차로 온 2명에 의해 습격을 당했으나 현장에서 확인한 하얀 차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진술이 가능성이 높은 한편, 현행범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2003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무죄 확정 당시 사건발생 및 언론보도가 나온 지 20년이 가까이 지났고 당시 언론 대부분 미우라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형태로 보도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무죄 확정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은 적었다.

10년간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미우라씨에 대한 취재 과열화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이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우라씨는 언론매체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사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476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았다(소송 중 80% 승소 주장, 15%는 시효를 이유로, 5%는 시효 이외의 이유로 패소).

미우라 사건을 통해 일본에서 “취재원의 인권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취재가 가능한 보도구간 거리는 최대 5미터이고, 보도진은 양 옆으로 최대 50미터 공간 내에서 취재원의 도보행위와 취재원을 실은 차량을 취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다.²⁸³⁾

3.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

가. TBS보도윤리 가이드라인

1990년에 개정된 「TBS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은 100페이지에 이르는 내용 중 절반 이상이 취재원 보호와 취재자의 윤리적 자세를 규정하고 있고, 133개의 구체적 사례와 설명을 기술하고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1장 보도의 기본자세, 제2장 제6절 보도활동과 통보, 제2장 제7절 당국과의 관계, 제2장 제8절 POOL 취재,

283) 나준영, “한일 포토라인 제도 비교를 통해 본 한국 포토라인제도의 문제점”, 〈포토라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2006, 42면.

제4장 취재현장에서의 취재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²⁸⁴⁾

나. TV동경 보도윤리 가이드라인²⁸⁵⁾

「TV동경 보도윤리 가이드라인(テレビ東京・報道倫理ガイドライン)」은 TV동경의 보도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 등이 질 높은 보도활동을 하기 위한 지침이다. 1994년에 「보도윤리강령(報道倫理綱領)」이 마련되었고, 이 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8월에 「보도윤리 가이드라인(報道倫理ガイドライン)」이 제정되어 2014년 4월에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도의 사명이 진실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고, 보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송저널리스트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고, 정확·공정·객관적인 보도를 할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은 알권리에의 봉사, 객관성 확보, 인권의 존중, 사회적 영향력의 자각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제2장 행동지침 인권 존중에서 보도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진실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취재 자세를 지양하고,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며 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도하는 자는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이 당사자나 그 가족 및 조직의 운명을 크게 바꾸는 것임을 인식하고, 사실 오인이나 부정확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명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이어서 공표할 수 없는 법적 권리로, 보도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 시 전해야 할 범위와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취재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치인·공무원 등의 공인이나 유명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프라이버시는 한정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보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초상권은 개인의 초상을 함부로 촬영·공표하지 않을 권리로, 사람의 초상에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격권,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제적 권리가 있

284) 나준영, “포토라인의 현실과 새로운 미래: 현장운용의 문제점과 일본 사례를 통한 변화의 모색”,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 자료집, 카메라기자협회, 2011, 8면.

285) テレビ東京・報道倫理ガイドライン(<https://www.tv-tokyo.co.jp/main/yoriyoi/rinri.htm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다고 보아, 인물을 촬영할 때 초상권의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²⁸⁶⁾

많은 배려영역 가운데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²⁸⁷⁾

1.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 당사자의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호칭을 붙여 인권을 배려하고,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프라이버시를 불필요하게 파헤치거나, 가정 또는 억측으로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2. 보도에 있어 경찰이나 검찰의 발표에만 의지하지 않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본인에 대한 취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나 그 가족, 관계자 등을 다각적으로 취재하고, 수사당국의 오인 체포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두고 보도해야 한다.
3.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전과, 전력을 보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전과 및 전력의 보도는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사건의 진상규명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86) <個人の名誉、プライバシー、肖像権の尊重>

報道には、人権を尊重する自由で平和な社会の実現に貢献する使命がある。真実に肉薄する果敢で積極的な取材姿勢を崩さず、個人の名誉やプライバシーを最大限尊重して報道する。

(1) 名誉の尊重

報道に携わる者は、メディアによる名誉の棄損が当事者や家族・組織の運命を大きく変えるものであることを自覚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実誤認や不正確な報道でいったん名誉を傷つけば、それを回復するのは極めて難しいことを肝に銘じるべきである。

(2) プライバシーの尊重

プライバシー権は「私生活をみだりに公表されない法的保証ないし権利」と解釈されている。報道の対象となる個人について記述、説明する場合は伝えるべき範囲と表現が適切かどうか十分考慮し、取材上知り得た個人情報には慎重に取り扱う。家族や関係者についても同様である。ただし、政治家・公務員などの公人や著名で社会的影響力のある人物のプライバシーは限定される。その内容に公共性・公益性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を吟味して報道する。

(3) 肖像権の尊重

肖像権は一般的に「個人の肖像をみだりに撮影・公表されない権利」とされている。人の肖像にはプライバシーにかかわる人格的な権利と、個人の財産とみなされる経済的な権利(芸能人の場合など)が認められている。人物を撮影する場合は、その肖像権に十分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建築物などの撮影や放送についても居住者、所有者のプライバシーや財産的価値に配慮する。

287) <容疑者・被告の人权に配慮する>

- 犯罪報道においては「容疑者」や「被告」など、当事者の法的立場を明確にした呼称をつけ、その人权に配慮する。
- 容疑と関係の無いプライバシーを不必要に暴いたり、仮定や憶測で当事者に具体的な容疑があるかのような報道はしない。
- 警察や検察の発表だけに頼らず、容疑者・被告の主張にも耳を傾ける。容疑者・被告本人の取材ができない場合でも、弁護士や家族、関係者などを多角的に取材する。捜査当局の誤認逮捕や人权侵害の可能性を常に念頭において報道する。
- 容疑者であっても不必要に前科・前歴を報道することは人权侵害につながる。前科・前歴の報道は、その犯罪事実と密接に関連し事件の真相解明に不可欠と判断される場合に限定される。

다.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

2003년 7월 일본민간방송연맹과 일본방송협회(NHK)는 방송사업의 공정성,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을 기반으로 하여 정확한 방송과 방송윤리의 고양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放送倫理・番組向上機構: BPO)를 설치하였다.²⁸⁸⁾ 이 기구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시청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방송에 대한 불만과 방송윤리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에는 방송사업자 임직원 이외 제3자에 의해 구성된 3개의 위원회가 있다. 방송윤리검정위원회(放送倫理検証委員会)는 방송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심의와 허위방송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인권위원회(放送と人権等権利に関する委員会)는 방송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청소년위원회(放送と青少年に関する委員会)는 청소년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해 의견교환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를 구성하는 각 방송국은 위원회로부터 방송윤리상의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 구체적인 개선책을 포함한 조치상황을 일정기간 내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 기구는 그 보고 등을 공표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원회(BRC)에서는 매년 방송사에 대한 판단기준을 배포하고,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방침을 소개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보도국 내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취재된 영상에 대해 판단해주는 담당자를 두어 방송사의 취재, 제작과정에서서의 윤리적 문제 등을 사전에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⁸⁹⁾

288) TBSテレビ(<http://www.tbs.co.jp/company/regulation/bpo.htm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289) 나준영, “포토라인의 현실과 새로운 미래: 현장운용의 문제점과 일본사례를 통한 변화모색”,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자료집, 2011, 10면.

제6절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의 시사점

외국의 우리나라의 포토라인제도와 같은 형태로 수사상황이 공소 제기 전에 공개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서 기소 전에는 언론의 보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공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 허용을 하고 있으며, 공개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요하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예술저작권법」에서 ‘시사인물’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피의자의 초상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단, ‘시사인물’의 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시사인물’과 피의사건의 연관성도 공개 요건을 삼을지를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각 주의 「언론법」은 “수사기관은 언론이 여론 형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다면, 각 주의 「언론법」에서처럼 수사기관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다음, 그 범위를 개인의 인격권과 형사사법의 적정성을 고려해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수사기관과 언론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우리 입법의 기초로 삼을 만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레바흐 판결’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교량하는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카헬만 사진 빌트지 게재 사건’에서는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사적 영역인지를 기준으로 초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우리 입법방향 설정에 있어서 참고할만하다. 독일의 ‘대안’ 논의에서 제시한 입법론에서처럼,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두루 감안하여 그 문제를 규율하는 기본규정을 만들고 이를 「형사소송법」에 삽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만하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에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해두고 공개에 대한 승인절차들을 상세히 언급하고 진행중인 형사사건의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거나 유죄인정 이후 공표되는 것이 아니면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개가 제한됨을 명시해두고 있다. Storoble 판결 등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상세한 공개가 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수 있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예단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언론과 수사단계에서의 인식차와 책임성 있는 보도원칙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워싱턴 주의 워싱턴 검찰-변호인-법조기자 공동위원회(Washington Bench Bar Press Committee)의 사례는 향후 우리 수사기관과 언론매체의 조화로운 수사보도 활동의 체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검찰청 내 포토라인뿐만 아니라 기자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공식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언론매체 스스로 언론자유규제기구(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zation: IPSO)를 운영하여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조사하고 중재사안을 다루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100만파운드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기자실과 유사한 기자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검찰청 내에 사진기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소환대상자에 대한 소환일시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각 방송사에서 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만들어 언론사 스스로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언론계가 배워야 할 점이다.

외국은 다양한 형태로 언론보도에 관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있다. 첫째, 수사 전의 언론보도 특히 개인의 얼굴 등이 공개되는 보도의 경우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예단을 갖게 하므로 극도로 지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공개로 인한 실의 등과 비교 형량하여 평가하고 있다. 셋째, 언론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구나 각 언론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사관련 언론보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제 5 장

포토라인을 통해 본 수사관련 언론보도 개선방안

포토라인을 통해 본 수사관련 언론보도 개선방안

제1절 형사절차 측면에서 포토라인이 끼치는 영향

제2장에서 포토라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포토라인 자체는 언론기관이 만든 자율적 제한선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포토라인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소제기 전에 국민에게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혐의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피의자의 향후 조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범죄기사에 대한 언론인과 법조인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법조인과 언론인간 그리고 유형간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보도관행이 판결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²⁹⁰⁾

그렇다면 포토라인을 통해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기관의 보도 자유의 영역으로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공익적 측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포토라인에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확정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하나의 요소로도 파악되고 있다.²⁹¹⁾ 따라서 포토라인을 통해 피의자 또는

290) 양재규·이창현, “범죄기사에 대한 언론인과 법조인의 인식유형 및 그 특징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한국언론법학회, 2016, 280면.

291)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23면.

혐의자에 불과한 대상에 대하여 공인이라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는 규범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 의해서도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언론기관도 무죄추정의 원칙의 수범자가 되어야 한다.²⁹²⁾ 무죄추정의 원칙은 주관적 공권인 반면 국민의 알권리는 공인이라고 무조건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로 인한 실익과 이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등의 침해를 비교 형량하여 보도내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포토라인을 통한 수사상황이 공개됨에 있어서 언론보도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내용인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개인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한 충분한 동의절차를 확보하고 있는지, 보도되는 내용이 사람에 대한 공익성뿐만 아니라 보도사실에 있어서 공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포토라인의 운영이 형사절차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여 포토라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비록 포토라인의 운영으로 사건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여론형성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로 인한 방어권 행사의 무력화 등이 야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공개소환제도 등 수사절차에서 언론보도 관련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지, 형사사법 영역에서 언론의 영역인 포토라인을 폐지라고 주장하는 형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포토라인은 그야말로 언론매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 영역이고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의 역할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언론이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언론의 윤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292)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27면.

제2절 포토라인 관련 수사실무 개선방안

1. 공개소환제도의 개선방안

포토라인은 언론의 자율적 통제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포토라인이 세워지기 위한 전제로서의 정보(출석시간, 귀가시간)는 수사기관의 공개소환절차를 통해 나온다. 경찰, 검찰이 관련사실을 기자에게 알려주거나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포토라인 시기를 결정짓도록 한다. 수사기관의 ‘공개소환’이나 ‘공보’기능이 포토라인과 결합하여 역기능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개소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소환의 비공개원칙 고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다. 소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하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공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수사공보준칙은 원칙적 금지에 광범위한 예외를 열어두다 보니 오히려 공개소환이 원칙인 것으로 착각되게 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의 대부분이 공적인물로 분류되어 소환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다. 수사절차상 수사진행 과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익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개 원칙이 적용되도록 공개소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공개소환의 사유

검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원칙적으로 소환조사 정보 공개 및 수사과정에서의 촬영·녹화·중계 등이 허용되지 않으나 소환대상자가 “공적인물로 소환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은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사실이 알려져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소환 또는 귀가장면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에 경찰의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는 촬영·녹화·중계방송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찰수사에서는 검찰수사보다 보다 폭넓게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소환사실이 알려져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소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원칙적 금지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소환 사실이 알려져’와 같은 사실적 요소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허용할 수밖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소환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사실이 알려져 공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공개소환으로 촬영이 공개되는 사유를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사실이 알려져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적인물이고 피의사실이 공적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요건으로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소환시 촬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사실이 알려져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고, 범죄사실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소환일시에 대한 동의와 포토라인 서는 것에 대한 동의 구분

수사절차에서 공개소환에 응한 자체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절차

에서는 피의자 등이 공개소환에 응하게 되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의 공개소환에 대한 동의는 소환 일시에 대한 동의이지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한 동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소환일시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포토라인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되고 또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도 평가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소환일자 통보시 소환일자 공개로 인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 원치 않는 경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2016나2088859판결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동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 당시 촬영과 공표의 범위, 사용목적은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요하고, 촬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방송프로그램에 어떠한 용도를 쓰일지 알지 못했다면 초상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포토라인에 서는 동의를 할 경우 촬영방송사와 방송용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검사 등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언론매체 기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게 되면 동의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서 언론기관으로 넘겨질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므로, 객관의무를 지고 있는 검사가 소환일정 확정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라. 공개소환 내용의 축소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소환조사시 허용되는 공개정보로는 “소환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장소, 죄명”이 있다. 공개소환시 허용되는 정보로 소환대상자와 죄명, 소환일자가 공개되는 바람직하나, 소환시간 및 귀가시간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개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개소환시 제공되는 정보로는 소환대상자와 죄명, 소환일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칙 제18조의 다른 수사단계(수사의뢰, 압수수색, 출국금지, 체포구속

등)에서의 공개정보 범위도 재검토를 통해 축소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변호인이 없을시 공개소환 제한

공개소환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상자의 이미지나 추가 언론기사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공개소환에 임하고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 변호인의 개입과 도움이 이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 운영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미리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⁹³⁾ 만일 공개소환시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소환을 할 수 없도록 제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바. ‘소환’의 ‘출석요구’로의 명칭 변경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8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서 ‘소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문제점 제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체계 안에서 ‘소환’과 출석요구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실시하는 형태는 ‘출석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법원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실시하는 형태는 ‘소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요청은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수사 방식으로써 ‘출석요구’이기 때문에 출석의 강제성을 띄지 않고 피의자에게 조사수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반면에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요청은 ‘소환’이기 때문에 영장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소환에 강제성도 띠고 있다(제68조).

293) 김성룡,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혐의보도와 형사사법”,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70면.

〈표 5-1〉 소환과 출석요구의 차이

구분	소환	출석요구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68조	형사소송법 제200조
대상	피고인, 증인	피의자, 참고인
영장 필요성	소환장 발부	영장을 요하지 않음
출석 의무	있음	없음
출석 후 퇴거 가능 여부	재정의무 있음	언제든 퇴거 가능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 보증금 몰취 가능	-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출석요구’를 ‘소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수사관행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현행 준칙상에 있는 ‘소환’이라는 표현을 ‘출석요구’로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표 5-2〉 소환 관련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8조 ① ~ 5. 소환조사 : 소환 대상자가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소환 전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다. 죄명	제18조 ① ~ (현행과 같음) 5. 출석요구 조사: 출석요구 ----- ----- ----- ----- 가. 출석요구 ----- 나. 출석요구 ----- 다. ----
제22조(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① ----- -----출석요구,----- ----- ----- -----.
제23조(예외적 촬영 허용) ①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예외적 촬영 허용) ① ----- -----출석요구,----- ----- -----출석요구----- ----- ----- -----.

2. 보도관련 수사공보준칙 개선방안

가. 공인의 범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수사상황의 예외적 공개 대상자가 되는 ‘공적 인물’로는 “고위공직자, 정당의 대표·최고 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적 인물’이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 공적 임무가 부여된 공직자 및 정치인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은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²⁹⁴⁾ 그러나 실제로 포토라인을 통해 준칙에 열거되지 않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의 소환 등 수사상황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준칙에서 공인의 개념을 두었다 하더라도 포토라인을 서는 과정을 통해 무너지고 있고, 앞의 공개소환과 관련한 언론보도 분석 내용에서 보듯이 공개소환에 대한 판단이 공적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사건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는 대상일 경우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의 수사준칙에서와 같이 대상자 공개 기준이 보다 명확히 열거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언론인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나. 포토라인 거부 시 보호방안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포토라인에 서게 한다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다른 형태로 검찰청 소환에 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당사자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언론사에 이를 통지하여 포토라인을 만들지 않을 것과 청사의 다른 통로로 당사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294) 김창룡,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초상권 국내판결 사례와 영국 BBC와 IPSO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제2호,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8, 50면 각주 8번.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3. 언론의 수사보도관련 관행 개선

해외사례를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공개소환하고 그 장면을 언론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의 경우 기자가 검찰청을 출입하는 것은 검찰관계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검찰에서 피의자 소환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고, 언론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우선시하는 언론윤리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앞에서 피의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매뉴얼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언급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이익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확인을 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자클럽이 있으나 검찰청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소환대상자에 대한 출두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

외국에도 취재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억지로 알아내려 하지 않는 것은 각 언론사별로 보도윤리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보호가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보고 있고,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보도제한도 받기 때문에 언론이 무리하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리 언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의 언론은 수사단계에서 검찰 등에 의해 지득한 정보일지라도 한쪽당사자의 입장에서만 보도하지 않고 피의자의 주장, 피해자의 입장 등에 대하여 다같이 보도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취재하여 자극적인 문구로 보도하기 보다는 양 당사자의 사정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보도하는 보도윤리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4. 법원-검찰-변호인단-기자 공동 위원회 운영

피의자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미디어 종사자,

변호인 등이 함께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Washington Bench Bar Press Committee를 통해 법원-검찰-변호인-법조기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함께 모여 원칙을 세우는 경우 각자의 영역에서 경계를 침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만들게 되고, 예민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준칙과 언론매체의 운영준칙은 각각의 직역에서 접근의 편의성만 강조했다기 때문에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등 중대사안이 발생한 경우 각자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게 된다. 공동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각자의 준칙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율해가는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문제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제3절 언론보도 관련 법률제정방안

1. 별도의 입법 필요성 검토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등을 입안할 때에는 필요성, 적법성, 적절성, 조화성, 명확성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훈령 입안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야 하는 ‘적법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비공개이고,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현행 형법 제126조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직무과정에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지도록 하여 유죄판결 확정 전에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법무부 훈령에 해당한다. 훈령에서 앞에 열거한 헌법과 형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배제하고 예외사유를 만들어 수사단계에서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훈령의 입안에 있어서 적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하위규정인 훈령으로 법률상의 내용을 제약하는 것이 되어 법률체계에도 반한다. 수사공보 내용은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됨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규율될 필요성이 있다.

2. 법률 제정의 형식

가. 「(가칭)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 녹화, 중계를 금지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공적인물인 경우 촬영을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 공소 제기 전에 예외적으로 수사공보를 허용하는 것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수사상황에 관한 언론보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수사공보에 관한 사항은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모두 필요한 사항인 바, 현행 경찰과 검찰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과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통합하여 「(가칭)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해야 한다.²⁹⁵⁾ 최근

295) 같은 취지로 하태훈,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권, 안암법학회, 2015, 77면.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수사준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공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되 그 내용이 수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수사절차 전반에서 있을 수 있는 공보과정의 문제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단계별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상 관련규정 신설방안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형사소송법 안에 공소제기 전 소환시 촬영·녹화·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형사소송법에 두자는 의견이 있다.²⁹⁶⁾ 형사소송법에 둘 경우 규정의 간소화 및 편의성은 있으나, 수사절차 전반에서 문제되는 공보의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과정 피의자 촬영의 예외적 허용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8조의3을 신설하는 두 개의 법안²⁹⁷⁾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검찰단계의 피의자 촬영금지에 관한 사항만을 기술하고 있고 경찰단계의 피의자 보호사항은 제외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제를 검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유기준 의원안은 수사 및 재판절차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소환일정 및 소환과정에서의 촬영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는 것은 전체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촬영 등 금지사항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에 제재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수사과정에 촬영 등을 금지하는 이유 또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함진규 의원안은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촬영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작 촬영이 금지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하나 내지 두 개의 조문으로 촬영금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언정 수사과정에서 발생하

296) 김재윤,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법정쟁점 고찰”, 언론중재 2010년 가을호, 2010, 100면; 문봉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외법논집 제35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76면; 주승희,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고려법학 제6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76면.

297)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968호), 함진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669호)

는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4절 언론기관의 자율적 자정장치 마련방안

현재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취재경쟁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 언론의 과열된 취재경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포토라인에 대한 세부규칙이 개선되고 보도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언론 스스로 자율규제장치 마련을 통해 윤리적 관점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1. 「포토라인 운영준칙」 개선방안

현재의 포토라인 운영준칙은 3개 단체를 중심으로만 만들어진 준칙으로, 일간지, 경제지, 방송사, 종편, 유튜브 개인운영자 등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방송형태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방송사와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으나 이미 벌어진 방송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적이고 단기적인 조치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송사들도 자신들이 만든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홍보의 결과물로 배포에만 관심을 둘 뿐 외주사와 협력사를 포함한 취재, 제작에 관련된 전체 구성원의 교육과 현장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지속적 모니터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²⁹⁸⁾

포토라인 운영준칙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운영준칙이 개정된 적은 없다. 영국 BBC방송의 제작가이드라인은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 언론자율규제기구(IPSO)는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언론사별 윤리강령 준수보고서를 요청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언론매체의 적극적 움직임을 통해 「포토라인 운영준칙」이 현재 미디어시장 형태에

298) 나준영, “포토라인의 현실과 새로운 미래: 현장운용의 문제점과 일본 사례를 통한 변화의 모색”,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자료집, 2011, 6면.

맞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운영준칙의 개선사항을 항목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사보도 관련 공인의 범위 축소

현재 「포토라인 운영준칙」에 따르면 공적인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 고위공직자 등 공익성을 가진 인물뿐만 아니라 연예인 등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공인의 개념도 존재한다. 포토라인이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으므로 공인의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소한 수사과정에서의 보도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만이라도 공인의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수사와 관련하여 포토라인에 세워지는 대상의 공익성은 사람의 공익성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공익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공적인물이라고 하여 무조건 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범죄사실이 공익에 해당하여 보도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포토라인 운영준칙」에서의 공인의 개념을 구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공인의 개념과 일반적인 보도과정에서의 공인을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경우 일반 보도에 있어서 공인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수사과정의 공인의 경우 사람의 공익성에 대한 보다 제한적 검토가 필요하다.

나. 포토라인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마련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제작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의절차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된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촬영영상의 경우 단순 신문기사의 동의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취지에 맞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포토라인 운영준칙」 안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BBC방송 제작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촬영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침해를 인식하고 촬영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하

고, 촬영 후에도 즉시 연락하여 촬영장면 방송금지를 요청한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Section 7.3.3)”와 같은 규정을 두어 언론매체 스스로 촬영이 철저히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 제3자의 초상권 보호관련 규정의 상세화

「포토라인 운영준칙」에서는 공인인 당사자에 관한 사항만 열거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초상권 침해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행의무가 없는 제3자가 포토라인에서는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될 제3자의 경우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 이것이 동의에 해당하여 초상권 보호의무가 없음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는 절차가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라. 질문과정에서 유죄를 단정하는 질문의 자제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 등이 공개됨으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자들이 유도질문을 하거나 유죄로 단정하는 질문을 하고 그것이 언론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이 범죄자로 확신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는 기자의 질문에 있어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예단을 갖게 할 경우 미국에서는 보도제한명령까지 내려지기도 한다.

마.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라인 설정

포토라인에 서는 공인의 범죄사실 내용의 대부분은 피의자, 피해자, 형사사법기관의 모든 의견과 정보가 종합된 상황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자들이 기사의 신속성을 추구하다 보니, 형사사법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일부 자료 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기사를 쓰게 된다.²⁹⁹⁾ 「포토라인 운영준칙」에서는

299) 노성호·이기웅,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 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22면.

피의자의 초상권 침해 등 언론보도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언론사별 절차라인에 보고하는 형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될 경우 보도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언론사 자체 내에서 문제된 사안을 덮으려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고 언론당사자의 피해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보도활동에 있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언론사 간부에게 보고 또는 상의하도록 하여 개인의 불이익을 줄이고 언론사 차원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³⁰⁰⁾ 영국의 언론자율규제기구와 같이 자율규제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바. 포토라인으로 인한 침해에 대한 제재방안

일본의 경우 동검지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거나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도 또는 추측성 보도를 했을 경우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취재를 거부할 수 있다. 만일 언론사가 “①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기사, ② 혐의 내용에 있어 검찰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 ③ ‘특수부도 파악하고 있다’, ‘지검도 추적 중’ 등 검찰의 이름을 이용하여 권위를 부여한 기사, ④ 피의자의 도주, 관계자의 공모 등 증거인멸을 한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기사, ⑤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기사, ⑥ ‘조만간 체포’ 등 수사의 동향을 예고하는 추측기사, ⑦ 피의자 또는 향후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게 직접 접촉해서 쓴 기사”에 대하여는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검찰청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독일의 경우에도 “범죄혐의가 있으나 아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언론이 그 사람의 범죄혐의가 입증되었다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범죄혐의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표현한 경우, 그 사람은 언론소유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액은 2만 유로 이하로 하되, 침해행위가 중상 또는 중대한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만 유로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포토라인 운영으로 예단을 형성하게 하거나

300) 김창룡,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초상권 국내판결 사례와 영국 BBC와 IPSO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제2호,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8, 68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등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2. 수사 보도에 대한 언론 자율규제방안

가. 자율규제기구의 기능 강화

영국의 경우 영국 전체의 인쇄매체와 온라인 매체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다루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기구로 언론자율규제기구(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zation: IPSO)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율적 규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에 의해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원칙을 규정해 두고 있고,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예외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율규제가 수사 보도에 있어서 얼마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부정적이다.³⁰¹⁾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의자관련 수많은 사안들이 시정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관행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보도윤리와 관련하여 운영준칙만 마련해두고 각 언론사의 이행자율에 맡겨둘 경우 사실상 보도윤리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영국과 같이 자율규제기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각 언론사별 윤리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하며, 윤리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기구에서 직접적인 사안처리에 대한 개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301) 장영민·정진수,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22~26면.

나. 위반에 대한 언론사 공동징계위원회 구성

현재 운영지침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각 언론사의 징계에 맡겨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자신의 언론사를 감싸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게도 한다.

영국의 경우 언론자율규제기구(IPSO)에서 7:5의 비율로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 언론사가 포토라인 운영지침에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지침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재훈, “오늘의 포토라인 현실과 대처방안”,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 자료집, 2011, pp.1-6.
- 고명진, “포토브리핑제도 도입이 우선: 포토라인 운영실태와 정착과제”, 신문과 방송 962호, 2019, pp.50-55.
- 국가인권위원회, 주요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 2013.
- 권영성, 헌법학원론(2010년판), 법문사, 2010.
- 김성룡,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혐의보도와 형사사법”,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pp.347-374.
- _____, “언론의 범죄보도와 재판의 공정성”, 제8회 한국형사학대회 〈미디어와 인권, 그리고 형사법〉 자료집, 2019, pp.45-82.
- 김승일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대검찰청, 2007.
- 김정현,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재판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8회 한국형사학대회 〈미디어와 인권, 그리고 형사법〉 자료집, pp.3-31.
- 김재윤,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법적 쟁점 고찰”, 언론중재 2010년 가을호, 2010, pp.87-109.
- 김창룡,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초상권 국내판결사례와 영국 BBC와 IPSO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제2호,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8, pp.43-72.
- _____,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pp.7-36.
- _____, “한국의 포토라인 문화: 알권리인가, 인격권 침해인가-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19년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pp.42-51.
-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박영사, 2013.
- 김후곤, “초상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조화를 위한 논의 제안”,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pp.49-64.
- 나준영, “포토라인의 현실과 새로운 미래: 현장운용의 문제점과 일본사례를 통한 변화 모색”,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자료집, 2011, pp.1-7.

- _____, “포토라인 준칙 제정 1년, 현장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카메라기자협회, 2007, pp.1-7.
- _____, “한일 포토라인 제도 비교를 통해 본 한국 포토라인제도의 문제점”, 〈포토라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2006. p.42.
- 노성호·이기웅,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문봉규, “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외법논집 제35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pp.167-179.
- 문승재, “포토라인 준칙 개선방안”,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 박경신,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Jurist 통권 396호, 청림인터랙티브, 2003, pp.13-20.
- 박광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범죄보도행태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7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2001, pp.107-135.
-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2호, 한국언론학회, 2001, pp.156-185.
- 박용상, 언론의 자유, 박영사, 2013.
- 박주선, “포토라인 폐지가 사법개혁 첫걸음”, 관훈저널 봄호, 관훈클럽, 2019, pp.104-109.
- 박항구, “포토라인 준칙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 법무부, 독일형법, 2008.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1판), 법문사, 2019.
-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09.
- 신원진, “포토라인 봉괴유형 및 사례”,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2007.
- 심희기, “피의자신문이 강제처분인가”, 법률신문 2004년 3월 18일자, 5면.
- 안형준, “포토라인 토론문”,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pp.43-48.
- 양재규·이창현, “범죄기사에 대한 언론인과 법조인의 인식유형 및 그 특징에 대한 연구,

-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한국언론법학회, 2016, pp.251-287.
- 염건웅, “자살로 이끄는 검찰의 수사관행, 수사권력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 〈경찰의 수사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자료집, 바른사회 시민회의, 2016, pp.13-17.
- 이근우,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자 인권침해 관련 제 문제”,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포토라인을 포함하여〉 대법원 국제인권법학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2019, pp.1-15.
- 이두걸, “포토라인, 공익과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딜레마”,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9, pp.65-69.
- 이상도,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07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2007, p.84-91.
- 이승선, “포토라인, 폐지보다 고쳐쓰는게 상책”, 관훈저널 봄호, 관훈클럽, 2019, pp.95-103.
- 이은모·김정환, 형사소송법(제7판), 박영사, 2019
- 이준희, “포토라인 봉괴시 대응방안”,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세미나자료집, 2011, pp.1-7.
-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이춘재, “포토라인은 왜 필요하냐고요?”, 한겨레21 통권 1247호, 한겨레신문사, 2009, pp.26-29.
- 임동규, 형사소송법(제14판), 법문사, 2019.
- 장영민·정진수,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정상보, “포토라인 준칙 선포 1년! 현장은”, 〈포토라인 준칙운영포럼〉 자료집, 한국방송 카메라기자협회, 2007.
- 정한중, “미국에서의 범죄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3, pp.361-398.
- 조소영, “판례에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8, pp.99-120.
- 주승희,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와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pp.151-183.
- 하태훈,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권, 안암법학회, 2015, pp.

59-90.

하태훈·이근우, 형사사건에서의 재판 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법원 행정처, 2017.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영국 BBC 제작가이드라인 및 심의사례, 2011.

허영, 한국헌법론(신판), 박영사, 2001.

2. 해외문헌

ABA Criminal Justice Standards Committee, ABA Criminal Justice Standards for Fair Trial and Free Press third Edition (1991)

BVerfGE 35, 202.

Arbeitskreis deutscher, österreichischer und schweizerischer Strafrechtslehrer, Alternativ-Entwurf Strafjustiz und Medien, 2004.

BT-Drs. IV/650, 1962. 10. 4.

BVerfG, Beschluss der 3. Kammer des Ersten Senats vom 09. Februar 2017 - 1 BvR 967/15 -.

BVerfG, Beschluss der 3. Kammer des Ersten Senats vom 09. Februar 2017 - 1 BvR 2897/14 -.

BVerfG, “Zur Abbildung von Prominenten im öffentlichen und im privaten Raum durch die Presse”, 2017. 3. 15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17/bvg17-017.html>, 2019년 8월 7일 최종검색).

Eisele, J., “Strafprozessführung durch Medien. Zur Weitergabe von Informationen durch Verfahrensbeteiligte zum Zweck der Kriminalberichterstattung”, JZ 2014, S. 932-942.

Meier, B.-D., “5. Auskünfte gegenüber den Medien”,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89-101.

Neumann-Duesberg, “Bildberichterstattung über absolute und relative Personen der Zeitgeschichte”, JZ 1960, S. 114-118.

Saliger, F., “Aushöhlung der Unschuldsvermutung durch gezielte Öffentlichkeit?”,

- KritV 2013, S. 173-187.
- Riklin, F./Höpfel, F., “2. Kapitel. Verletzung der Unschuldsvermutung”,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53-66.
- Riklin, F./Höpfel, “3. Kapitel. Schutz von Beschuldigten vor identifizierender Berichterstattung”,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68 ff
- Weigend, T., “1. Kapitel. Medienöffentlichkeit des Ermittlungsverfahrens?”, Arbeitskreis AE, AE-StuM, 2004, S. 33-52.
- 大石泰彦, “報道倫理に関する考察: 日仏の制度を比較して”, 社会学部紀要 94, 2003, 17頁.
- 島崎哲彦, “現代における犯罪報道の現状と課題”, 東洋大学ヒューマン・インタラクショ
ン・リサーチ・センター研究年報 (8), 2011, 3頁.

3. 국내·외 판결

- 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 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2001헌바41 결정.
- 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 헌법재판소 2010.9.2. 선고, 2010헌마418 결정.
- 헌법재판소 2014.3.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 헌법재판소 2016.10.27. 선고, 2016헌마277(병합) 결정.
- 대법원 1998.7.14. 선고, 98다17257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0. 10. 11. 선고, 2000가합4673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 선고, 2016가합109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8.18. 선고, 2016나2088859 판결.
- Storoble v. California, 343 U.S. 181(1952).
- Irvin v. Dowd, 366 U.S. 717(1961).
- Sheppard v. Maxwell, 384 U.S. 333(1966).
- Nebraska Press Association v. Stuart, 427 U.S. 539(1976).

4. 인터넷자료

BBC Editorial Guideline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IPSO Editors' Code of Practice (<https://www.ipso.co.uk/editors-code-of-practice/>,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JM (<https://www.justice.gov/jm/justice-manua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KBS, “[뉴스쑈인] 전직 대통령도 썼는데…양승태 ‘포토라인 패싱’”, 2019년 1월 10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3342&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KBS, “‘법관모임 와해문건’ 현직 판사 세 번째 공개 소환”, 2018년 8월 16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5343&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KBS, “‘신동빈 최측근’ 황각규 집중 조사…이인원 내일 소환”, 2016년 8월 25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4634&ref=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KBS,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현직 판사 첫 공개 소환”, 2018년 8월 8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1633&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KBS, “검찰, ‘KT 채용 비리’ 이석채 전 회장 지난달 소환조사”, 2019년 4월 4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3072&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KBS, “양승태 ‘길목’ 박병대 전 대법관 11시간째 조사”, 2018년 11월 19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7215&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KBS, “최순실 검찰 출석…“죽을죄 지었다””, 2016년 10월 31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0479&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KBS, “특검, 최순실·김종 첫 공개 소환”, 2016년 12월 24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9718&ref=DA>,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MBC, “[단독] 서지현 ‘인사 불이익’ 있었다…안태근 개입 여부 조사”, 2018년 2월 23일자.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37900_22663.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MBC, “檢 김성태 ‘비공개’ 소환…‘딸 부정채용 전면 부인’”, 2019년 6월 25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78549_24634.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MBC, “삼성 최지성·장충기 소환 조사, 이재용 소환 임박”, 2017년 1월 9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00001_21408.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MBC,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오늘 공개소환”, 2018년 1월 16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501190_22606.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MBC, “전병헌 前 수석 17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2017년 11월 21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61190_21408.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MBC, “특검, 김기춘·조운선 등 압수수색…홍완선 공개 소환”, 2016년 12월 26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200/article/4190727_19821.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MBN, “‘국가에 충성 다했다’…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소환”, 2017년 10월 28일자.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6810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MBN, “‘진경준 특혜 의혹’ 김정주 벅스 창업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2016년 7월 13일자.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94751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MBN, “특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소환…‘최순실 미안마 사업’ 조사”, 2017년 2월 19일자.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14690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SBS, “[풀영상] 승리 두 번째 경찰 소환…‘성접대’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 2019년 3월 14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658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SBS,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양승태 소환만 남았다”, 2018년 11월 23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8998&plink=ORI,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SBS, “‘만세’하며 나온 정명훈…자신감 있게 의혹 일축”, 2016년 7월 16일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2422&plink=ORI,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Statement of Principle (http://www.courts.wa.gov/committee/?fa=committee.display&item_id=59&committee_id=77,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THE PR News, “포토라인의 진짜 의미”, 2018년 8월 9일자.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5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USAM (<https://www.justice.gov/archives/usam/united-states-attorneys-manua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YTN, “‘MB 블랙리스트’ 문성근 오는 18일 檢 출석...수사 본격화”, 2017년 9월 14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0914180049534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YTN, “MB, 21시간 고강도 밤샘조사...묵묵부답 귀가”, 2018년 3월 15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0315091159513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YTN, “檢 ‘원세훈 주심’ 민일영 前 대법관 조사”, 2018년 11월 15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5103522128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YTN, “검찰, mb정부 ‘방송장악’ 본격 수사...최승호 피디 출석”, 2017년 9월 24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0924222151931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YTN, “검찰, ‘원세훈 문건’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 공개소환”, 2018년 8월 13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08132229317410,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YTN, “고영한 3번째 소환...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검토”, 2018년 11월 27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7152557947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YTN, “‘기사 욕설’ 종근당 이장한 회장 오늘 공개 소환”, 2017년 8월 2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0802000145131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김재열 사장 오늘 공개 소환...삼성 합병 대가 조사”, 2016년 12월 29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61229001236457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땃글공작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소환...‘정당한 업무’ 혐의 부인”, 2018년
9월 5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09052210271384, 2019
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박병대 前 대법관 2차 소환...혐의 부인”, 2018년 11월 20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0105621424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박원순 시장 대리인 출석...추선희 3차 소환”, 2017년 10월 10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1010160125915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블랙리스트·삼성 의혹 집중 수사...김종덕·장시호 등 줄소환”, 2016년 12월 30
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61230090127049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우병우, 수사팀 구성 75일 만에 검찰 출석”, 2016년 11월 6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61106095453676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참고인 신분’에 전격 공개 소환...수사 쟁점은?”, 2018년 5월 4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80504050908452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최태원 회장 녀 달 만에 재소환...미소 속 침묵”, 2017년 3월 18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70318160056735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특검, 정호성 공개소환...김종도 13시간 만에 재소환”, 2016년 12월 25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61225133837051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YTN,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검찰 자진 출석”, 2016년 1월 29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160129101252841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2019년 법무부 핵심정책 설명자료(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6555836&tblKey=GMN, 2019년 7월 31일 최종검색)
- 경향신문, “[속보]특검, 최순실 조카 장시호 소환해 조사 착수”, 2016년 12월 30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30101001&code=9403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경향신문, “권성동 남북회담날 비공개 소환…검찰, 박주기 논란”, 2018년 4월 27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72119015&code=9403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경향신문, “홍 의원 오후 1시·비공개 소환… 검찰, 실세 눈치보나”, 2015년 6월 8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82140585&code=9403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국민일보, “[단독] ‘신동빈 최측근’ 황각규 롯데쇼핑 사장 검찰 재출석”, 2016년 9월 6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10573&code=61121311&cp=kd>,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국민일보, “[현장영상] ‘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 2019년 3월 14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42392&code=61121211&cp=nv>,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국민일보, “‘유족 자극하지 말자’ 동기 조문 포기한 윤석열 지검장”, 2017년 11월 8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84968&code=61121211&cp=kd>,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국민일보, “‘젊은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섬주민 발언에 경악...폐북지기 초이스”, 2016년 6월 7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79614&code=61121211&sid1=soc>, 2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 노컷뉴스, “檢, 성완중 경남기업 전 회장 18시간 강도높은 조사”, 2015년 4월 4일자.
(<https://www.nocutnews.co.kr/news/439329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뉴스1, “‘국정원 수사방해’ 현직 검사들 출소환...‘불법행위 안했다’(종합)”, 2017년 10월 27일자. (<http://news1.kr/articles/?313658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뉴스1, “‘세월호 사찰’ 前기무사령관 영장심사...부끄럼 없나 ‘그렇다’”, 2018년 12월 3일자. (<http://news1.kr/articles/?349152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뉴스1, “‘배출가스 의혹’ 폭스바겐 現대표 오늘 검찰 출석”, 2016년 8월 11일자.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0_0014279763&cID=10201&pID=10200,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뉴스1, “섬 성폭행 미확인 정보 난무..경찰-교총 2차 피해 우려”, 2016년 6월 5일자.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7272284&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ID%26sid1%3D102&light=off>, 2016년 6월 5일)

- 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 대전일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청주시장 이례적 공개소환 촉각”, 2015년 11월 2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9187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독일언론평의회의 Der Pressekodex(https://www.presserat.de/pressekodex/pressekodex/#panel-ziffer_8_schutz_der_persoenlichkeit,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 동아일보, “[2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자살…유서 발견”, 2018년 12월 7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207/93198727/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동아일보,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2018년 9월 20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920/92093346/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동아일보, “피의자 양승태 포토라인 패싱 논란…대법원서 입장 발표”, 2019년 1월 9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109/93614306/1>, 2019년 7월 25일 최종검색)
- 매일경제, “檢 출두 신동주 ‘혐의 일부 인정’”, 2016년 9월 1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9/62182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매일경제, “안종범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해’…검찰 소환”, 2016년 11월 2일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6/11/76348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매일경제, “총수 8명 참고인신분 비공개소환”, 2016년 11월 13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1/78992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매일경제,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모철민 대사 공개 소환…윗선 실체 밝힌다”, 2016년 12월 29일자.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10288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매일경제, “특검, 유재경 주미안마 대사 소환…최순실 개입의혹 주목”, 2017년 1월 31일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01/69195/>,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매일경제, “특검, 차은택 첫 공개 소환…‘새로운 범죄정보 확인’”, 2017년 1월 6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1/1475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머니투데이, “檢, ‘강제징용 재판 지연’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조사”, 2019년 1월 2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020827822910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머니투데이, “‘외국인 불법고용’ 조현아 9시간 조사…이명희 내달 초 소환”, 2018년 5월 24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52423450038515&outlink=1&ref=%3A%2F%2F>,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문화일보, “석방 8일만에…포토라인에 다시 선 김기춘”, 2018년 8월 14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14010714210780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문화일보, “이병호 檢 출석…‘국정원 흔들려 걱정된다’”, 2017년 11월 10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10010710303190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문화일보, “탄핵 11일만에 ‘29자 유감’… 혐의부인 긴 메시지는 자제”, 2017년 3월 21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210103033012300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법률신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막기 위한 법제정 필요”, 2019년 5월 29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357&kind=&key=&ad=article>, 2019년 6월 20일 최종검색).

서울경제, “김관진 검찰 출석, 석방 3개월 만에 공개 소환 ‘문제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 2018년 2월 27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RVV85VA9E>,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서울경제, “안봉근-이재만 나란히 검찰 출석, ‘문고리 3인방’ 모두 소환 ‘굴욕’”, 2016년 11월 14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L3YUS4E6F>,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서울신문, “특감 16일 만에… 김형준 부장검사 檢 소환”, 2016년 9월 23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2400900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서울신문, “특검, 이재용 18일 오후 2시 공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2017년 2월

- 17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1750014>
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세계일보,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엄동열 檢 출석”, 2018년 4월 6일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0600455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세계일보, “경찰, 이번엔 서해순 비공개 소환…지난 12일엔 공개 소환”, 2017년 10월 16일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1600329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세계일보, “‘성추행·흥기협박 혐의’ 배우 이서원, 24일 검찰 공개 소환”, 2018년 5월 23일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2300531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아시아경제, “‘전직 대통령도 공개소환하면서 차한성은 왜 비공개?’”, 2018년 11월 11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111520576046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아시아경제, “檢, 내주 신동주 재소환…신동빈 조사 시기도 결정(상보)”, 2019년 9월 2일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0215434651545>,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아시아경제, “양승태 소환 앞둔 檢, 박병대·고영한 연거푸 소환”, 2019년 1월 8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815504529095>,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아시아경제, “위기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진에어 생사 기로’”, 2018년 6월 28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809512073585>,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아시아경제, “정몽헌·남상국·성완중, 실추된 명예와 억울함에”, 2016년 8월 26일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16082611122714601>, 2019년 7월 25일 최종검색)
- 아시아경제신문, “‘부정부패 전면전’ 외치더니 檢 앞에선 李”, 2015년 5월 14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5141017349485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연합뉴스, “검찰 ‘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15시간 조사…영장 검토(종합)”, 2017년 10월 30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71030027351004?inp>

ut=1195m,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연합뉴스, “검찰 포토라인 서는 문제, 과거 전례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 2017년 3월 14일자 사진.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4127700000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2018년 2월 7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02071219000004>, 2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연합뉴스, “안희정 두 번째 검찰 출석…‘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 2018년 3월 19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0319054851004?input=1195m>,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위키백과 “언론의 자유”(https://ko.wikipedia.org/wiki/%EC%96%B8%EB%A1%A0%EC%9D%98_%EC%9E%90%EC%9C%A0, 2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위키백과 “인격권”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2%A9%EA%B6%8C>, 2019년 8월 2일 최종검색)

인터넷 한겨레, “정몽헌 자살 왜?”, 2003년 8월 4일자.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8/005000000200308041931001.html>, 2019년 7월 28일 최종검색)

조선일보, “세월호 사찰 수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사망”, 2018년 12월 7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2244.html, 2019년 7월 25일 최종검색).

조선일보, “조양호 한진회장 올들어 세번째 공개 소환”, 2018년 9월 12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0268.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조선일보, “포토라인 세워 죄인 낙인, 누가 검찰에 그 권한 줬나”, 2019년 1월 15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5/2019011500111.html, 2019년 6월 10일 최종검색).

중부일보, “검찰 ‘咸리스트’ 회유·진술 맞추기에 초강경 대응”, 2015년 5월 7일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988240>,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중부일보,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권무덤’ 징크스 넘어설까”, 2018년

- 11월 25일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79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중앙일보, “삿대질 하며 “경찰서 가자!”...정준영 귀국에 인천공항 소란”, 2019년 3월 12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0883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중앙일보, “[속보] 한진家 이명희 이사장, 경찰 오전 8시20분 재출석”, 2018년 5월 28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266796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중앙일보, “검찰 ‘MB 아들’ 이시형 불러 다스 의혹 조사”, 2018년 2월 26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239574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파이낸셜뉴스,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 강현구 檢 출석, ‘사실대로 조사 받겠다’”, 2016년 7월 12일자. (<http://www.fnnews.com/news/20160712102933287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겨레, “‘별장 성접대·뇌물 혐의’ 김학의 첫 공개소환”, 2019년 5월 9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292.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겨레, “공정위 특혜취업 수사 정점으로... 정재찬 전 위원장 소환”, 2018년 7월 25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732.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겨레, “롯데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 스스로 목숨 끊어(종합)”, 2016년 8월 26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8513.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겨레,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018년 6월 10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44078.html>,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 한겨레,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피의자 소환”, 2018년 11월 27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1934.html, 2019년 7월 25일 최종검색)
- 한겨레, “특검, 조여옥 대위 참고인 조사...‘세월호 7시간’ 퍼즐 맞추기”, 2016년 12월 24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5964.html,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국경제,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박영수 특검과 차 한잔 없이 밤샘조사...뇌물죄에 배

- 임·황령까지 걸어 압박”, 2017년 1월 12일자.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1129074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국경제, “한진그룹 이명희 출입국청 출석…불법고용 의혹 부인”, 2018년 6월 11일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61118687>,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국기자협회, “알권리와 취재편의, 그리고 피의자 인권침해...포토라인 딜레마”, 2019년 3월 20일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5978>, 2019년 8월 5일 최종검색)
- 한국일보, “‘사법농단’ 이규진 부장판사 소환…‘한없이 참담하다’”, 2018년 8월 23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3102205578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국일보, “‘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검찰 소환”, 2018년 11월 27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71000050002>,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국일보, “검찰 망신주기식 수사” 문제 없나”, 2017년 11월 7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070417758159>,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국일보,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고위임원 첫 공개 소환”, 2018년 7월 31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311568371241>,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국일보, “우병우 10일 또 검찰 소환… 수사기관 다섯번째, 포토 라인엔 안 세워”, 2017년 12월 10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10215451402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한국일보, “‘현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2018년 8월 22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2105001403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헤럴드경제, “‘군 댓글공작’ 김태효 전 비서관 檢 소환…‘MB청와대’ 정조준(종합)”, 2017년 12월 5일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205000353>,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 헤럴드경제, “檢,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신분 소환”, 2016년 8월 11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1000464>,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헤럴드경제, “警, ‘집단 성폭행’ 의혹 최종훈 ‘비공개 소환조사’…1일 귀가”, 2019년 5월 1일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501000078>,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헤럴드경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檢 출석 靑 참모들 안하무인?”, 2016년 11월 18일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11800034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헤럴드경제, “특검, 임대기 소환…삼성 사장급 첫 공개 소환”, 2017년 1월 6일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06000216>, 2019년 8월 10일 최종검색)

人權と報道に関する宣言 (https://www.nichibenren.or.jp/activity/document/civil_libilities/year/1987/1987_1.htm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ウィキペディア ロス疑惑 (<https://ja.wikipedia.org/wiki/%E3%83%AD%E3%82%B9%E7%96%91%E6%83%91>,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テレビ東京・報道倫理ガイドライン (<https://www.tv-tokyo.co.jp/main/yoriyoi/rinri.htm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ウィキペディア 記者クラブ (<https://ja.wikipedia.org/wiki/%E8%A8%98%E8%80%85%E3%82%AF%E3%83%A9%E3%83%96>,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TBSテレビ(<http://www.tbs.co.jp/company/regulation/bpo.html>, 2019년 8월 1일 최종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Open Investigations through Photo-Line

Lee, Seung-hyun / An Su-Gil

We often see in the press cases of politicians, entertainers,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eads of corporations, etc., standing on photo-lines. Photo-Line is an, “autonomous line that prevents confusion by limiting reporters' movements when a large number of the press have to cover in a limited space.”

It is a common practice for an accused standing on a photo-line during an investigation stage in terms of the people's rights to know. However, standing on a photo-line is most often taken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media's customary demands, not on an accused's consent.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have no grounds to regulate over photo-lines because it is an interview outside of the buildings of Public Prosecutors' Offices or Police Agencies. Thereby, it is considered as the freedom of the press.

While photo-line itself is a media coverage area, the ripple effect of media coverage is a factor that might shake the found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infringe an accused's right to have a fair trial. Due to the media's intensive coverage on a photo-line, an accused might be psychologically contracted before being investigated, which in turn make the accused person difficult to accurately testif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addition, before the alleged crime is confirmed, being set up on a photo-line and asked to respond to questions such as, “Do you admit your guilt?” and “How do you reflect on your crime?” are exposed to the public through the broadcast media. Thereby, an accused person experiences social stigma before conviction and there is a serious infringement of individual's personality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accused that should be guaranteed in criminal proceedings.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 accused's identity and charge are strictly disclosed, and investigation status and the details of an accused are not disclosed until the indictment is filed. First, the media reports before the investigation (especially a report in which an individual's face is exposed) are extremely avoided as it might lead to prejudgement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Second, even if there is a need for disclosure, the scope of the public figures is limitedly interpreted or compared with the actual gains from disclosure. Third, the continuous media monitoring is carried out through autonomous relief organizations or the guidelines from each media company to make self-purification efforts on its own.

Although the operation of photo-lines have a great impact on criminal proceedings, it is not desirable to abolish the photo-line system itself because it is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operation of the photo-lines should address such issues as a violation of individual's portrait right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a fair trial due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an incapacitation of an accused's right to defend due to psychological suppression by improving the media coverage practices in investigation processes such as the open summon system.

Although photo-line does not seem to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investigative agencies because it is an autonomous control line of the press, the information (attendance time and return time) as a premise for a photo-line comes out through the open summon procedure of the investigating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ivate summon system which is applied to public figures in investigation practices. First, all cases under investigations should be closed to the public, so the principle of allowing at least private information should be adhered in summoning. Second, the prosecution's 「Regulations of the Media Reports on Investigation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allowed to disclose only when, "a summons of a public figure is known, so the media ask for a confirmation or physical conflicts are expected due to competitive media reporting." Further, the disclosure criteria should be limited to, "if the accused is a public figure and the crime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public interest." Third, standing on a photo-line and agreeing to a summons should be strictly separated, and a prosecutor should separately continue with the procedure to ask whether the suspect agrees to stand on a photo-line during the summoning schedule adjustment process. Fourth, while in the contents of a open summons, various information such as the summoner, the date and time of a summons, the place of return, and the alleged offence are provided, it is desirable to minimize the scope of disclosure by providing such information as the date of a summons, the name of a suspect, and the alleged offence. Fifth, in order to guarantee a defendant's defense rights in a summoning stage, there should be a way to prevent open summoning without an attorney. Finally, it should be enacted as a separate law by integrating the regulations for the media reporting on investigation information that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rules of investigation agencies.

Customary practices in media coverage should also be improved. First, the scope of public figures corresponding to reporting investigation should be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Photo-line Operation Rules. Second, if a decision is made to reject a photo-line, other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tect summoner from having a separate procedure. Third, when it comes to media coverage, it is important to be careful about reporting issues that are being investigated according to reporting ethics and to report objective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both parties. Fourth, like the Washington Bench Bar Press Committee in Washington, a consultative committee consisting of investigative agencies, attorneys, and journalists should be established to seek ways to harmonize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연구총서 19-AB-04

포토라인을 통해본 공개수사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

발 행 | 2019년 8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I S B N | 979-11-89908-22-5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포토라인을 통해 본 공개수사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Open Investigations through Photo-Line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06764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T. 02-575-5282 www.kic.re.kr

